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747-0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Competence Evaluation for Introduction of Grading
Program of Certification Bodies

최종보고서
(2017.4.)

연구기관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4월

연구 담당

유병덕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절차
김난영	연구원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 방법
허종석	연구원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현장 평가)
이승영	연구원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경영, 서면 평가)
장진선	연구원	인증기관 운영 현황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요약)

I. 연구 배경

- 선행 연구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¹⁾」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되었음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²⁾
- 인증기관의 조직 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 인증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체계와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인증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의 운영 방향 제시
- 민간 인증기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 농식품부(2016)는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통하여 인증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함
 - 선행연구³⁾를 통하여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제 인증기관 적용 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1)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5.

3)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7

-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 추진을 위한 평가 지표 제시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범 평가 실시를 통하여 선행연구⁴⁾에서 설계된 평가 지표 개선
 - 개선된 평가 지표는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평가에 제시

- 평가 내용 및 방법
 1. 평가 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민간 인증기관들의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및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들의 인식을 수집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관한 문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구성
 -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 인식의 경우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

 2. 평가 범위 : 농관원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전국 61개 민간 인증기관 대상

 3. 평가 기간 :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재무 및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

 4. 분석방법
 - 인증기관 현황 분석을 위해서 설문에 응답한 인증기관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응답비율을 분석
 - 등급제 점수 환산을 위하여 응답 데이터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수정된 등급제 지표에 응답 데이터와 현장 조사 자료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4)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II. 인증기관 운영 현황

- 2016년 국내 농산물 인증 건수는 총 22,954건으로 61,946농가를 인증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농가수는 약 2.6호⁵⁾
- 16년도 저농약을 제외한 친환경 인증 농가 수와 면적은 15년 대비 각 3.2%, 5.8%로 증가하였으며 인증 건수는 11.8% 증가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는 2009~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유기 재배 농가수는 11.1%, 무농약 재배는 1.3% 증가
- 2009년 대비 2016년도 유기 재배면적은 5.8%로 꾸준히 증가. 무농약 재배면적은 2013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감소하였으나, 15년 이후 4.6% 소폭 상승
- 2009년도 대비 2016년도 유기 농산물 출하량은 0.2% 증가. 15년 대비 16년 유기 농산물 출하량이 16.5%,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이 26.1% 증가
- 전남·광주 지역에 19개의 인증기관이 분포하고(31%), 서울·경기지역 13개(21%)이며, 그밖에 지역은 도별 1~6개의 인증기관이 분포
- 인증건 실적 분포
 - 61개 인증기관 중 1,000건을 초과하는 인증을 시행한 기관은 2개(3%)인 반면, 2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인증기관이 17개(28%)로 나타남

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기관별)

III. 시범 평가 및 방법 검토

- 선행 연구⁶⁾에서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평가 지표의 콘텐츠 설정
⇒ 본 연구(후속 연구)에서는 등급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과 정밀한 배점 교정 작업이 필요
- 선행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61개 인증기관⁷⁾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전수 현장 평가를 실시)
- 해외에 소재하는 3개 인증기관⁸⁾은 현지 사정과 방문의 어려움으로 본
시범 평가에서는 제외
-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예
컨대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
음) 중간 점수를 부여
 - 총점이 5점인 경우 3점 부여
 - 해당 기관은 사단법인 2개, 대학 산학협력단 4개, 시군 농업기술
센터 3개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23개 지표에 대하여 효율
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검토
 - 기존 평가 방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평가 방법의 조정
- 평가 방법의 검토 시 적용한 원칙

6)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7) 최초 연구 대상 인증기관은 62개였으나, 진행과정 중 1개의 인증기관이 취소되었으며, 최종
61개 인증기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외 소재 인증기관 3곳은 제외

8) 해외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은 3곳으로 ACO(오스트리아), Kiwa BCS Oko Garantie
GmbH(독일),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네덜란드)임

- **인증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 : 등급제 평가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등급제 담당 업무를 최소화
- **농관원 등 관련 기관의 등급제 관련 업무 경감** : 농관원과 친인협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는 무리한 가공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검토
- **평가기관의 효율성 제고** : 평가기관이 제한된 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완료할 수 있도록 효율적 평가 방법 고려

표1.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5	인증 부적합률	$\frac{\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times 100$
6	사후관리 빈도	$\frac{\text{사후관리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frac{\{(\text{연말 인증사업자수})/[(\text{연초 상근심사원수})+(\text{연말 상근심사원수})]\}}{2}$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frac{(\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 *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9	교육훈련 투입량	$\frac{(\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text{연초 상근직원수})+(\text{연말 상근직원수})]}{2} + (\text{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frac{(\text{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text{연말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12	인증 갱신율	$\frac{(\text{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text{연초 국내 인증건수})}$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frac{(\text{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 * 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사업자수})/(\text{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100 - 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frac{\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건수}} \times 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24 (추가)	친환경인증제 도에 대한 기여도	$\text{(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 인증기관 등급 평가를 연초에 실시하는 경우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평가 시기를 전년도 회계자료가 발행되는 3월 이후 평가 실시

-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실시연도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 '전년도'로 설정한 조사대상연도의 평가 의의가 희석됨

⇒ 개선방안: 조사대상 연도(조사 실시연도의 전년도)의 회계 자료를 평가하고, 전년도 평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4월 이후 6월 이전에 평가를 실시

IV.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 선행연구⁹⁾에서 설정한 평가 지표로 61개 인증기관을 평가
- 그 결과 인증기관은 ‘우수’ 9개, ‘양호’ 23개, ‘보통’ 25개, ‘미흡’ 4개로 나타남

표2. 인증기관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 전체 인증기관에서 53%는 ‘양호’ 이상에 해당. 지표마다 점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 이는 비대칭분포(asymmetric distribution)로 평가 지표로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득점 기준 조정이 필요
- 평가 지표의 득점 기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계급 폭을 일정하게 설정한다는 원칙을 적용
- 적절한 계급 폭을 도출하기 위해 JISZ9041-1(일본표준규격)¹⁰⁾에서 계급 폭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적용

9)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10)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1995.

Z9041-1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1: Statistical Presentation of Data 참고함

표3. 인증기관 평가 지표 최종 교정 내역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80% 이상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1개월당 -1 감점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100만원당 -1 감점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1.5% 초과 5
			1.0% 초과~1.5% 이하4
			0.5% 초과~1.0% 이하3
			0%초과~0.5% 이하2
			0% 이면 1
5	인증 부적합률	(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연중 인증 건수)+(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6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90% 이상 7
			75~90% 미만 6
			60~75% 미만 5
			45~60% 미만 4
			30~45% 미만 3
			15~30% 미만 2
			15% 미만 1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연말 인증사업자수)/{(연초 상근심사원수)+(연말 상근심사원수)}/2}	50 미만 7
			100 미만 6
			150 미만 5
			200 미만 4
			250 미만 3
			300 미만 2
			300 이상 1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1% 미만 6
			1~1.5% 미만 5
			1.5~2% 미만 4
			2~2.5% 미만 3
			2.5~3% 미만 2
			3% 이상 1
9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 / 2 + (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2회 이상 참가 3
			1회 참가 2
			미참가 1
11	상근심사 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3년 이상 7
			2.5~3년 미만 6
			2~2.5년 미만 5
			1.5~2년 미만 4
			1~1.5년 미만 3
			0.5~1년 미만 2
0.5년 미만 1			
12	인증 갱신율	(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	0.8 이상 5
			0.6~0.8 미만 4
			0.4~0.6 미만 3
			0.2~0.4 미만 2
			0.2 미만 1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frac{(\text{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90% 초과 5
			60%초과~90%이하 4
			30%초과~60%이하 3
			0%초과~30%이하 2
			0%이면 1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800건 이상 5
			600~800건 미만 4
			400~600건 미만 3
			200~400건 미만 2
			200건 미만 1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2,000명 이상 5
			1,500~2,000명 미만 4
			1,000~1,500명 미만 3
			500~1,000명 미만 2
			500명 미만 1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8억원 이상 5
			6~8억원 미만 4
			4~6억원 미만 3
			2~4억원 미만 2
			2억원 미만 1
17	인증사업 자수 증가율	$\frac{\{(\text{당기말 인증사업자수})/(\text{전기말 인증사업자수})\}*100-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4건 이상 5
			3건 4
			2건 3
			1건 2
			0건 1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3점 가점
20	부채비율	$\frac{[(\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4백 이상 5
			3백~4백만원 미만 4
			2백~3백만원 미만 3
			1백~2백만원 미만 2
			1백만 원 미만 1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 미만 5
			20~40% 미만 4
			40~60% 미만 3
			60~80% 미만 2
			80% 이상 1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0~60% 미만 2
			0~30% 미만 1
24	친환경인 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추가)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1명당 1점 (최대 3점)

-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 교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총점 평균은 65.6 점, 총점 최고 점수는 84점, 최저점수는 51점
- 교정 후 등급 분포는 ‘우수’ 2개(3%), ‘양호’ 14개(23%), ‘보통’ 30개(49%), ‘미흡’ 15개(25%)로 분포
- 교정 전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각 ‘우수’ 7개, ‘양호’ 9개 기관이 줄어들었으며 ‘보통’ 5개, ‘미흡’ 11개 기관이 증가

표4. 교정 후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교정 전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교정 후	기관 수	2	14	30	15	61
	비율(%)	3	23	49	25	100

V.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 등급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등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급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은 인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함
- **이해관계의 기피**
평가기관의 평가반 및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평가 및 심의에서 기피하여야 함
⇒ 통상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과 관련 행위(평가 또는 심의)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전 1년 동안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기밀유지의 원칙**
평가기관과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인증기관 또는 심사원의 기본 운영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
 -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 예컨대,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평가 대상의 회계 연도**
인증기관의 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 ‘조사대상연도’로 칭함
- **평가 시행 시기**
평가반의 조사 및 평가는 4월1일 이후에 시작하여 6월30일 이전에 완

료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연도에 대한 최적 조사 시기에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정보수집의 방법 규정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1)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조사표 : 평가기관이 인증기관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2)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을 열람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한 자료의 이용 : 농관원의 효율적인 자료 추출을 위하여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의 프로그래밍 필요

○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5. 등급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방안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기준	80점 이상	70~79	60~69	60 미만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농관원 지도점검	2년	연1회	2년 3회	연2회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V.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조사 결과 우수(2) 및 양호(14) 인증기관에 비하여 보통(30), 미흡(15) 인증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이는 향후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인증기관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
-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급의 분포에서 보통 및 미흡 인증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우수 및 양호 등급 인증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이 필요
- 각 인증기관별로 점수가 3점씩 상승할 경우, 즉 평가 총점이 평균 3점 높아지는 경우 ‘우수’ 6개(10%), ‘양호’ 21개(34%), ‘보통’ 27개(44%), ‘미흡’ 7개(12%)로 분포
- 총점평균 3점이 상승하는 경우, 기존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우수’ 4개, ‘양호’ 7개 기관이 증가, ‘보통’ 3개, ‘미흡’ 8개 기관 감소하는 효과
- 인증기관들이 지금보다 3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책이 필요
 - 예컨대, 심사원 양성 및 보수 교육에 적극 참여
 - 심사원 근속연수가 계속 연장되도록 심사원 처우 개선
 -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 유도
 - 사업자 교육의 활성화
 - 그밖에, 모든(24개) 평가지표에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의 개요	5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7
2. 인증기관 현황	13
제3장.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1. 시범 평가 개요	17
2. 시범 평가의 과정	19
3. 평가 방법	24
4. 지표별 평가 방법	27
5. 지표별 평가 지수의 분포	46
6. 지표별 평가 방법의 최종 도출	69
7. 기타 고려 사항	72
제4장.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1. 득점 기준 조정의 필요성	74
2. 득점 구간 교정	78
3. 교정 후 최종 평가 지표	93
4. 득점기준 교정 후 득점 통계	97
5. 최종 평가 결과	140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1. 등급제 시행의 목적	142
2. 평가 기관의 운영 원칙	143
3. 등급결정심의위원회	144
4. 평가의 원칙과 절차	144
5. 평가 결과의 적용 방법	148

제6장.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1. 평가 결과	149
2. 경영 평가 결과	161
3.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등급제 적용 방안	167
4. 등급제 운영 고시안	172

부록

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179
2.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설명회	184
3.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208
4.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 위임장	209
5. 정보 활용 동의서	210
6. 현장평가 계획서	211
7. 비밀유지 서약서	221
8. 인증기관 평가 결과	222
9. 인증기관 시범조사 득점표(교정 전)	228
10. 인증기관 시범조사 득점표(교정 후)	230

참고문헌	232
------------	-----

표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인증기관 운영 현황

표 2-1. 2015~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015 저농약 포함)	8
표 2-2. 2015~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저농약 제외)	8
표 2-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9
표 2-4. 2016년 인증기관 지역별	분포 13
표 2-5. 2016년 인증 건수 상위 10위 민간 인증기관	13
표 2-6. 2016년 인증 건수 실적	분포 14
표 2-7. 2016년 인증점유율	분포 14
표 2-8. 2016년 인증농가	실적분포 15
표 2-9. 2016년 해외인증 진행	비율 16
표 2-10. 해외 인증건수	비율 16

3.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표 3-1.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평가	절차 19
표 3-2. 현장 평가	일정 22
표 3-3. 인증사업 매출비율	지표 27
표 3-4. 인증기관 행정처분	지표 28
표 3-5. 기관 과태료 부과	지표

.....			28
표 3-6. 자체	행정처분	실적	지표
.....			29
표 3-7. 인증		부적합률	지표
.....			30
표 3-8. 사후관리		빈도	지표
.....			30
표 3-9. 사업자당	투입	인력	지표
.....			31
표 3-10. 이중체크		적발	비율
.....			32
표 3-11. 교육훈련		투입량	지표
.....			32
표 3-12.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33
표 3-1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34
표 3-14. 인증		갱신율	지표
.....			35
표 3-15.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36
표 3-16. 인증		건수	지표
.....			38
표 3-17. 인증사업자수			
.....			38
표 3-18. 전년도			매출액
.....			39
표 3-1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			39
표 3-20. 핵심역량		보유	현황
.....			40
표 3-21.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			현황
.....			41
표 3-22. 부채비율			
.....			
41			
표 3-2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42
표 3-24. 상근심사원	퇴사율
.....	43
표 3-25. 관할지역	인증
.....	비율
.....	44
표 3-26.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	기여도
.....	45
표 3-27.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결과)
.....	69
4.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표 4-1. 인증기관	등급
.....	분포
.....	74
표 4-2. 교육훈련 투입량	득점
.....	기준
.....	교정
.....	예시
.....	77
표 4-3. 인증사업	매출비율
.....	득점
.....	기준
.....	교정
.....	78
표 4-4. 인증기관	행정처분
.....	득점
.....	기준
.....	교정
.....	78
표 4-5. 기관	과태료
.....	부과
.....	득점
.....	기준
.....	교정
.....	79
표 4-6. 자체	행정처분
.....	실적
.....	득점
.....	기준
.....	교정
.....	79
표 4-7. 인증	부적합률
.....	득점
.....	기준
.....	교정
.....	80
표 4-8. 사후관리	빈도
.....	득점
.....	기준
.....	교정
.....	80
표 4-9. 사업자당	투입
.....	인력
.....	득점
.....	기준
.....	교정
.....	81
표 4-10. 이중체크	적발
.....	비율
.....	득점
.....	기준
.....	교정
.....	82
표 4-11. 교육훈련	투입량
.....	득점
.....	기준
.....	교정
.....	82
표 4-12. 기관장의	역량
.....	강화
.....	득점
.....	기준
.....	교정
.....	83
표 4-1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득점
.....	기준
.....	교정
.....	84

표 4-14. 인증	갱신율	득점	기준	교정
.....				84
표 4-15. 사업자	인증교육	득점	기준	교정
.....				85
표 4-16. 인증건수		득점	기준	교정
.....				86
표 4-17. 인증사업자수		득점	기준	교정
.....				87
표 4-18. 전년도	매출액	득점	기준	교정
.....				88
표 4-1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득점	기준	교정
.....				88
표 4-20. 핵심역량	보유	현황	득점	기준
.....				89
표 4-21.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기준
.....				90
표 4-22. 부채비율		득점	기준	교정
.....				90
표 4-2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득점	기준
.....				91
표 4-24. 상근심사원	퇴사율	득점	기준	교정
.....				91
표 4-25. 관할지역	인증비율	득점	기준	교정
.....				92
표 4-26. 인증기관	평가 지표	최종	교정	내역
.....				93
표 4-27. 인증사업	매출비율	득점		평균
.....				97
표 4-28. 인증사업	매출비율	평가		결과
.....				97
표 4-29. 인증사업	행정처분	득점		평균
.....				99
표 4-30. 인증사업	매출비율	평가		결과
.....				99
표 4-31. 기관	과태료	부과	득점	평균
.....				101
표 4-32. 기관	과태료	부과	평가	결과

.....					101
표 4-33. 자체	행정처분	실적	득점	평균	102
.....					102
표 4-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평가	결과	102
.....					102
표 4-35. 인증	부적합률		득점	평균	104
.....					104
표 4-36. 인증	부적합률		평가	결과	104
.....					104
표 4-37. 사후관리	빈도		득점	평균	106
.....					106
표 4-38. 사후관리	빈도		평가	결과	106
.....					106
표 4-39. 사업자당	투입	인력	득점	평균	108
.....					108
표 4-40. 사업자당	투입	인력	평가	결과	108
.....					108
표 4-41. 이중체크	적발	비율	득점	평균	110
.....					110
표 4-42. 이중체크	적발	비율	평가	결과	110
.....					110
표 4-43. 교육훈련	투입량		득점	평균	112
.....					112
표 4-44. 교육훈련	투입량		평가	결과	112
.....					112
표 4-45.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득점	평균
.....					114
표 4-46.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평가 결과					114
.....					114
표 4-47.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득점	평균	115
.....					115
표 4-48.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평가	결과	115
.....					115
표 4-49. 인증 갱신을 득점 평균					117
.....					117
표 4-50. 인증 갱신을 평가 결과					117
.....					117

표 4-5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득점	평균		
.....				119		
표 4-52.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평가	결과		
.....				119		
표 4-53. 인증	건수		득점	평균		
.....				121		
표 4-54. 인증	건수		평가	결과		
.....				121		
표 4-55. 인증사업자수			득점	평균		
.....				123		
표 4-56. 인증사업자수 평가 결과				123		
.....						
표 4-57. 전년도	매출액		득점	평균		
.....				125		
표 4-58. 전년도	매출액		평가	결과		
.....				125		
표 4-5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득점	평균		
.....				127		
표 4-60.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평가	결과		
.....				127		
표 4-61. 핵심역량	보유	현황	득점	평균		
.....				129		
표 4-62. 핵심역량	보유	현황	평가	결과		
.....				129		
표 4-63.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평균
.....						131
표 4-64.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평가	결과
.....						131
표 4-65. 부채비율			득점	평균		
.....				132		
표 4-66. 부채비율			평가	결과		
.....				133		
표 4-67.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득점	평균		
.....				134		
표 4-68.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평가	결과		
.....				134		
표 4-69. 상근심사원	퇴사율		득점	평균		

.....	136
표 4-70. 상근심사원 퇴사율 평가	결과
.....	136
표 4-71. 관할지역 인증비율 득점	평균
.....	138
표 4-72. 관할지역 인증비율 평가	결과
.....	138
표 4-73. 교정 전·후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
.....	140

5.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표 5-1. 등급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방안
.....	148

6.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표 6-1.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151
표 6-2. 최종 등급	155
표 6-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156
표 6-4.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1점 상승 시)	158
표 6-5.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2점 상승 시)	159
표 6-6.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3점 상승 시)	160
표 6-7. 2015년 성장성 비교	162
표 6-8. 2015년 인증기관 안정성 비교	164
표 6-9. 2015년 인증기관 수익성	165
표 6-10. 해외 소재 인증기관 평가	168

그림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인증기관 운영 현황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농가	수	변화추이
.....			10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ha)		변화추이
.....			11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톤)		변화추이
.....			12

3.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그림 3-1. 인증사업	매출비율		분포도	
.....			46	
그림 3-2. 인증사업	행정처분		분포도	
.....			47	
그림 3-3. 기관	과태료	부과	분포도	
.....			48	
그림 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분포도	
.....			49	
그림 3-5. 인증	부적합률		분포도	
.....			50	
그림 3-6. 사후관리	빈도		분포도	
.....			51	
그림 3-7. 사업자당	투입	인력	분포도	
.....			52	
그림 3-8. 이중체크	적발	비율	분포도	
.....			53	
그림 3-9. 교육훈련	투입량		분포도	
.....			54	
그림 3-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분포도
.....				55
그림 3-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분포도	
.....			56	
그림 3-12. 인증	갱신율		분포도	

.....	57
그림 3-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분포도
.....	58
그림 3-14. 인증 건수	분포도
.....	59
그림 3-15. 인증사업자수	분포도
.....	60
그림 3-16. 전년도 매출액	분포도
.....	61
그림 3-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	62
그림 3-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분포도
.....	63
그림 3-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분포도
.....	64
그림 3-20. 부채비율	분포도
.....	65
그림 3-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분포도
.....	66
그림 3-22. 상근심사원 퇴사율	분포도
.....	67
그림 3-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분포도
.....	68

4.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그림 4-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75
그림 4-2. 인증사업자수	
.....	75
그림 4-3. 대칭분포의 표준형	그래프
.....	76
그림 4-4. 인증사업 매출비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98
그림 4-5. 인증사업 매출비율 교정 후 득점	분포

.....							98
그림 4-6. 인증기관	행정처분	교정	전	득점	분포		
.....							100
그림 4-7. 인증기관	행정처분	교정	후	득점	분포		
.....							100
그림 4-8. 기관	과태료 부과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							101
그림 4-9. 자체	행정처분	실적	교정	전	득점	분포	
.....							103
그림 4-10. 자체	행정처분	실적	교정	후	득점	분포	
.....							103
그림 4-11. 인증	부적합률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							105
그림 4-12. 사후관리	빈도	교정	전	득점	분포		
.....							107
그림 4-13. 사후관리	빈도	교정	후	득점	분포		
.....							107
그림 4-14.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교정	전	득점	분포	
.....							109
그림 4-15. 사업자당	투입	인력	교정	후	득점	분포	
.....							109
그림 4-16. 이중체크	적발	비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111
그림 4-17. 이중체크	적발	비율	교정	후	득점	분포	
.....							111
그림 4-18. 교육훈련	투입량	교정	전	득점	분포		
.....							113
그림 4-19. 교육훈련	투입량	교정	후	득점	분포		
.....							113
그림 4-2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							114
그림 4-2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교정	전	득점	분포		
.....							116
그림 4-22.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교정	후	득점	분포		
.....							116
그림 4-23. 인증	갱신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118

그림 4-24. 인증 갱신을 교정 후 득점 분포	118
그림 4-25.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교정 전 득점 분포	120
그림 4-26.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교정 후 득점 분포	120
그림 4-27. 인증 건수 교정 전 득점 분포	122
그림 4-28. 인증 건수 교정 후 득점 분포	122
그림 4-29. 인증사업자수 교정 전 득점 분포	124
그림 4-30. 인증사업자수 교정 후 득점 분포	124
그림 4-31. 전년도 매출액 교정 전 득점 분포	126
그림 4-32. 전년도 매출액 교정 후 득점 분포	126
그림 4-33. 인증매출액 증가율 교정 전 득점 분포	128
그림 4-34.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교정 후 득점 분포	128
그림 4-35. 핵심역량 보유 현황 교정 전 득점 분포	130
그림 4-36. 핵심역량 보유 현황 교정 후 득점 분포	130
그림 4-37.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132
그림 4-38. 부채비율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133
그림 4-39.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교정 전 득점 분포	135
그림 4-40.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교정 후 득점 분포	135
그림 4-41. 상근심사원 퇴사율 교정 전 득점 분포	137
그림 4-42. 상근심사원 퇴사율 교정 후 득점 분포	137

.....	137
그림 4-43. 관할지역 인증비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139
그림 4-44. 관할지역 인증비율 교정 후 득점	분포
.....	139
그림 4-45. 교정 전 등급	분포
.....	141
그림 4-46. 교정 후 등급	분포
.....	141

5.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6.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그림 6-1. 최종 등급	분포
.....	155
그림 6-2.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1점 상승	시)
.....	158
그림 6-3.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2점 상승	시)
.....	159
그림 6-4.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3점 상승	시)
.....	160
그림 6-5. 2015년 친환경인증기관 총자산증가율	평균
.....	163
그림 6-6. 2015년 친환경인증기관 매출증가율	평균
.....	163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1. 인증기관 등급제 적용에 따른 시범적 적용 필요

-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높은 인증기관의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소비자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발전의 바탕이 됨
- 선행 연구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¹¹⁾」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¹²⁾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6.12.2. 공포, '17.6.2. 시행)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의 근거 마련

11)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1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1.2. 등급제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인증기관 역량 평가 체계 구축

-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경영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수
- 인증기관의 조직 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 인증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체계와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1.3. 인증기관별 경영상태 분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 인증기관 조직 유형별 특성과 경영상태 분석, 인증기관별 경영상태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 ⇒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인증기관 조직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영상태 분석
 - 인증기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 현금흐름 등을 평가
- 재무평가 내용과 등급 결과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인증기관의 운영개선 방안 제시
- 인증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의 운영 방향 제시

2. 연구 목적

- 민간 인증기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 농식품부(2016)는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통하여 인증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함
 - 인증업무 민간이양에 따라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의 개선이 요구됨
 - ⇒ 등급제를 통한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선행연구¹³⁾를 통하여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제 인증기관 적용 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 인증기관 등급제에 이용되는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마련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범 평가 실시를 통하여 선행연구¹⁴⁾에서 설계된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범 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인증기관 평가 원 데이터 및 배점 결과 분석
 - 평가지표별 인증기관 경영 상태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제시
 - 평가지표별 변별력에 대한 검토

13)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14)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3.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의 개요

○ 시범 평가의 목적

-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시 적용되는 평가지표(기존 제시된 23개 지표)의 적합성 검토
- 각 평가지표 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 설정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 제도의 발전과 인증기관의 경영실태 파악

○ 평가 내용 및 방법

1. 평가 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민간 인증기관들의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및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들의 인식을 수집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관한 문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구성
 -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 인식의 경우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
2. 평가범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전국 61개 민간 인증기관 대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재무 및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4. 분석방법
 - 인증실적, 사후관리실적, 업무정지 실태, 재무 및 경영 성과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 및 데이터화
 - 등급제 점수 환산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각 지표의 타당성, 조사방법, 점수분포를 분석하여 수정된 등급제 최종 지표에 따른 교정 및 평가 결과 도출

○ 평가체계

1. 평가대상 : 국내 소재 친환경농산물 등의 민간 인증기관
2. 유효 대상자 수 : 61개 인증기관¹⁵⁾ 중 61개 기관(100%)
3. 기관별 평가 횟수 : 2회(서면평가, 현장평가)
4. 평가 기간
 - 서면평가 및 자료 제출: 2016년 12월 23일 ~ 2017년 1월 15일
 - 현장평가: 2017년 1월 18일 ~ 2017년 3월 9일
5. 평가 방법
 - 설문지 배포 및 회수(온라인 이메일 및 팩스 활용)
 -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평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자료 수집과 평가

15) 2017년 3월 3일자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취소 반영하여 최종 61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실적도 포함되어 있음

1.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¹⁶⁾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있는 인증기관은 64개
- 201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총 22,954건으로 61,946농가가 인증받았으며, 한 건당 평균 농가수는 약 2.6호¹⁷⁾
- 친환경농산물 국내 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인증 농가 수와 면적이 2015년 대비 각 8.3%, 4%로 감소하였으나 인증 건수는 3.2% 증가. 이는 단체 인증 중심의 저농약 폐지¹⁸⁾로 농가수와 면적이 감소한 것에 비하여 유기, 무농약 인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1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기관별)

18) 2015.12.31. 이후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

- 저농약을 제외한 2015년~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표 2-2와 같이 건수, 농가수, 면적이 증가. 저농약 폐지 후에도 유기, 무농약 인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표 2-1. 2015~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015 저농약 포함)

구 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건수(건)	22,245	22,954	3.2
농가수(호)	67,588	61,946	-8.3
면적(ha)	82,775	79,479	-4.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기관별)

표 2-2. 2015~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저농약 제외)

구 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건수(건)	20,534	22,954	11.8
농가수(호)	60,010	61,946	3.2
면적(ha)	75,125	79,479	5.8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기관별)

- 친환경농산물 국내 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6년까지 농가수는 15.4%, 면적은 12.5%, 출하량은 18.3% 감소
- 인증종류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2009~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유기,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 16.5%, 26.1% 상승

표 2-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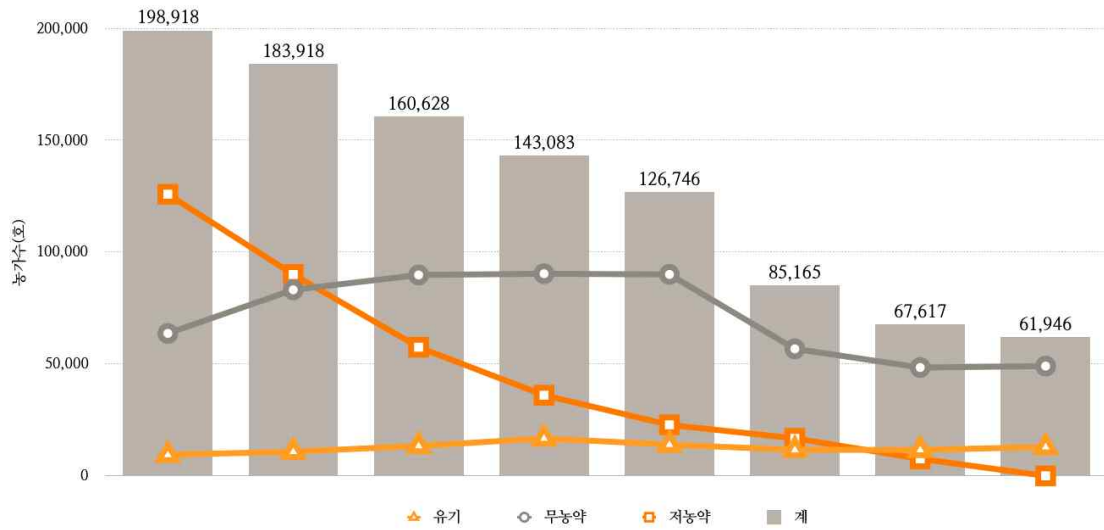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 ¹⁹⁾
유 기	농가수(호)	9,430	10,790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12,896	4.6
	면적(ha)	13,343	15,517	19,311	25,467	21,206	18,306	18,136	19,862	5.8
	출하량(톤)	108,810	122,243	123,314	168,256	116,991	95,694	94,430	110,054	0.2
무 농 약	농가수(호)	63,653	83,136	89,765	90,325	89,992	56,756	48,407	49,050	-3.7
	면적(ha)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9	59,617	-2.5
	출하량(톤)	879,930	1,039,576	979,791	841,513	693,296	479,441	365,635	461,163	-8.8
저 농 약	농가수(호)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16,776	7,599	0	-
	면적(ha)	117,306	83,956	58,108	37,165	22,208	16,679	7,629	0	-
	출하량(톤)	1,369,034	1,053,702	749,136	488,466	371,138	250,348	117,391	0	-
계	농가수(호)	198,918	183,918	160,628	143,083	126,746	85,165	67,617	61,946	-15.4
	면적(ha)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47	100,046	82,764	79,479	-12.5
	출하량(톤)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5	825,483	577,456	571,217	-18.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시도별)

19) 2009년 대비 2016년 농가수, 면적, 출하량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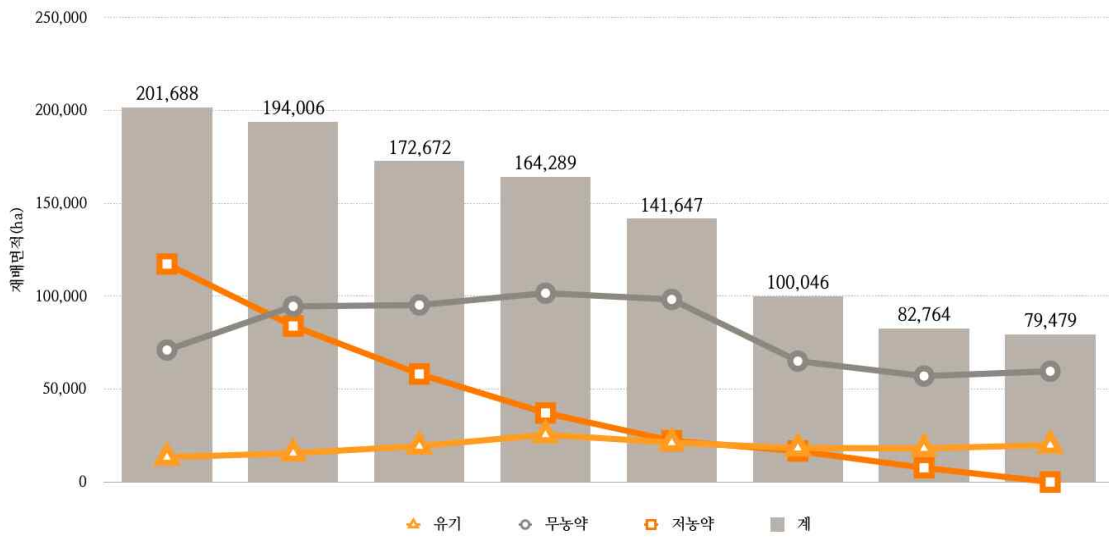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16년 유기 재배 농가수는 11.1%, 무농약 재배는 1.3% 증가
- 저농약 재배 농가수를 제외한 2015년 총 농가수는 60,108호이며 전년 대비 2016년 총 농가수는 3.2% 증가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농가 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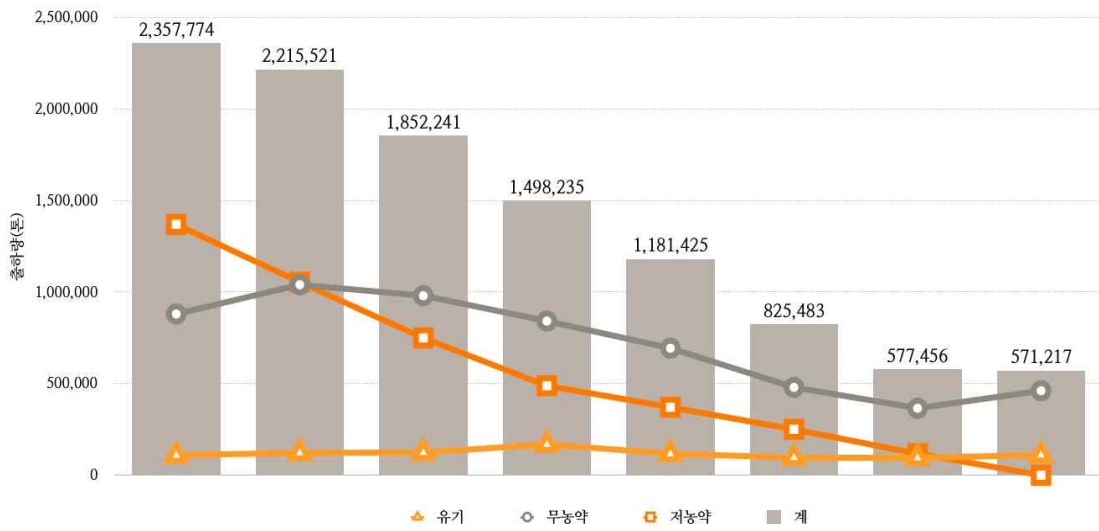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2016년 유기 재배면적은 9.5%, 무농약 재배면적은 4.6% 증가
- 저농약 재배면적을 제외한 2015년 총 재배면적은 75,135ha. 2016년 총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8% 증가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ha) 변화추이



- 인증종류별 친환경농산물 2015년 대비 2016년 유기 농산물 출하량이 16.5%,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이 26.1% 증가
- 저농약 농산물 출하량을 제외한 2015년 농산물 총 출하량은 460,065 톤. 2016년 농산물 총 출하량과 비교하였을 때 전년대비 24.2% 증가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톤) 변화추이



2. 인증기관 현황

- 시범 평가에 적용된 61개 민간 인증기관의 현황을 나타냄
- 61개 민간 인증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광주 지역에 19개의 인증기관이 분포하여 인증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31%), 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 13개(21%)이며, 그밖에 지역은 도별 1~6개의 인증기관이 분포

표 2-4. 2016년 인증기관 지역별 분포

구 분	강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제주	총계
기관 수	3	13	5	1	5	19	6	6	3	61
비율(%)	5	21	8	2	8	31	10	10	5	100

- 민간 인증기관 61개 중 인증 건수²⁰⁾가 가장 많은 10개 인증기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 2016년 인증 건수 상위 10위 민간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인증 건수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1,314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1,285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988
농업회사법인 (주)성농	846
토지영농조합법인	785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721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	606
(주)한국유기농인증원	590
(주)온누리친환경	527
(주)비씨에스코리아	518
합계	8,18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20)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인증 건수를 말함

○ 인증건 실적 분포

- 61개 인증기관 중 1,000건을 초과하는 인증을 시행한 기관은 2개(3%)인 반면, 2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인증기관이 17개(28%)로 나타남

표 2-6. 2016년 인증 건수 실적 분포

구 분	1000건 초과	501~1000건	201~500건	51~200건	50건 이하	합계
인증기관 수	2	9	33	15	2	61
비 율(%)	3	15	54	25	3	1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 인증건 점유율 분포

- 61개 인증기관의 평균 점유율은 1.6%이며 점유율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유율 5%를 초과하는 인증기관의 점유율 합계는 12.5%

표 2-7. 2016년 인증점유율 분포

구 분	5% 초과	2~5%	2%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2	12	47	61
비 율(%)	3	20	77	1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 인증농가 실적분포

- 61개 인증기관 중 2,000 농가를 초과하여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3개(5%), 1,000~2,000 미만의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23개(38%), 500~1,000 미만의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16개(26%), 500 농가 이하의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19개(31%)로 나타남

표 2-8. 2016년 인증농가 실적분포

구 분	2000농가 미만	1000~2000농가 미만	500~1000농가 미만	500농가 미만	합계
인증기관 수	3	23	16	19	61
비 율(%)	5	38	26	31	1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 해외 생산자 인증

- 민간 인증기관 실태 조사에 응한 61개 인증기관 중 10개(16%) 인증기관이 해외에 있는 생산자에 대하여 심사 및 인증을 시행

표 2-9. 2016년 해외인증 진행 비율

구 분	해외인증 진행 인증기관	해외인증 비진행 인증기관	합계
인증기관 수	10	51	61
비 율(%)	16	84	1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 (2017. 인증기관 현황조사)

- 61개 민간 인증기관의 2016년 말 해외 인증 건수는 242건(30,990건 중 0.6%)로서, 민간인증 대부분은 국내 생산자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

표 2-10. 해외 인증건수 비율

구 분	해외 인증 건수	국내 인증 건수	합계
인증 건수	242	30,990	31,232
비 율(%)	0.6	99.4	100.0

자료 : 이시도르연구소 (2017. 인증기관 현황조사)

제3장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1. 시범 평가 개요

1.1. 시범 평가의 필요성

- 선행 연구²¹⁾에서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평가 지표의 콘텐츠 설정
⇒ 본 연구(후속 연구)에서는 등급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과 정밀한 배점 교정 작업이 필요
- 등급제 시행에 앞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에 대한 자격 요건과 운영
방안의 제시가 필요
- 각 지표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21)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1.2. 일반 사항

- 선행 연구²²⁾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61개 인증기관²³⁾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
- 해외에 소재하는 3개 인증기관²⁴⁾은 현지 방문의 어려움으로 본 시범 평가에서는 제외
- 전체 61개 인증기관에서 시범 평가에 필요한 조사표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재무제표 등)
- 23개 지표 중 현장 방문을 통하여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9개 지표²⁵⁾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체 인증기관 방문
-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중간 점수를 부여
 - 총점이 5점인 경우 3점 부여
 - 해당 기관은 사단법인 2개, 대학 산학협력단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22)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7.

23) 연구를 최초로 수행하는 시점에는 62개 인증기관이었으나, 진행과정에 1개의 인증기관이 취소되었으며, 최종 61개 인증기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외 소재 인증기관 3곳 제외

24) 해외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은 3곳으로 ACO(오스트리아), Kiwa BCS Oko Garantie GmbH(독일),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네덜란드)임

25) 지표9, 지표10, 지표11, 지표13, 지표18, 지표19, 지표21, 지표22, 지표23

2. 시범 평가의 과정

2.1. 평가 절차

- 등급제 시범 평가는 조사표 양식 개정에서 평가 지표 개선까지 표 3-1과 같이 진행
-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 구성

표3-1.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평가 절차



2.2. 조사표 양식 개정 및 설명회 개최

- 선행 연구²⁷⁾에서 사용된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이하 조사표) 양식을 개정
 ⇒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참조
- 인증기관에서는 등급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표 작성 및 현장 평가 시 인터뷰 담당
- 등급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방법과 각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2.3. 평가반 구성

- 등급제 시범 평가를 실시할 평가반의 구성 필요. 경영 평가를 포함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평가반을 구성
- 평가반은 인증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 구성
- 평가반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유지 서약서²⁸⁾”를 작성하여 방문하는 전체 인증기관에 제출
- 현장 평가 인원은 현장 평가를 주도하는 선임 평가자와 현장 평가 시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후임 평가자 2인으로 구성

26)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참조

27)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28) 부록9. 비유지 서약서

2.4. 경영 평가와 서면 평가

-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조사표²⁹⁾ 배포와 회계 관련 자료(15년 기준)³⁰⁾를 요청
 -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조사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전체 인증기관에서 100% 응답(2017.4.1.까지 접수)
 - 2017년 1월~3월까지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
 - 또한 인증사업 매출액, 인증사업자 교육 등과 같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이하 '친인협')에 요청

- 각 인증기관에 서면조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 관련자료 요청 및 조사표 배포와 작성요령 안내

- 조사표,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자료 등을 평가 지표에 적용

- 회계에 관련된 자료는 평가를 시행하는 전년도 201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월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2016년 6월 이전에 종료된 최신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1개 기관)

-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에 대한 경영 상태 분석

29)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30) 시범 조사 시기가 1~3월로 2016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2015년도의 자료를 이용하게 되었음

2.5. 현장 평가

- 서면 평가 완료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인증기관 지정 취소된 곳은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

표3-2. 현장 평가 일정

방문 일자	인증기관
2017.1.4.(수)	등급제 설명회
2017.1.18.(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19.(목)	(사)한솔농림수산물인증센터,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2017.1.25.(수)	가평군농업기술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양평친환경농업인증센터
2017.1.31.(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사)농산물품질평가원, 네오친환경인증센터(주), (주)에코리더스인증원
2017.2.3.(금)	(주)한국유기농인증원, (사)친환경축산협회, 오씨케이(주),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2017.2.6.(월)	건국에코써트인증원(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환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2.8.(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비씨에스코리아,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
2017.2.10.(금)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봉화군농업기술센터
2017.2.13.(월)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심회,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2017.2.14.(화)	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업연구원, (주)에버그린농우회, 글로벌유농영농조합법인
2017.2.17.(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 일자	인증기관
2017.2.20.(월)	농업회사법인 예농주식회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2.23.(목)	한국농식품인증원(주)
2017.2.24.(금)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사)자연들농식품인증원, 농업회사법인(주)성농, (주)우리농인증원
2017.3.2.(목)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토지 영농조합법인,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한국작물연구소(주)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주)이코이드, 농업회사법인(주) 한국농산업연구소,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3.3.(금)	(사)유기농진흥센터,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주), 도담친환경(유), 스마일친환경(주)
2017.3.7.(화)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주)인증포럼, (주)지리산인증
2017.3.8.(수)	(재)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친환경인증센터
2017.3.9.(목)	(주) 온누리친환경,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6. 전문가 회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표 검토와 평가방법, 득점 기준 교정을 위하여 1차³¹⁾, 2차³²⁾ 전문가 회의 실시
- 전문가 회의 외에도 현장 평가 시 인증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 지표 교정에 반영

31) 2017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국에코씨트인증원(주), (주)비씨에스코리아, (주)지아이, 한국작물연구소(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업연구원, 스마일친환경(주)에서 참석

32) 2017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 참석

3. 평가 방법

3.1. 평가의 범위 설정

○ 조사대상 연도

⇒ 조사대상 연도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모든 평가지표(23개)에 대해 동일한 평가 대상 기간을 적용)

○ 조사대상 조직 범위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대학총장, 시·군지자체장이 인증기관장으로 지정된 경우 친환경인증 관련 업무의 실질적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대학 산학협력단 11개 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

○ 인증건수/사업자수 범위

⇒ 인증건수/사업자수의 범위에는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포함

3.2. 평가 방법의 기본 원칙 수립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23개 지표에 대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검토

- 기존 평가 방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평가 방법의 조정

○ 평가 방법의 검토 시 적용한 원칙

- **인증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 : 등급제 평가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등급제 담당 업무

를 최소화

- 농관원 등 관련 기관의 등급제 관련 업무 경감 : 농관원과 친인협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는 실무의 과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가공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검토
- **평가기관의 효율성 제고** : 평가기관이 제한된 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완료할 수 있도록 효율적 평가 방법 고려

○ 조사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

-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조사표 사전 발송³³⁾
- 조사표 회신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 입력이 최종 확정되는 일자(1월 15일)까지 요청
- 회계 관련 자료 요청

※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는 세무관련 기관(국세청, 세무사 등)의 공식 발행이 3월에 이루어져, 금번 조사에서는 부득이 2015년도의 회계 관련 자료를 조사에 이용

⇒ 조사대상연도(전년도)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및 평가기간을 **4월 이후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방문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원칙

- 방문 일주일전에 등급제 담당자에게 현장 평가 일정과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
- 1~2시간 이내에 현장 평가 업무를 종료하여 등급제 시행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방문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지연의 방지 :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33) 본 등급제 시범 평가를 위하여 2016년 12월 23일 협조 요청과 조사표 작성 요청을 하였음

○ 인증기관 비협조에 따른 조치

－ 정보 미제공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득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

－ 평가 거부

인증기관이 등급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득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

※ 금번 시범 조사에서 비협조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비협조의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지표별 평가 방법

4.1. 인증사업 매출비율

표3-3. 인증사업 매출비율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 인증사업 매출비율은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사업자 총매출액에서 친환경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
- 서면 평가 : 조사표, 손익계산서 평가

⇒ 조사표에 작성된 인증사업 매출액과 인증기관 전체 매출액 평가

⇒ 평가조사표에 작성된 인증사업 매출액과 친환경인증 관리 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을 교차 확인

⇒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인증기관의 총 매출액 확인

- 현장 평가 : 확인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3월 이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전년도 회계자료가 발행되지 않아, 조사대상 연도의 전년도의 자료를 활용(예컨대, 2016년 2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2015년 회계 관련자료 확인)

⇒ 회계자료는 회계 사무소 등 제3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인증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엑셀 파일 등은 증빙 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재무제표가 발행되지 않아 매출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센터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장 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회계자료를 확인

변경사항	
•	최초 평가 방법은 친환경 포함한 GAP, HACCP 등 취급하는 모든 인증사업에 대한 매출 비율이었으나 친환경인증으로 한정함
•	평가 시 총 매출에서 친환경인증 외 타 인증에 대한 매출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평가 시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사업자 총매출에 대한 자료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며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4.2. 인증기관 행정처분

표3-4. 인증기관 행정처분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 농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이 행정처분 받은 개월 수를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지정기준) 준수 의지를 평
- 서면 평가 : 조사대상연도의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현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4.3. 기관 과태료 부과

표3-5. 기관 과태료 부과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 인증기관이 행정실무에서의 과실이 발생할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합계를 지표에 반영
- 서면 평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과태료 부과 현황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4.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표3-6. 자체 행정처분 실적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 인증기관이 인증 사업자를 관리하여 행정처분을 처리한 실적으로 사후관리 시 현장 평가의 정확성과 적극성 평가
- 서면 평가: 행정처분 건수, 연초 인증사업자수, 연말 인증사업자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 연초/연말 인증사업자수에는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이 포함

변경사항

- 최초 평가 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이었으나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의 범위가 넓어 조사 방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자체 인증취소 건수”로 평가 범위를 축소

4.5. 인증 부적합률

표3-7. 인증 부적합률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5	인증 부적합률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 \{(\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 100$

- 인증 부적합률은 인증심사의 정확성을 평가
- 서면 평가: 조사대상 연도의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조사대상 연도의 인증 건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인증건수는 조사대상 연도 내 발행한 인증서를 기준으로 작성
 - ⇒ 인증내역 등 변경에 의하여 인증서를 재발행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4.6. 사후관리 빈도

표3-8. 사후관리 빈도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6	사후관리 빈도	$(\text{사후관리 건수})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사후관리 빈도는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횟수이며 인증사업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평가
- 서면 평가: 사후관리 건수, 연초 인증사업자수, 연말 인증사업자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변경사항

- 사후관리 빈도의 평가 방법에서 “인증건수”를 “사업자수”로 변경
- 인증건수는 개인과 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각 하나의 건으로 취급되나 투입되는 노력량이 달라지므로 투입하는 노력량에 대하여 실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수로 변경

4.7. 사업자당 투입 인력

표3-9. 사업자당 투입 인력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frac{\{\text{연말 인증사업자수}\}}{\{(\text{연초 상근심사원수})+(\text{연말 상근심사원수})\}/2}$

- 상근심사원이 사업자당 심사 및 사후관리에 투입된 노력량으로 상근심사원 당 담당하는 사업자를 나타냄
- 서면 평가: 연말 인증사업자수, 연초 상근심사원수, 연말 상근심사원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변경사항

- 평가 방법에서 “총투입일수”를 “인증사업자수”로 변경
- 현장 평가 시 심사원별 총투입일수에 대한 증빙 자료 확인과 건당 2명 이상의 심사원이 투입되는 경우 심사원별 투입일수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으며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사업자수로 변경

4.8. 이중체크 적발 비율

표3-10. 이중체크 적발 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frac{\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 \times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 이중체크 적발 비율은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인증 관정에 관련된 문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하는 인정관리(Accreditaion) 방법임
- 서면 평가: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수, 연초 인증사업자수, 연말 인증사업자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4.9. 교육훈련 투입량

표3-11. 교육훈련 투입량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9	교육훈련 투입량	$\frac{\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text{연초 상근직원수})+(\text{연말 상근직원수})\}/2+(\text{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 교육훈련 투입량은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직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평가
- 서면 평가: 상근 심사원 및 직원 교육 이수 현황
- 현장 평가: 상근 심사원 및 직원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연초/연말 상근직원수, 전년도 퇴사자수, 연초/연말 사업계획서(인력현황)
- 주의사항:

- ⇒ 조사대상 연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 조사대상 연도에는 근무하였으나 평가시점에 퇴사한 경우, 조사대상 연도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 대상으로 인정
-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에서 받은 교육
- ⇒ 인증기관장 교육은 지표10.에서 다루므로 제외

변경사항

- 평가 방법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 수료 기관에 대한 설명 추가
-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에서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한함“으로 변경

4.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표3-12.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No.	지표	평가 방법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 내의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 인증기관장(사업체의 대표)의 인증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공식 행사나 교육 등에 참여한 기록이나 문서를 통하여 평가함
- 서면 평가: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현장 평가: 인증기관장이 이수한 교육 수료증, 포럼, 워크숍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주의사항:

- ⇒ 관련 문서 또는 수료증 확인 시 조사대상 연도로부터 최근 3년 내의 문서여야 하며, 행사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 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으로 제한
- ⇒ 조사대상 연도에 근무를 하고 평가 시 퇴사한 경우, 기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 등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변경사항

- 현장 평가 시 이전 평가 방법에 기재된 교육 외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 등 교육에 참석한 기관장이 있었으며,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범위를 변경
- 현장 평가 시 5년 이상 된 교육 등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활동 내역만 인정 예컨대, 조사대상 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4년~2016년에 교육, 포럼 등에 참석한 내용을 인정

4.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표3-1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No.	지표	평가 방법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 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 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 상근심사원이 해당 인증기관에 근속으로 근무한 업무 경력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의 가치를 평가함
- 서면 평가: 연말 상근심사원의 근속 개월수, 연말 상근심사원수
- 현장 평가: 심사원 현황, 상근심사원별 서명이 포함된 최근 심사 보고서

- 주의사항: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 현재 인증기관 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인증기관 승계시 이전 근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승계되는 경우에는 이전 경력 인정(단,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실제 심사원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이 포함된 최근 심사 보고서를 확인
- ⇒ 상근직원으로 입사는 하였으나, 입사 후 바로 인증 심사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최초 입사 일자와 최초 심사 보고서를 교차 확인

변경사항

- 현장 평가 시 입사 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평가 방법에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만 포함

4.12. 인증 갱신율

표3-14. 인증 갱신율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2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건수)/(국내 인증건수)

- 전년도 인증사업자 중에서 동일 인증기관에 인증을 갱신한 비율이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사업자의 만족도를 나타냄
- 서면 평가: 연간 인증갱신건수, 국내 인증건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인증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갱신한 인증사업자 수

<p>변경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갱신농가수”에서 “인증갱신건수”로 변경 • 최초 지표 설정 시 단체 인증 농가에서 개인 농가로 변경하는 경우 인증 이력은 그대로 갱신이 되지만, 인증번호가 새로 발급되어 갱신 농가가 아닌 신규농가로 인식되어,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하여 건수가 아닌 농가수로 변경함
--

4.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표3-15.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No.	지표	평가 방법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frac{\text{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 \times 100$ <p>※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p>

-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인증사업자에게 교육하는데 투입한 시간을 말함
- 서면 평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증사업자 교육 연 인원, 연초/연말 인증사업자수
- 현장 평가: 인증사업자 교육 실적 표본 조사
 - 표본조사 = $\sqrt[3]{\text{전체 교육 연인원}}$ (올림 적용)
 - 예컨대, 교육 받은 전체 사업자가 1,500명인 경우 $\sqrt[3]{1,500} = 11.4$ 이며 11.4명에 대한 올림을 적용하여 12명에 대한 표본 조사 실시
- 주의사항:
 -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17조 및 기타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에 따라 실시한 교

- 육은 인증기관의 의무 이행 사항으로, 지표13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현장 평가 시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건은 10분~30분 내외로 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사업자 인증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교육일시, 강사, 교육 콘텐츠, 교육자 서명 등)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며 인증사업자 외 일반사업자를(예비 인증사업자 포함)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제외
- ⇒ 인증기관이 주관하여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

변경사항

- 최초 평가 방법은 사업자 인증교육에 대한 총시간을 합산하여 평가하였으며 현장 평가 시 일부 인증기관에서만 교육 시간이 확인 가능하였음. 총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은 실제 투입 시간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평가 방법의 비효율을 초래
- 전문가 회의 시 해당 지표에 대하여 시간이 아닌 인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
-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에서 “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으로 변경

4.14. 인증 건수

표3-16. 인증 건수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건수의 합계임
- 서면 평가: 조사대상 연도의 총 인증 건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인증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조사

4.15. 인증사업자수

표3-17. 인증사업자수

No.	지표	평가 방법
15	인증사업자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인증 사업자 수
- 서면 평가: 조사대상 연도의 총 인증 건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인증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조사
⇒ 단체인증의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건으로 인정

4.16. 전년도 매출액

표3-18. 전년도 매출액

No.	지표	평가 방법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친환경 인증사업 매출 총액)

- 매출액은 인증기관의 규모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인증사업에 대한 매출액
- 서면 평가: 조사대상 연도의 인증사업 매출 총액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4.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표3-1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No.	지표	평가 방법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 / (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100 - 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 인증사업자수 증가율은 인증기관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친환경인증사업자에 대한 증가율을 평가
- 서면 평가: 당기말 인증사업자수, 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변경사항

-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에서 ”인증사업자수 증가율“로 변경
- 평가 방법은 “인증매출액”에서 “인증사업자수”로 변경
-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인증비용을 저렴하게 운영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증가율이 낮아지므로 인증사업자수로 변경

4.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표3-20. 핵심역량 보유 현황

No.	지표	평가 방법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 인증기관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서면 평가: 상근직원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현장 평가: 상근직원이 이수한 교육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확인
- 주의사항:
 - ⇒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상근직원이 받은 국제 교육을 뜻함
 - ⇒ 문서 또는 수료증 확인 시 조사대상 연도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문서여야 하며,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 현장 평가 시 퇴사를 한 경우 조사대상 연도에 교육을 수료한 당사자의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대상으로 인정

변경사항

- 현장 평가 시 이전 평가 방법에 기재된 교육 외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 등 교육에 참석한 상근직원이 있었으며 핵심역량 보유 현황의 범위를 변경
- 현장 평가 시 5년 이상 된 교육 등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활동 내역만 인정 예컨대, 조사대상 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4년~2016년에 교육, 워크숍 등에 참석한 내용을 인정

4.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표3-21.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No.	지표	평가 방법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 인증기관의 국제기준(ISO17065)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 서면 평가: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 현장 평가: ISO17065 인정서 확인
- 주의사항:
 - ⇒ ISO17065 인정서 유효기간 확인,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여부
 - ⇒ 농축산물에 한하여 ISO17065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외의 섬유, 화장품 등 농축산물 인증과 관련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4.20. 부채비율

표3-22. 부채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20	부채비율	$\frac{\{(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times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서면 평가: 재무 상태표 확인
- 현장 평가: 해당사항 없음

변경사항

- 인증기관 평가 시 부채비율에 대하여 마이너스(-)값 발생
- 자본총계가 미처리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경우 “자본잠식³⁴⁾”에 해당되어 부채비율 평가는 무의미하므로 최하점 부여

4.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표3-2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No.	지표	평가 방법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 (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 매출액 대비 상근심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심사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
- 서면 평가: 상근심사원 인건비, 상근심사원별 근무개월수
- 현장 평가: 조사대상 연도에 대한 상근심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인건비 지불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 주의사항:
 - ⇒ 평가 시점에 퇴사한 경우 조사대상 연도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 대상에 포함
 - 예컨대, 조사대상 연도가 2016년이며 현장평가를 2017년 2월에 실시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 퇴사한 대상도 평가에 포함
 - ⇒ 평가 방법에서 “전년도”의 의미는 조사대상 연도를 뜻함

34) 자본잠식(Impaired Capital), 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뜻함,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변경사항

- 최초 지표에서는 상근심사원 인건비/총매출액이었으며 중간 보고 이후 득점 기준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1명당 -1점으로 감점제로 변경
- 현장 평가 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근 심사원이 있었으나 인증기관과 동의 후 성과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평가 방법을 변경
- 득점 기준 변경에 따라 평가 방법을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로 변경
- 평가 시 조사대상 연도에 입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수를 인정하며,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22. 상근심사원 퇴사율

표3-24. 상근심사원 퇴사율

No.	지표	평가 방법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인증기관이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 서면 평가: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 연초 상근심사원 수
- 현장 평가: 상근심사원 현황
- 주의사항:
 -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질병,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변경사항

- 평가 시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입사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간주하여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4.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표3-25. 관할지역 인증 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frac{\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건수}}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 관할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9개 지역으로 분류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한 자치도와 같은 구역으로 분류
- 서면 평가: 관할지역 인증건수, 총인증건수
- 현장 평가: 법인등기부등본(지사가 있는 경우),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 확인
- 주의사항:
 -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 인증실적은 국내 인증만 인정

4.24. 추가 지표 제안

○ 추가 지표 개발 배경

- 친환경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제도의 전파,

- 개발,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또한,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후진양성에 참여하여 심사원의 역할 강화와 제도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
 - 친환경인증제도 발전에 매우 유효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추가
 -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는 친인협 등 친환경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강사 등을 협조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표3-26과 같이 가점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지표24.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표3-26.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No.	지표	평가 방법
24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표 3]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로서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내 강사로 활동한 경우

- 서면 평가: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현장 평가: 강사 활동 관련 증빙자료
- 주의사항:
 -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이며, 위의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
 -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내 강사로 활동한 경우에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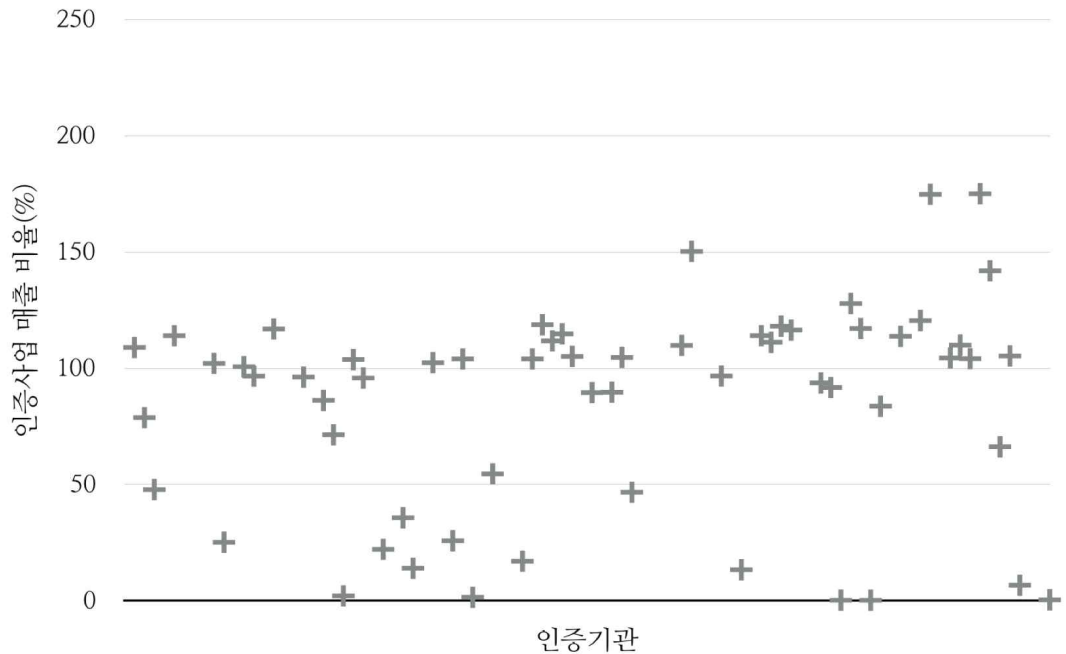
5. 지표별 평가 지수의 분포

- 지표별 평가에서 사용된 로데이터(raw data)는 조사표, 현장 평가, 보완 자료를 받아 정리한 데이터이며 부록12. 인증기관 시범조사 득점표 참조

5.1. 인증사업 매출비율

- 평균 : 84.6%
- 최댓값 : 175.13%
- 최솟값 : 0.2%

그림3-1. 인증사업 매출비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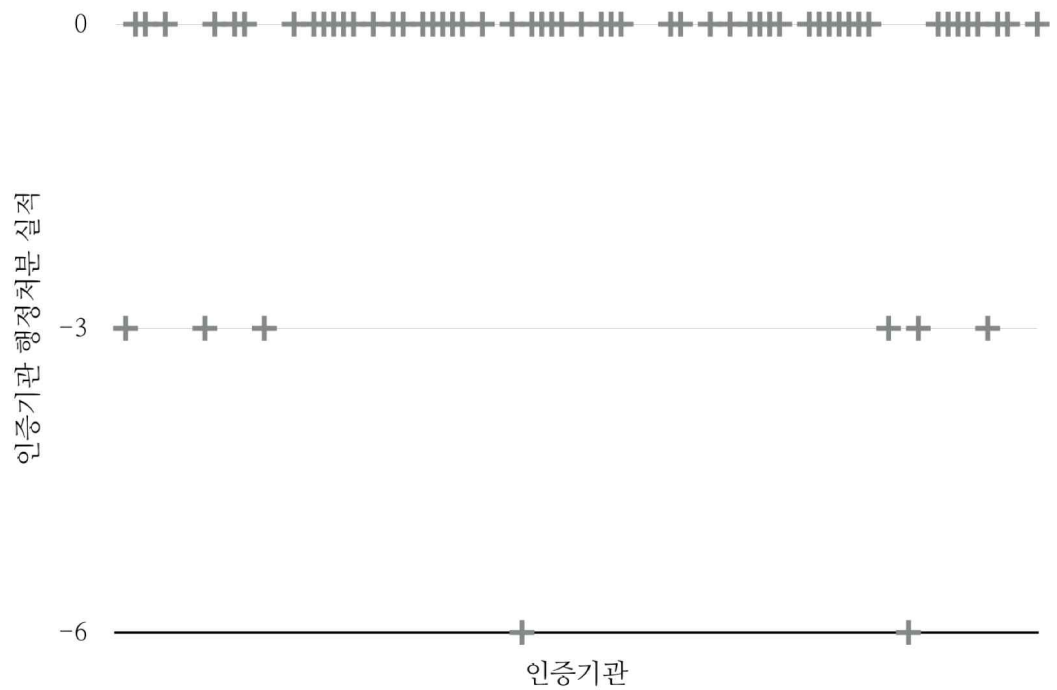
- 100%이상 나온 값은 사업자총매출 보다 인증사업 매출이 큰 경우이며 무효한 값임
- 전체 61개 인증기관 중 100%이상의 값이 도출된 곳은 31개이며 이중 한 곳은 241.9%가 도출되어 도출된 값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평균값과 최솟값에서 제외

- 사업자총매출의 경우 회계사무소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인증사업 매출액의 경우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임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인증사업 매출액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보이며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 매출액을 기재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

5.2. 인증기관 행정처분

- 평균 : -0.49
- 최댓값 : 0
- 최솟값 : -6

그림3-2. 인증사업 행정처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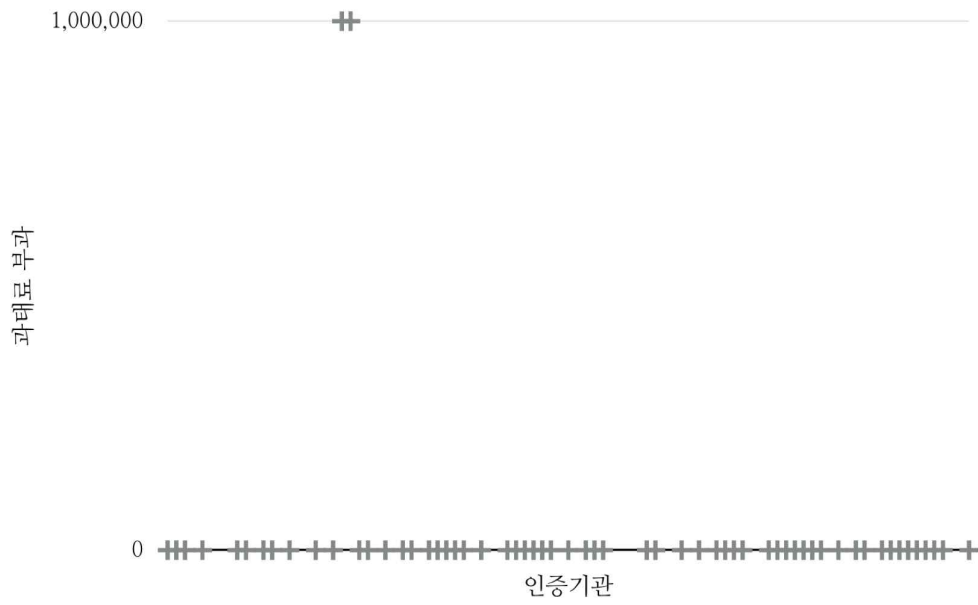


- 전체 61개 인증기관 중 8개의 인증기관에서 업무정지를 받음
- 업무정지 6개월 2곳, 3개월은 6곳임

5.3. 기관 과태료 부과

- 전체 61개 인증기관 중 2곳에서 각 1,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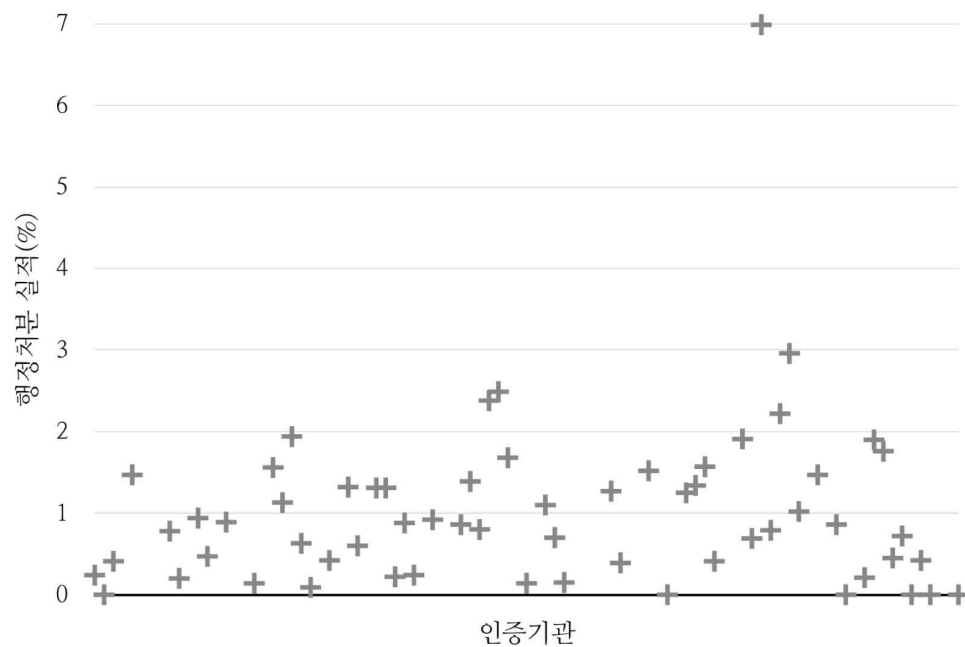
그림3-3. 기관 과태료 부과 분포도



5.4. 자체 행정처분 실적

- 평균 : 1.02%
- 최댓값 : 6.99%
- 최솟값 : 0%

그림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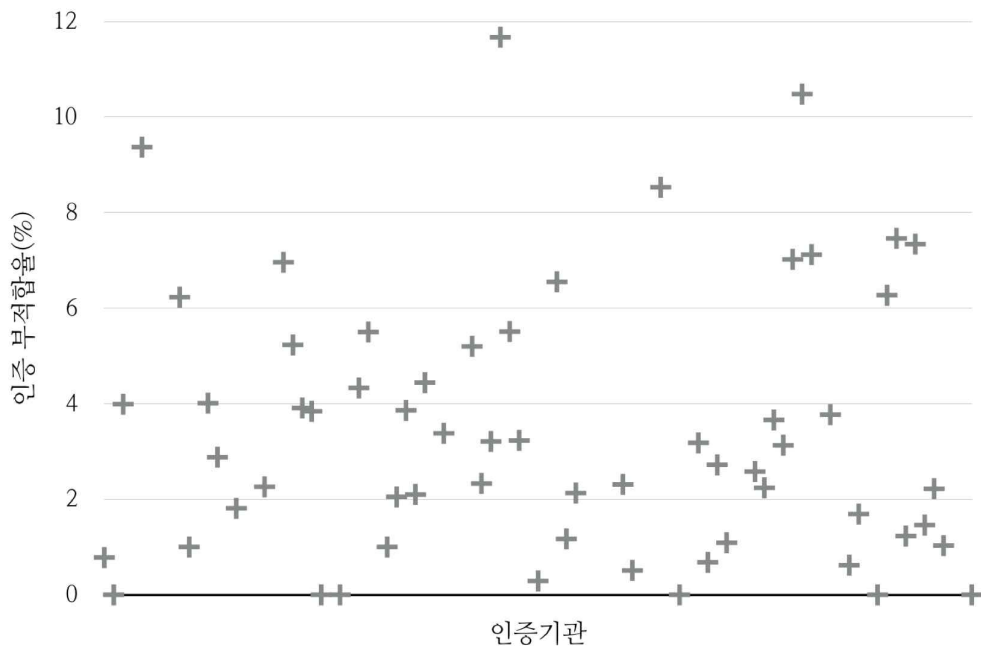


- 61개 인증기관 중 자체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인증기관은 6곳,
자체 행정처분 실적 1건은 6곳, 2건 이상인 곳은 49곳이며 자
체 행정처분 실적이 가장 높은 건은 30건

5.5. 인증 부적합률

- 평균 : 3.42%
- 최댓값 : 11.67%
- 최솟값 : 0%

그림3-5. 인증 부적합률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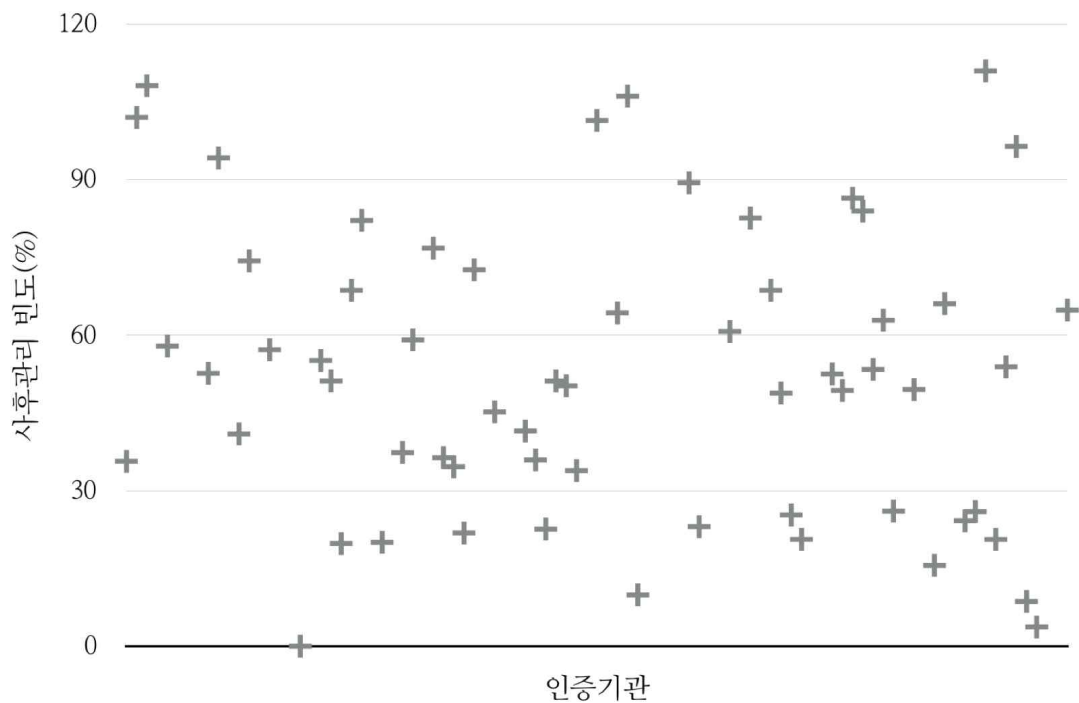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부적격 판정을 하지 않은 인증기관은 6곳이며, 1회 이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증기관은 55곳
- 부적격 판정을 가장 많이 한 곳은 1년 동안 63회 부적격 판정을 내림

5.6. 사후관리 빈도

- 평균 : 53.26%
- 최댓값 : 111%
- 최솟값 : 3.71%

그림3-6. 사후관리 빈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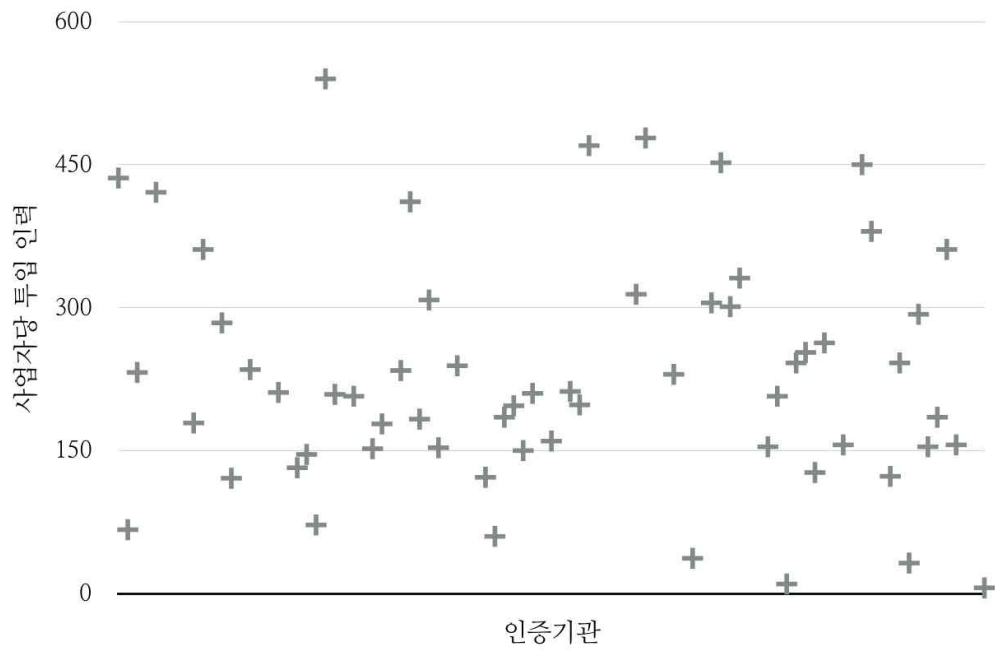


-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건수를 “0”건으로 처리하여 사후관리 빈도가 0% 나옴
- 0%가 나온 1개의 인증기관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하였음
- 60개 인증기관 중 비상근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상근직원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곳은 44곳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평균 건수는 551건이며 최고 건은 1,964건임

5.7. 사업자당 투입 인력

- 평균 : 230
- 최댓값 : 540
- 최솟값 : 6

그림3-7. 사업자당 투입 인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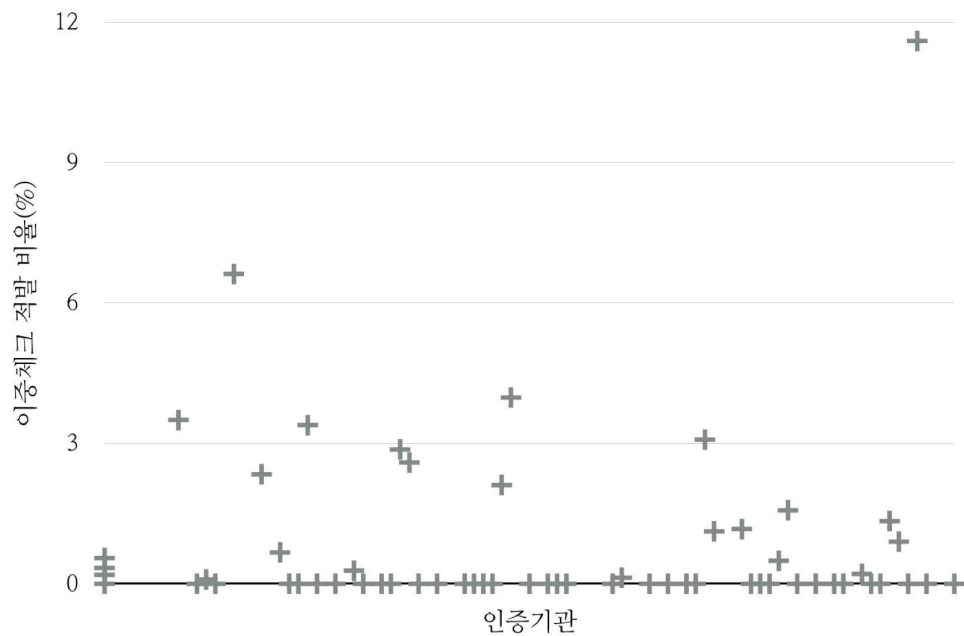


- 2016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심사원이 담당하는 평균 사업자 수는 230명
- 심사원별 최대 사업자 관리수는 540명이며 최소 6명을 관리

5.8. 이중체크 적발 비율

- 평균 : 0.84%
- 최댓값 : 11.6%
- 최솟값 : 0%

그림3-8. 이중체크 적발 비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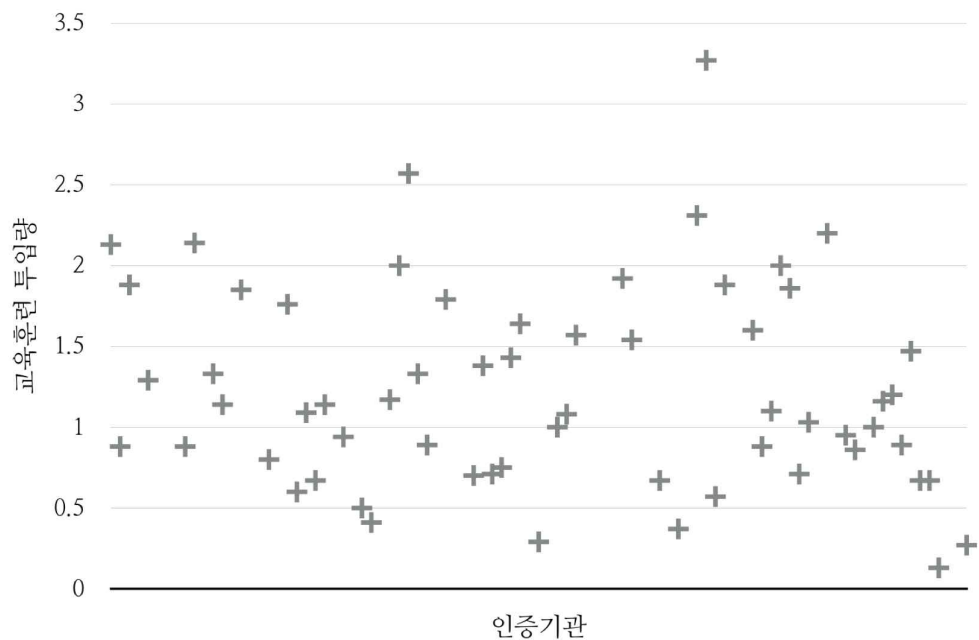


- 61개 인증기관 중 인증기관 27곳에서 이중체크로 적발
- 이중체크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된 경우는 96건이며, 이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작성된 조사표에 의한 결과
- 이중체크는 시판조사 또는 인증기관 감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

5.9. 교육훈련 투입량

- 평균 : 1.23%
- 최댓값 : 3.27%
- 최솟값 : 0.13%

그림3-9. 교육훈련 투입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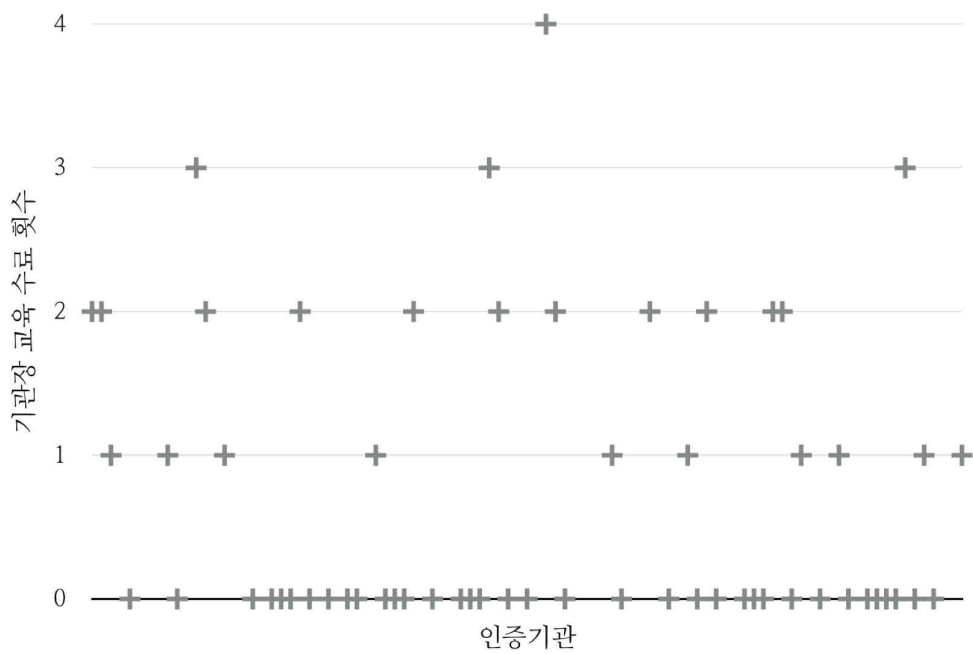


- 전체 61개 인증기관에서 평균 10건을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최소 2건에서 최대 23건의 교육훈련이 진행
- 전반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

5.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평균 : 0.74회
- 최댓값 : 4회
- 최솟값 : 0회

그림3-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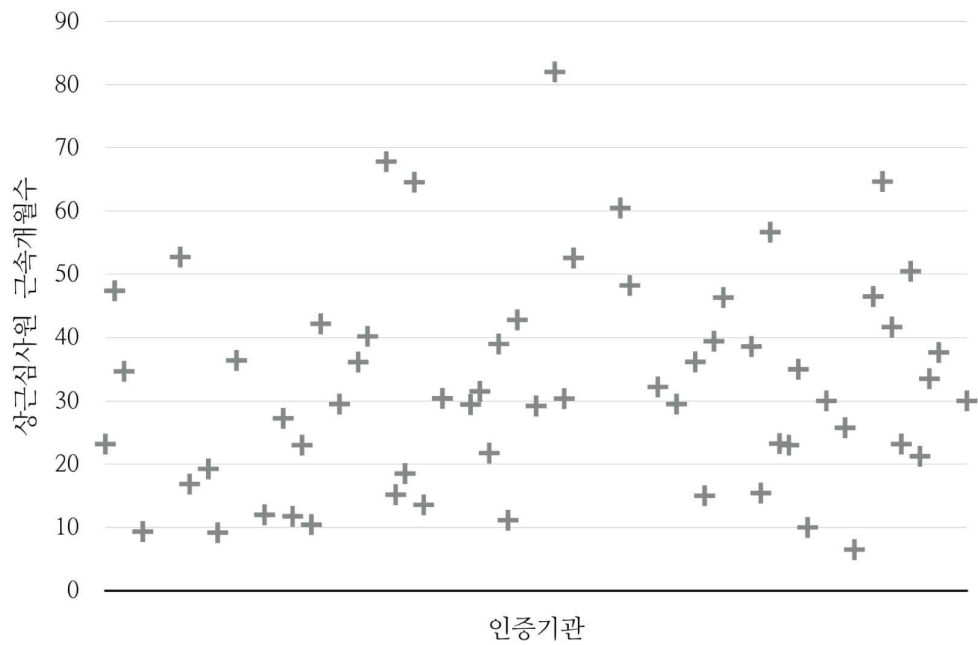


- 61개 인증기관 중 25개 인증기관은 기관장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인증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참석
- 평균 1회 가량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최대 4회를 참석

5.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평균 : 32.39개월
- 최댓값 : 82개월
- 최솟값 : 6.5개월

그림3-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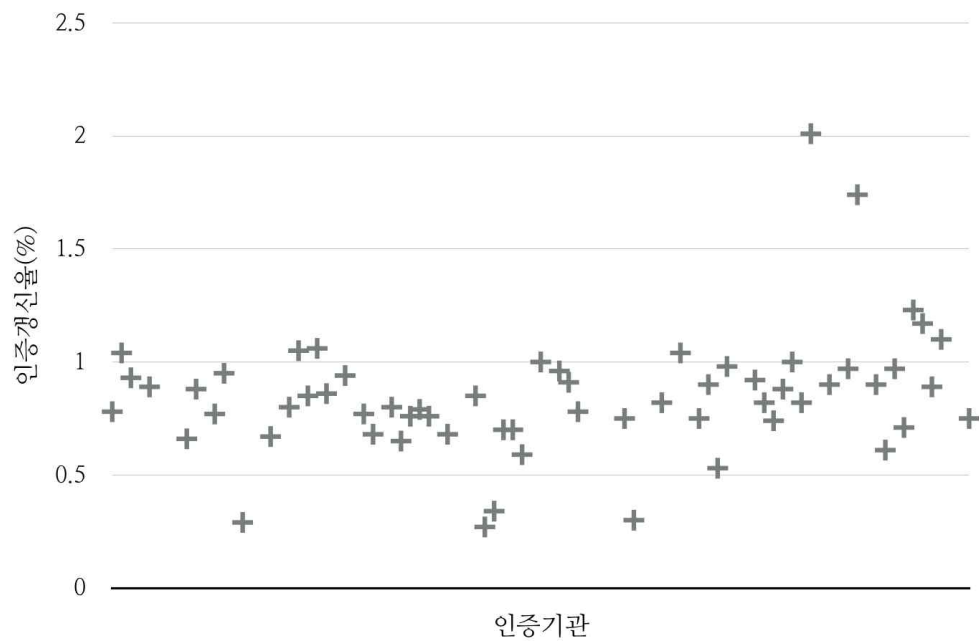


- 현재 소속된 인증기관의 상근심사원 평균 근속연수는 32개월로 2년 6개월
- 전체 인증기관 중 상근심사원의 근속연수가 평균 1년 미만인 곳은 6곳,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곳은 50곳 5년 이상인 곳은 5곳

5.12. 인증 갱신율

- 평균 : 0.85%
- 최댓값 : 2.01%
- 최솟값 : 0.27%

그림3-12. 인증 갱신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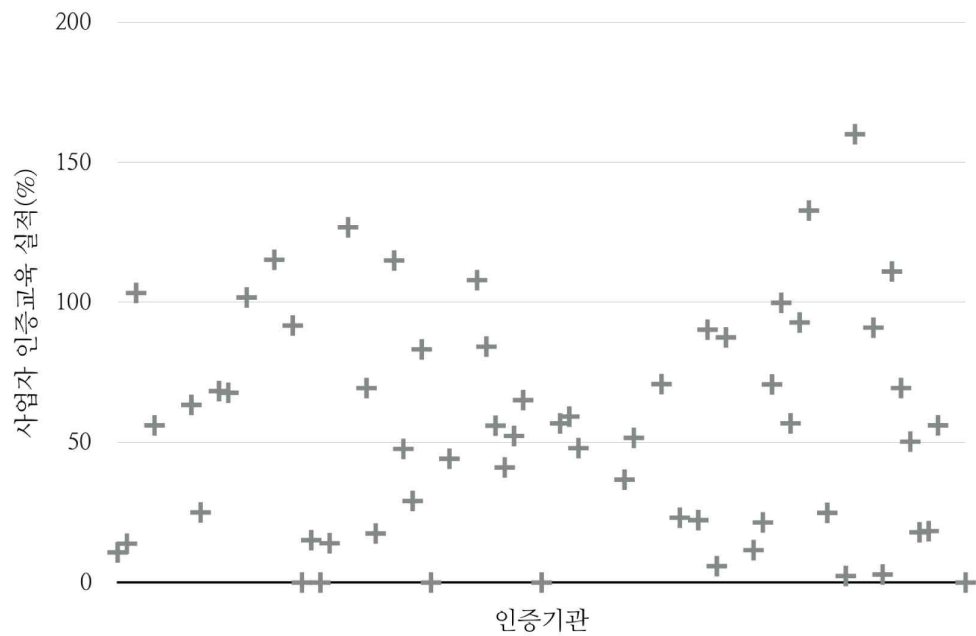


- 2016년(2016년 말 기준) 국내 인증건수 평균은 505건이며, 한 인증기관에서 가장 많이 인증한 건은 1,678건

5.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평균 : 54.58%
- 최댓값 : 160%
- 최솟값 : 0%

그림3-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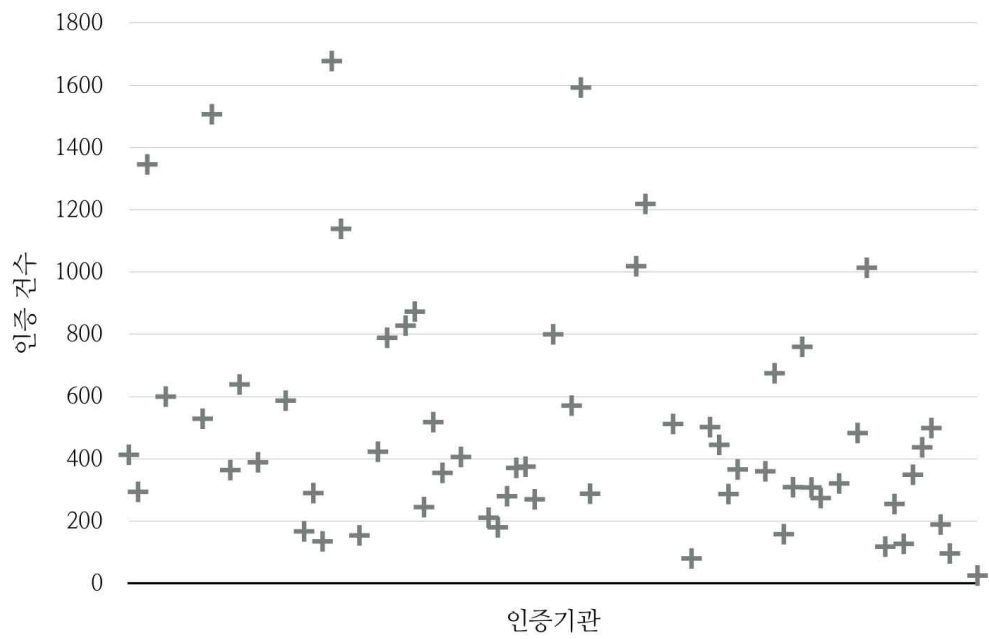


- 2016년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은 기관별 평균 60.51일을 투입하였으며 평균 6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기관별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1년간 2,189명에 대하여 실시
-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 교부 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 안내사항이 교육으로 포함

5.14. 인증 건수

- 평균 : 505건
- 최댓값 : 1,678건
- 최솟값 : 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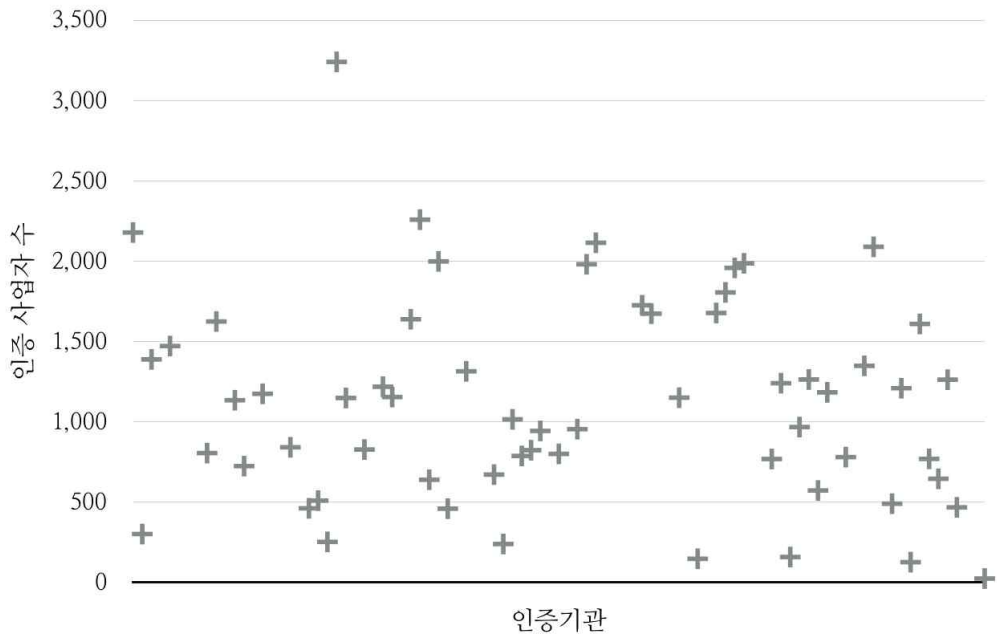
그림3-14. 인증 건수 분포도



5.15. 인증사업자수

- 평균 : 1,119명
- 최댓값 : 3,241명
- 최솟값 :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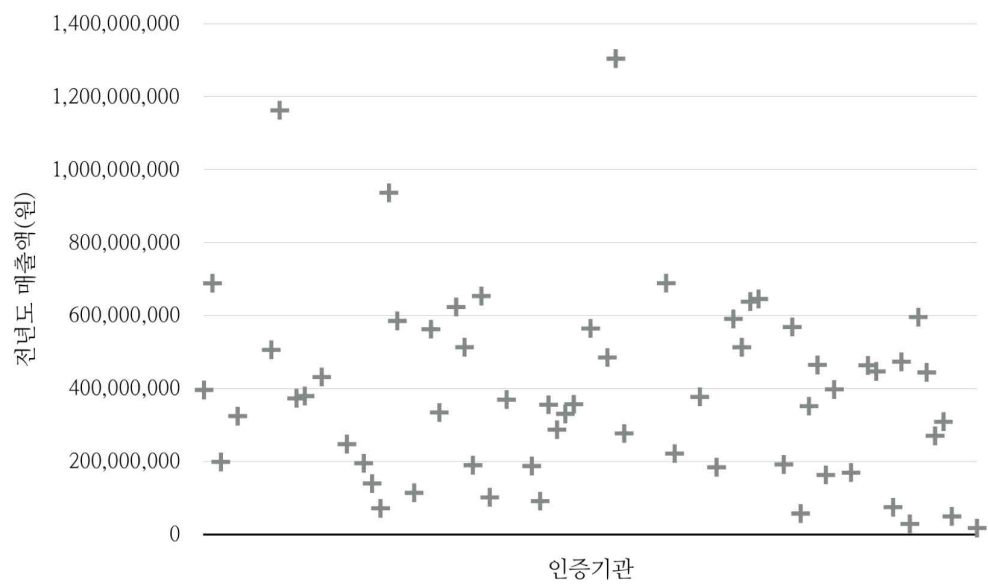
그림3-15. 인증사업자수 분포도



5.16. 전년도 매출액

- 평균 : 389,455,154원
- 최댓값 : 1,304,523,000원
- 최솟값 : 17,91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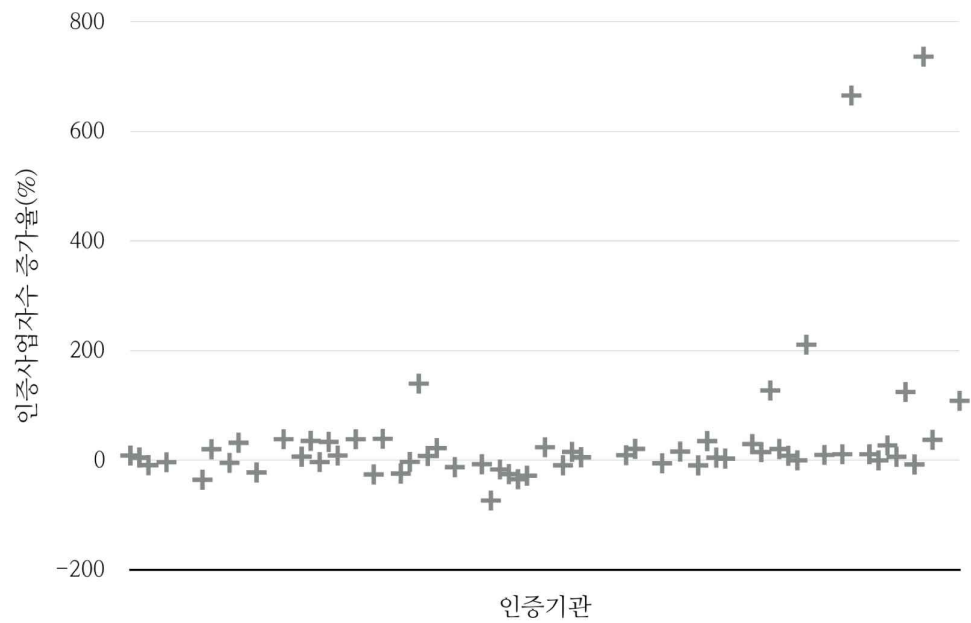
그림3-16. 전년도 매출액 분포도



5.17. 인증사업자 수 증가율

- 평균 : 38.49%
- 최댓값 : 736%
- 최솟값 : -73.68%

그림3-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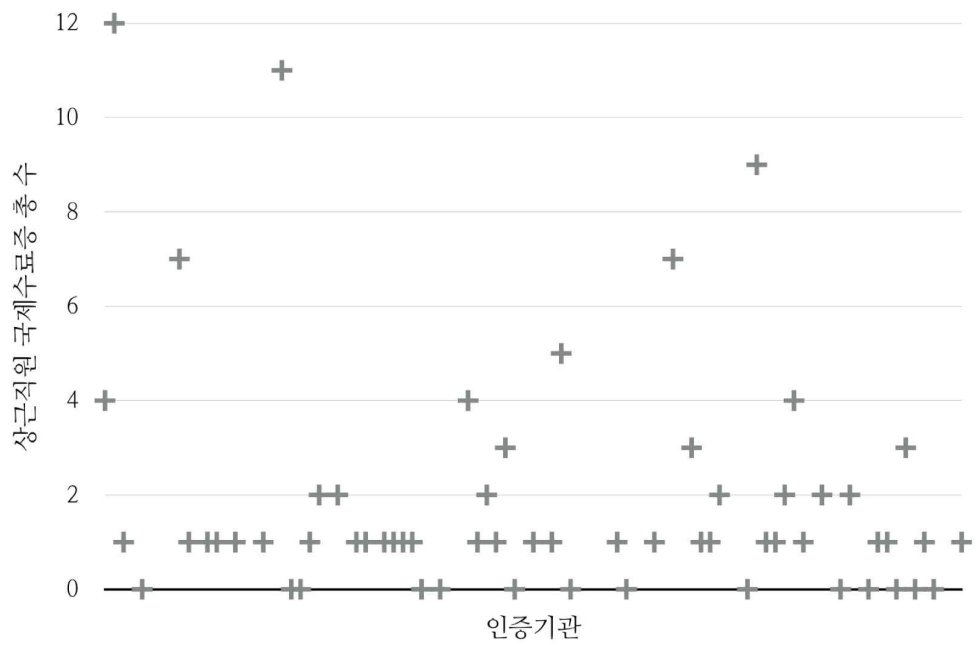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100%이상 인증사업자 수가 증가한 곳은 6곳
- 조사대상 연도의 인증사업자 수가 전년도보다 낮은 경우는 23곳

5.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 평균 : 1.87건
- 최댓값 : 12건
- 최솟값 :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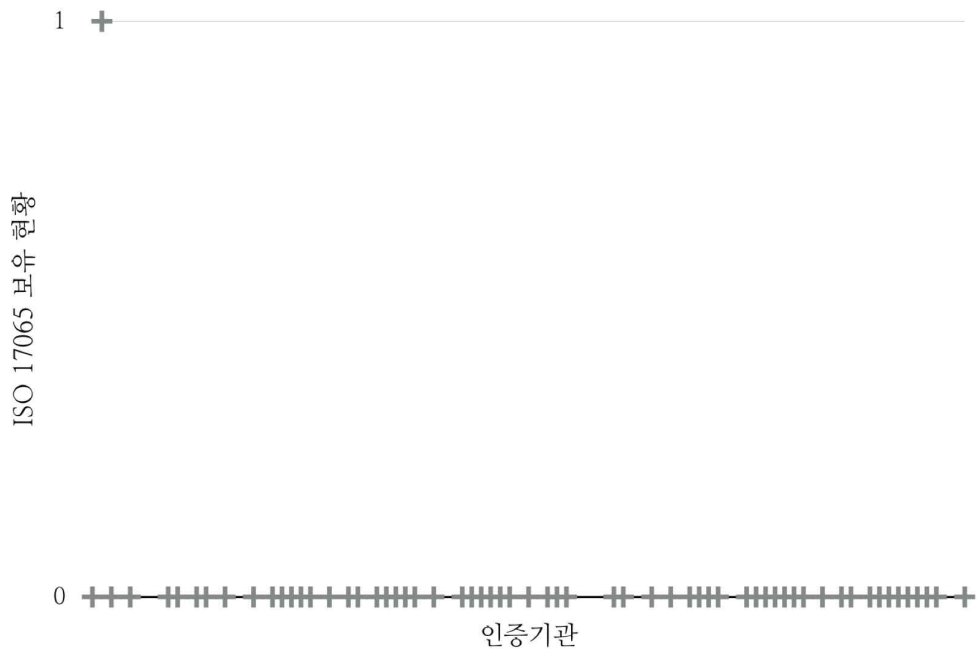
그림3-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분포도



5.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 최댓값 : 1건
- 최솟값 : 0건

그림3-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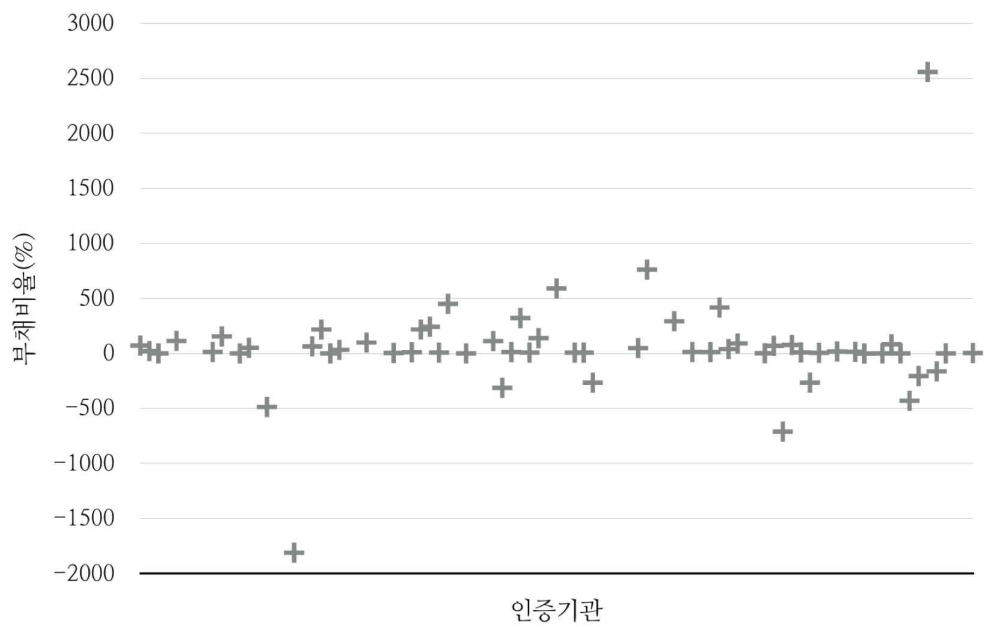


- 1곳에서 국제적 인증(ISO17065)을 받음

5.20. 부채비율

- 평균 : 102.54%
- 최댓값 : 2,557%
- 최솟값 : -1,811%

그림3-20. 부채비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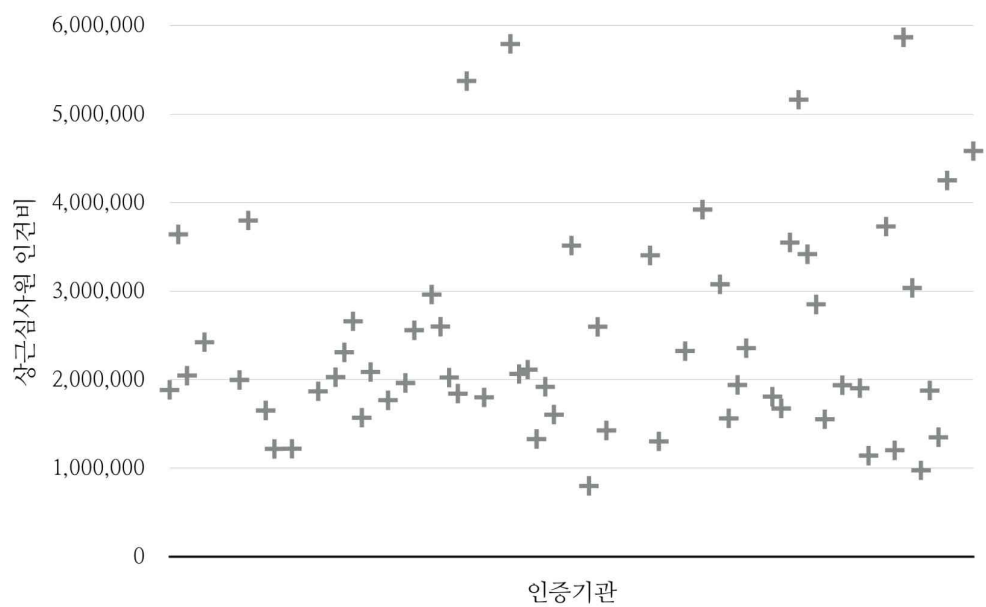


- 자본 잠식으로 보이는 인증기관은 10곳이며 비영리기관 3곳, 영리기관 7곳
- 부채비율이 0%인 곳은 9곳이며 이 중 비영리기관은 8곳

5.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평균 : 2,462,400원
- 최댓값 : 5,867,255원
- 최솟값 : 800,000원

그림3-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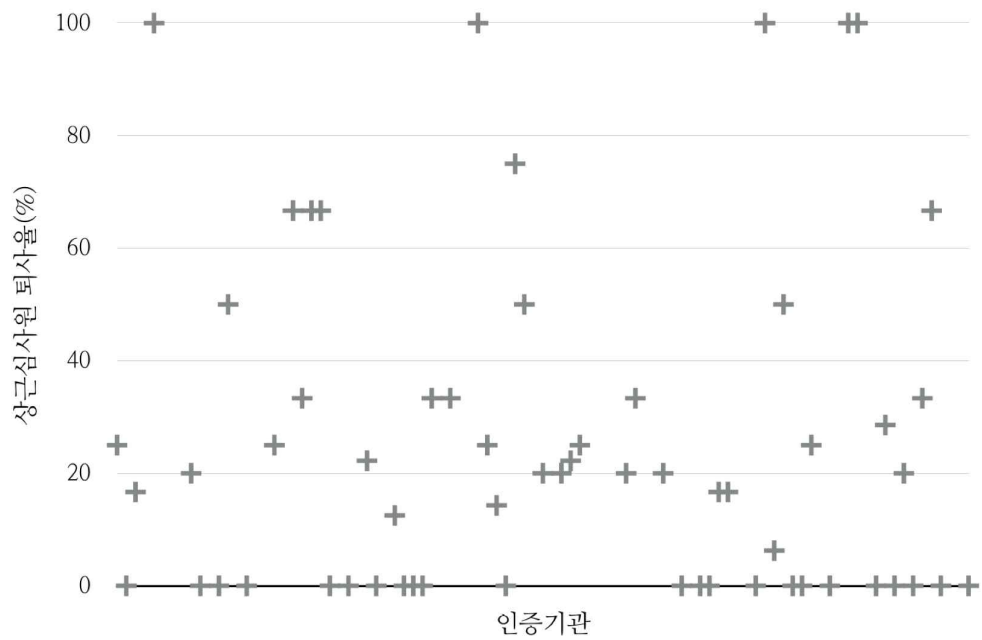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이 월 300만원 이상이 되는 곳은 16곳이며 비영리법인 8곳, 영리법인 8곳
- 상근심사원의 인건비가 월 100만원 이하인 곳은 2곳

5.22. 상근심사원 퇴사율

- 평균 : 25.56%
- 최댓값 : 100%
- 최솟값 : 0%

그림3-22. 상근심사원 퇴사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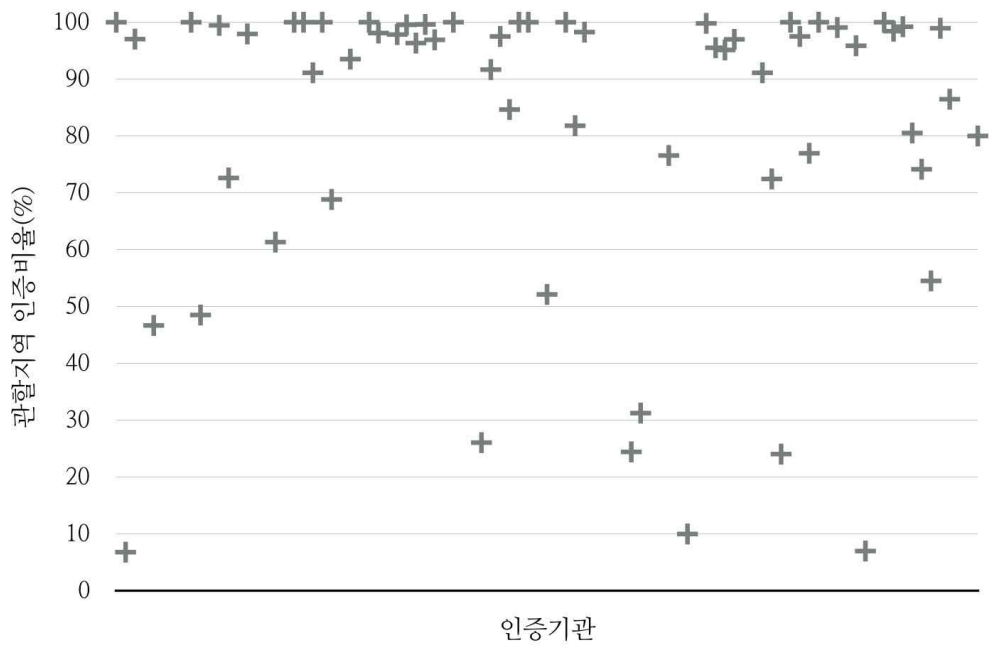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상근심사원의 퇴사가 없었던 곳은 12곳이며, 전직원이 퇴사한 곳(퇴사율 100%)은 5곳
- 인증기관별 평균적으로 2~3명의 상근심사원이 퇴사

5.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 평균 : 81.48%
- 최댓값 : 100.00%
- 최솟값 : 6.80%

그림3-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분포도



- 전체 인증건수보다 관할지역 인증건수가 많은 경우(관할지역 인증 비율이 100%)는 100%로 일괄 조절
- 전체 인증건수에서 관할지역 비율이 100%인 곳은(결과 값이 100%) 13곳이었으며, 이중 7곳이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
- 전체 인증건수에서 관할지역 비율이 90% 이상 되는 곳은 25곳

6. 지표별 평가 방법의 최종 도출

○ 시범 평가에 따른 교정 결과는 표3-27과 같이 최종 도출

표3-27.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5	인증 부적합률	$\frac{\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times 100$
6	사후관리 빈도	$\frac{\text{(사후관리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frac{\{(\text{연말 인증사업자수})\}}{\{(\text{연초 상근심사원수}) + (\text{연말 상근심사원수})\} / 2}$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frac{\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9	교육훈련 투입량	<p>(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p> <p>※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p> <p>※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p>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p>(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p> <p>※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p> <p>※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p> <p>※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p>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p>(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p> <p>※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p>
12	인증 갱신율	<p>(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p>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p>(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p> <p>※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p> <p>※ 교육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p>
14	인증 건수	<p>(총 인증 건수)</p> <p>※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p>
15	인증 사업자 수	<p>(인증사업자 총수)</p> <p>※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p>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사업자수})/(\text{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100 - 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20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24 (추가)	친환경인증제 도에 대한 기여도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7. 기타 고려 사항

7.1. 평가 시기

- 인증기관 등급 평가를 연초에 실시하는 경우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평가 시기를 전년도 회계자료가 발행되는 3월 이후 평가 실시

-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실시연도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 ‘전년도’로 설정한 조사대상연도의 평가 의의가 희석됨

⇒ 개선방안: 조사대상 연도(조사 실시연도의 전년도)의 회계 자료를 평가하고, 전년도 평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4월 이후 6월 이전에 평가를 실시

7.2. 등급 평가 업무의 과중

- 인증기관

- 사전 조사표 작성, 현장조사용 자료 준비, 현장조사 등 등급 평가에 소요되는 투입 시간에 대한 부담 가중

- 농관원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는데 과도한 업무량이 투입됨. 평가기관에 일시적으로 임시ID 제공하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농관원의 업무 과중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나 인증기관의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의 보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평가기관

- 60개 이상의 인증기관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농관원으로부터 수집하는 시간과 수집 후 가공하는 시간으로 조사의 진행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

⇒ 개선방안:

- (1) 농관원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평가지표의 공식에 따라 데이터 및 지표별 점수 추출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음
- (2) 평가기관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인증기관과 농관원으로부터 수집한 로데이터를 입력할 때, 평가지표의 공식에 따라 데이터 및 지표별 점수 추출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음

7.3. 증빙자료 검증 소요시간

- 현장평가는 인증기관과 농관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당
- 예컨대, 지표13의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은 최대 수백 건 이상의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더라도, 교육의 실효성과 참가인원의 정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자료 점검은 교육 건수에 비례하여 시간이 투입

⇒ 개선방안: 증빙자료가 많은 지표는 자료의 전부가 아닌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비율에 따라 전체 자료를 인정하는 통계학적 추정의 논리를 적용

제4장

특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1. 특점 기준 조정의 필요성

- 선행연구³⁵⁾에서 설정한 평가 지표로 61개 인증기관을 평가
- 그 결과 인증기관은 ‘우수’ 9개, ‘양호’ 23개, ‘보통’ 25개, ‘미흡’ 4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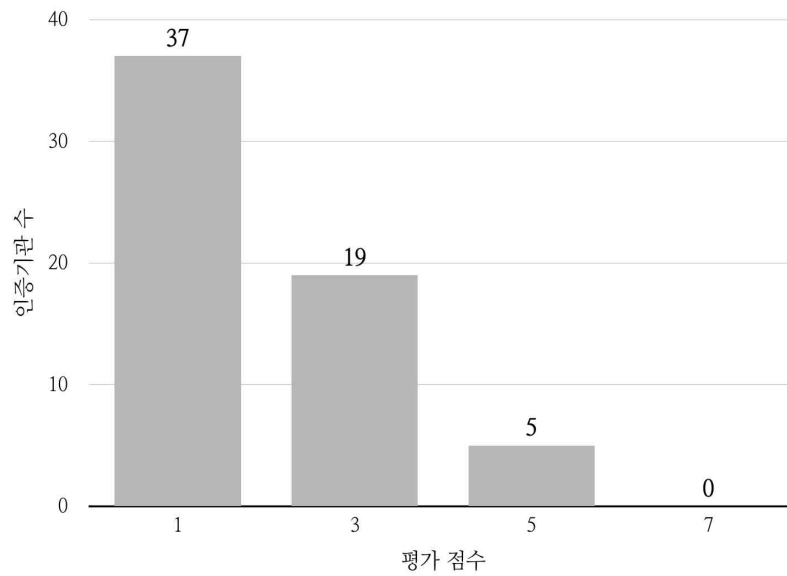
표4-1. 인증기관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 전체 인증기관에서 53%는 ‘양호’ 이상에 해당. 지표마다 점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 이는 비대칭분포(asymmetric distribution)로 평가 지표로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점 기준 조정이 필요
 - 그림4-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를 보면 대부분 인증기관이 낮은 점수대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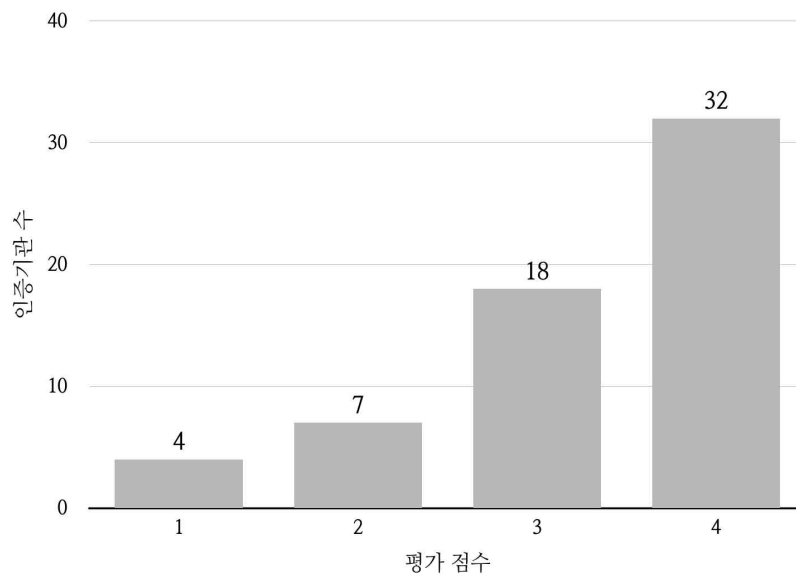
35)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그림4-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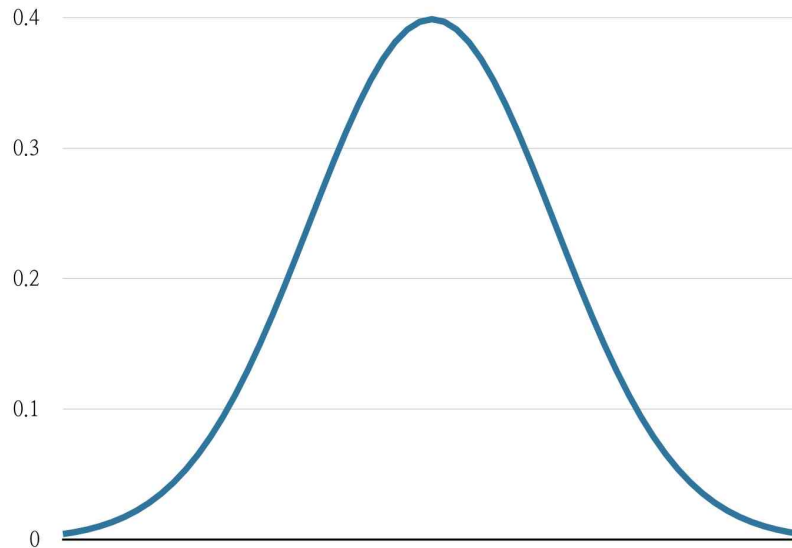
- 그림4-2 인증사업자수를 보면 대부분 인증기관이 높은 점수대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4-2. 인증사업자수



- 따라서 비대칭분포를 가진 지표들은 득점 구간을 조정하여 되도록 대칭분포(symmetric distribution)로 가깝게 교정하여 점수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교정

그림4-3. 대칭분포의 표준형 그래프



- 전문가 회의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득점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점수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정

1.1. 교정에 적용된 이론

- 평가 지표의 득점 기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계급 폭을 일정하게 설정한다는 원칙을 적용
- 적절한 계급 폭을 도출하기 위해 JISZ9041-1(일본표준규격)³⁶⁾에서 계급 폭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적용
 - JISZ9041-1의 계급 폭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지표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36)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1995.

Z9041-1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1: Statistical Presentation of Data 참고함

- 1) ‘교육훈련 투입량’ 지표의 최댓값은 3.27, 최솟값은 0.13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뺀 값(R)을 도출해야 함

$$3.27(\text{최댓값}) - 0.13(\text{최솟값}) = 3.14(R)$$

- 2) R을 0.1, 0.2, 0.5, 1.0, 2.0 (혹은 1, 2, 5, 10, 20, 50) 으로 나눔. 이는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구간으로 R을 나눈 값이 결과가 5~20 범위 내에 있으면 나눈 값이 계급의 폭이 됨

$$3.14 \div 0.1 = 31.4$$

$$3.14 \div 0.2 = 15.7 \dots\dots 5 \sim 20 \text{ 범위에 해당}$$

$$3.14 \div 0.5 = 6.28 \dots\dots 5 \sim 20 \text{ 범위에 해당}$$

$$3.14 \div 1.0 = 3.14$$

$$3.14 \div 2.0 = 1.57$$

- 3) 샘플의 크기가 100 이상일 경우 계급의 폭이 작은 것, 99 이하일 경우 폭이 큰 것을 선택. 샘플의 크기는 61개로 폭이 큰 0.5를 계급의 폭으로 설정
- 4) 예컨대, JISZ9041-1(일본표준규격)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교육훈련 투입량’의 득점 기준이 교정

표4-2. 교육훈련 투입량 득점 기준 교정 예시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교정 전	교정 후
9	교육훈련 투입량	1.5 이상 5	2.0 이상 5
		1.0~1.5 미만 4	1.5~2.0 미만 4
		0.5~1.0미만 3	1.0~1.5 미만 3
		0.5 미만 2	0.5~1.0 미만 2
		0.0 이면 1	0.5 미만 1

- JISZ9041-1를 포함하여 데이터 분포도, 지표별 점수 세분화 등을 고려하여 계급 폭을 결정

2. 득점 구간 교정

2.1. 인증사업 매출비율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의 폭을 20으로 설정
-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 총매출 대비 인증사업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높음. 따라서 80% 이상일 경우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표4-3. 인증사업 매출비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75~100% 4	80% 이상 5
		50~75% 미만 3	60~80% 미만 4
		35~50% 미만 2	40~60% 미만 3
		35% 미만 1	20~40% 미만 2
			20% 미만 1

2.2. 인증기관 행정처분

-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인증기관이 87%로 최고점을 받는 인증기관이 많아 '감점제'로 변경

표4-4. 인증기관 행정처분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2	인증기관 행정처분	0이면 9	1개월당 -1 감점
		1~3이면 7	
		4~6이면 5	
		7~9이면 3	
		9 초과 1	

2.3. 기관 과태료 부과

-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의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짐
- 규정 위반의 경중을 평가하고자 건당에서 '100만 원당 -1 감점제'로 변경

표4-5. 기관 과태료 부과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3	기관 과태료 부과	1 건당 -1점 감점	100만 원당 -1 감점

2.4. 자체 행정처분 실적

- 평가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일정 점수대로 집중 분포되는 현상이 발생
-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의 폭을 0.5로 변경

표4-6. 자체 행정처분 실적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1.0% 이상 5	1.5% 초과 5
		0.5~1.0% 미만 4	1.0% 초과~1.5% 이하 4
		0.2~0.5% 미만 3	0.5% 초과~1.0% 이하 3
		0.2 미만 2	0%초과~0.5% 이하 2
		0 이면 1	0% 이면 1

2.5. 인증 부적합률

- 심사원이 부적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과대 해석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부적합률을 양산할 가능성을 있음. 이에 따라

본 지표의 만점 기준을 2%로 낮은 수준으로 하였음³⁷⁾

표4-7. 인증 부적합률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5	인증 부적합률	2.0% 이상 5	변경하지 않음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2.6. 사후관리 빈도

- 득점 기준의 점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득점 기준을 세분화
⇒ 초기설정은 1,3,5,7의 4단계로 득점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1,2,3,4,5,6,7의 7단계로 세분화하여 교정
- 평가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점수분포가 비대칭분포를 이룸
⇒ JIS 규격 Z9041-1을 참고하여 대칭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계
급 폭을 15로 결정

표4-8. 사후관리 빈도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6	사후관리 빈도	120% 이상 7	90% 이상 7
			75~90% 미만 6
		110~120% 미만 5	60~75% 미만 5
			45~60% 미만 4
		100~110% 미만 3	30~45% 미만 3
			15~30% 미만 2
		100% 미만 1	15% 미만 1

37)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2.7. 사업자당 투입 인력

- 평가방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일정 점수대로 집중 분포되는 현상이 발생
- 득점 기준의 점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득점 기준을 세분화
⇒ 당초 1,3,5,7의 4 단계로 득점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1,2,3,4,5,6,7의 7 단계로 세분화하고 계급 폭을 50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9. 사업자당 투입 인력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4 이상 7	50 미만 7
			100 미만 6
		3~4 미만 5	150 미만 5
			200 미만 4
		2~3 미만 3	250 미만 3
	300 미만 2		
	2 미만 1	300 이상 1	

2.8. 이중체크 적발 비율

- 득점 기준의 점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득점 기준을 세분화
⇒ 교정 전 1,3,5,7의 4단계로 득점 기준이 설정되었으나 1,2,3,4,5,6,7의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계급 폭을 0.5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조정
- 점수 세분화에 따라 1점 기준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

표4-10. 이중체크 적발 비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0.5% 미만 7	0.5% 미만 7
			0.5~1% 미만 6
		0.5%~2.0% 미만 5	1~1.5% 미만 5
			1.5~2% 미만 4
		2.0%~4.0% 미만 3	2~2.5% 미만 3
	2.5~3% 미만 2		
	4.0% 이상 1	3% 이상 1	

2.9. 교육훈련 투입량

- 초기 설정값으로 분석한 결과 일정 점수대로 집중 분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득점 기준 교정 필요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0.5로 교정
- 최저 점수 기준값이 '0.0'에서 '0.5 미만', 최고 점수 기준값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표4-11. 교육훈련 투입량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9	교육훈련 투입량	1.5 이상 5	2.0 이상 5
		1.0~1.5 미만 4	1.5~2.0 미만 4
		0.5~1.0 미만 3	1.0~1.5 미만 3
		0.5 미만 2	0.5~1.0 미만 2
		0.0 이면 1	0.5 미만 1

2.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변경된 사항이 없음

표4-12. 기관장의 역량 강화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2회 이상 참가 3	변경하지 않음
		1회 참가 2	
		미참가 1	

2.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득점 기준의 점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득점 기준을 세분화
 - ⇒ 인증기관 데이터 산포도와 점수 세분화를 고려하여 계급 폭을 0.5년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 ⇒ 교정 전 1,3,5,7의 4단계로 득점 기준이 설정되었으나, 1,2,3,4,5,6,7의 7단계로 세분화
- 최저 점수 기준값이 '3년 미만'에서 '0.5년 미만', 최고 점수 기준값이 '7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

표4-1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7년 이상 7	3년 이상 7
			2.5~3년 미만 6
		5~7년 미만 5	2~2.5년 미만 5
			1.5~2년 미만 4
		3~5년 미만 3	1~1.5년 미만 3
	0.5~1년 미만 2		
	3년 미만 1	0.5년 미만 1	

2.12. 인증 갱신율

- 평가 방법이 교정됨에 따라 득점 기준도 교정
- 평가 방법 변경 후 최댓값은 2.01이고 최솟값은 0.27이므로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0.2로 설정
- 인증 갱신율은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고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자 최고 점수를 4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

표4-14. 인증 갱신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2	인증 갱신율	70% 이상 4	0.8 이상 5
		55~70% 미만 3	0.6~0.8 미만 4
		30~55% 미만 2	0.4~0.6 미만 3
			0.2~0.4 미만 2
	30% 미만 1	0.2 미만 1	

2.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평가 방법이 교정됨에 따라 득점 기준도 교정
- 최댓값은 160%, 최솟값은 0%로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30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15. 사업자 인증교육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30 이상 5	90% 초과 5
		20~30 미만 4	60%초과~90%이하 4
		10~20 미만 3	30%초과~60%이하 3
		10 미만 2	0%초과~30%이하 2
		0 이면 1	0%이면 1

2.14. 인증건수

-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건수는 505건이며 초기 설정값보다 높음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200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16. 인증건수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4	인증건수	400건 이상 4	800건 이상 5
		200~400건 미만 3	600~800건 미만 4
		100~200건 미만 2	400~600건 미만 3
		100건 미만 1	200~4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200건 미만 1

2.15. 인증사업자수

-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사업자수는 1,118명으로 높음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500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17. 인증사업자수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5	인증 사업자 수	1,000명 이상 4	2,000명 이상 5
		500~1,000명 미만 3	1,500~2,000명 미만 4
		200~500명 미만 2	1,000~1,500명 미만 3
		200명 미만 1	500~1,0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500명 미만 1

2.16. 전년도 매출액

- 인증기관의 평균 전년도 매출액은 약 3억 9천만 원으로 초기 설정 값보다 높음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2억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18. 전년도 매출액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6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 5	8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6~8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4~6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2~4억원 미만 2
			2억원 미만 1

2.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 평가 방법이 달라졌지만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득점 기준은 변경하지 않음

표4-1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10% 초과 3	변경하지 않음
		-10~10% 2	
		-10% 미만 1	

2.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 초기 가점제로 평가한 결과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 평가 시 국제 교육수료증이 19건인 인증기관이 존재. 이 경우 18번 지표만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득점 기준에 상한선을 제시
- 따라서 득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최대 4건 이상일 경우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정

표4-20. 핵심역량 보유 현황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1건당 1점 가점	4건 이상 5
			3건 4
			2건 3
			1건 2
			0건 1

2.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 61개 인증기관 중 ISO 17065 인정서를 보유한 곳은 1곳
- 이는 인증기관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낮고,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반증
- 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5점 가점'에서 '3점 가점'으로 교정

표4-21.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5점 가점	3점 가점

2.20.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초기 평가 지표 설정값과 변동된 사항이 없음

표4-22. 부채비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20	부채비율	100% 미만 3	변경하지 않음
		100~200% 2	
		200% 초과 1	

2.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평가 방법이 교정됨에 따라 득점 기준도 재설정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1백만 원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2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50% 이상 5	4백만 원 이상 5
		40~50% 미만 4	3백~4백만 원 미만 4
		30~40% 미만 3	2백~3백만 원 미만 3
		20~30% 미만 2	1백~2백만 원 미만 2
		20% 미만 1	1백만 원 미만 1

2.22. 상근심사원 퇴사율

-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일정 점수대로 집중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남
- JIS 규격 Z9041-1에 따라 계급 폭을 20으로 설정하여 득점 기준을 교정

표4-24. 상근심사원 퇴사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20% 미만 5	20% 미만 5
		20~30% 미만 4	20~40% 미만 4
		30~40% 미만 3	40~60% 미만 3
		40~50% 미만 2	60~80% 미만 2
		50% 이상 1	80% 이상 1

2.23. 관할지역 인증비율

- 인증기관의 평균 관할지역 인증비율은 약 85% 이상으로 높음
- 대부분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관할지역 인증비율 높은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인정
- 따라서 최고 점수 기준값을 상향하지 않고 '60% 이상'을 기준으로 계급 폭을 일정하게 교정

표4-25. 관할지역 인증비율 득점 기준 교정

No.	평가 지표	득점 기준	
		초기 설정	교정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60% 이상 3	60% 이상 3
		40~60% 2	30~60% 미만 2
		40% 미만 1	0~30% 미만 1

3. 교정 후 최종 평가 지표

○ 표4-26과 같이 인증기관 평가 지표가 최종 도출

표4-26. 인증기관 평가 지표 최종 교정 내역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80% 이상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1개월당 -1 감점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100만원당 -1 감점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1.5% 초과 5
			1.0% 초과~1.5% 이하 4
			0.5% 초과~1.0% 이하 3
			0%초과~0.5% 이하 2
			0% 이면 1
5	인증 부적합률	(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연중 인증 건수)+(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6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90% 이상 7
			75~90% 미만 6
			60~75% 미만 5
			45~60% 미만 4
			30~45% 미만 3
			15~30% 미만 2
			15% 미만 1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연말 인증사업자수)/[{(연초 상근심사원수)+(연말 상근심사원수)}/2]}	50 미만 7
			100 미만 6
			150 미만 5
			200 미만 4
			250 미만 3
			300 미만 2
			300 이상 1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1% 미만 6
			1~1.5% 미만 5
			1.5~2% 미만 4
			2~2.5% 미만 3
			2.5~3% 미만 2
			3% 이상 1
9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2회 이상 참가 3
			1회 참가 2
			미참가 1
11	상근심사 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3년 이상 7
			2.5~3년 미만 6
			2~2.5년 미만 5
			1.5~2년 미만 4
			1~1.5년 미만 3
			0.5~1년 미만 2
			0.5년 미만 1
12	인증 갱신율	(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	0.8 이상 5
			0.6~0.8 미만 4
			0.4~0.6 미만 3
			0.2~0.4 미만 2
			0.2 미만 1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90% 초과 5
			60%초과~90%이하 4
			30%초과~60%이하 3
			0%초과~30%이하 2
			0%이면 1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800건 이상 5
			600~800건 미만 4
			400~600건 미만 3
			200~400건 미만 2
			200건 미만 1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2,000명 이상 5
			1,500~2,000명 미만 4
			1,000~1,500명 미만 3
			500~1,000명 미만 2
			500명 미만 1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8억원 이상 5
			6~8억원 미만 4
			4~6억원 미만 3
			2~4억원 미만 2
			2억원 미만 1
17	인증사업 자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전기말 인증사업자수)}*100-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4건 이상 5
			3건 4
			2건 3
			1건 2
			0건 1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3점 가점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21	상근심사 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4백 이상 5
			3백~4백만원 미만 4
			2백~3백만원 미만 3
			1백~2백만원 미만 2
			1백만 원 미만 1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 미만 5 20~40% 미만 4 40~60% 미만 3 60~80% 미만 2 80% 이상 1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0~60% 미만 2 0~30% 미만 1
24	친환경인 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추가)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1명당 1점 (최대 3점)

4. 득점기준 교정 후 득점 통계

4.1. 인증사업 매출비율

- ‘인증사업 매출비율 득점 평균’ (표4-27)을 보면 교정 후 득점 평균은 4.07점이고 교정 전 대비 약 0.81점 상승

표4-27. 인증사업 매출비율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26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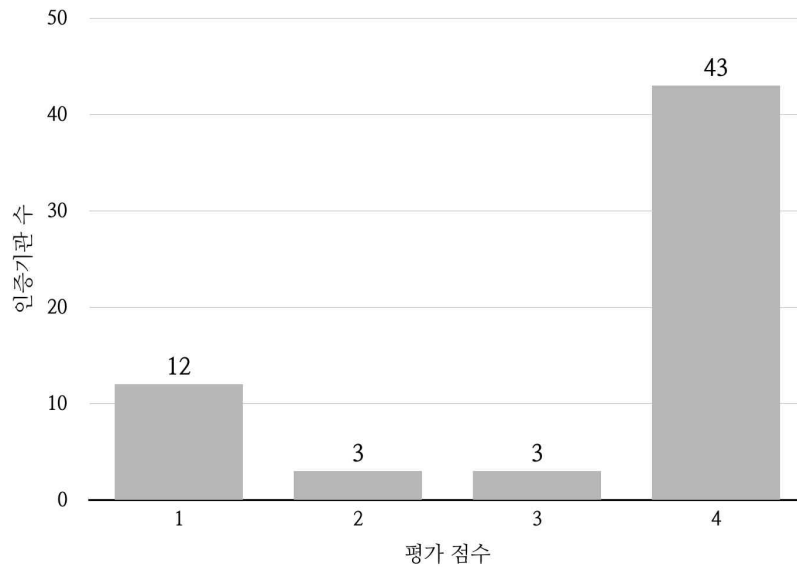
- ‘인증사업 매출비율 평가 결과’ (표4-28)를 보면 교정 후 1점 구간에 인증기관 수가 감소하고 득점 기준이 5점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평균이 상승
- 교정 전 4점에 약 70%, 교정 후 5점에 약 69% 가장 많이 분포

표4-28. 인증사업 매출비율 평가 결과

득점수	교정 전		교정 후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12	20%	1	9	15%
2	3	5%	2	4	6%
3	3	5%	3	3	5%
4	43	70%	4	3	5%
-	-	-	5	42	69%
합계	61	100%	합계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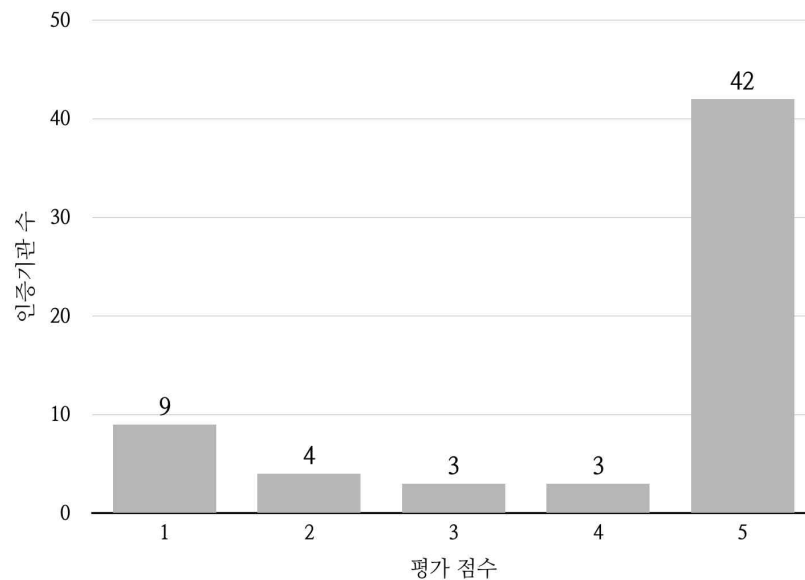
- 교정 전 인증사업 매출비율이 75% 이상(4점)인 인증기관이 43개 기관, 35% 미만(1점)인 인증기관이 12개 기관으로 분포

그림4-4. 인증사업 매출비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인증기관 평가 결과 인증사업 매출비율이 80% 이상(5점)인 인증기관이 42개 기관, 20% 미만(1점)인 인증기관이 9개 기관으로 분포

그림4-5. 인증사업 매출비율 교정 후 득점 분포



- 교정 후에도 대부분 인증기관의 인증사업 매출비율이 높음
- 이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대부분 친환경인증을 주목적으로 하여 인증사업 매출비율 높음

4.2. 인증기관 행정처분

- 인증기관 행정처분은 평가방법이 정량평가에서 감점제로 변경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0.49점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이 전체 약 13% 차지

표4-29. 인증사업 행정처분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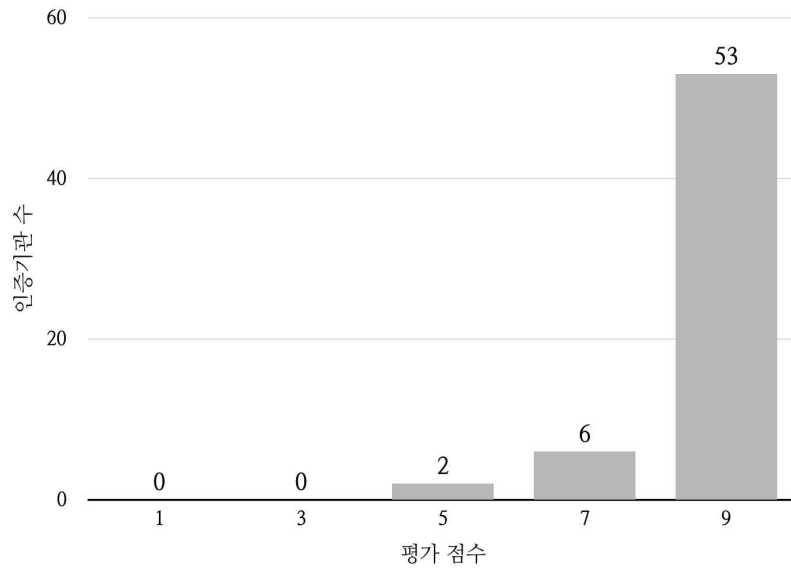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8.67	-0.49

- 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인증기관이 6개 기관,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인증기관이 2개 기관
- 교정 전 9점과 교정 후 0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인증기관을 의미함. 전체 인증기관 중 약 87% 차지

표4-30. 인증사업 매출비율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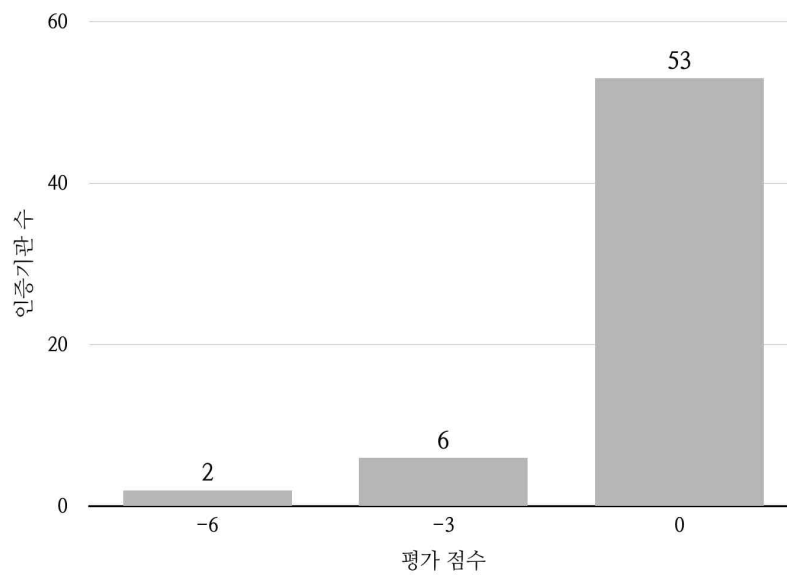
득점 점수	교정 전		교정 후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0	0%	-6	2	3%
3	0	0%	-3	6	10%
5	2	3%	0	53	87%
7	6	10%	-	-	-
9	53	87%	-	-	-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6. 인증기관 행정처분 교정 전 득점 분포



- 인증기관 행정처분은 분포가 편중되는 그래프로 나타나지만 평가 지표가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음

그림4-7. 인증기관 행정처분 교정 후 득점 분포



4.3. 기관 과태료 부과

- 기관 과태료 부과는 교정 전·후 변경된 사항이 없음
- 2016년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인증기관은 2개 기관으로 전체 약 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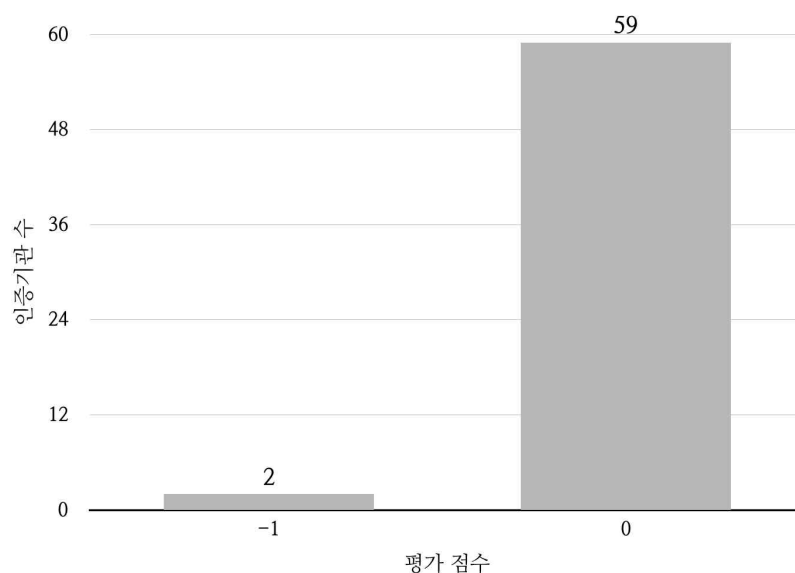
표4-31. 기관 과태료 부과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0.03	-0.03

표4-32. 기관 과태료 부과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2	3%	-1	2	3%
0	59	97%	0	59	97%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8. 기관 과태료 부과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4.4. 자체 행정처분 실적

- ‘자체 행정처분 실적 득점 평균’ (표4-33)을 보면 득점 평균은 3.16 점이고 교정 전 대비 0.63점 하락

표4-33. 자체 행정처분 실적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79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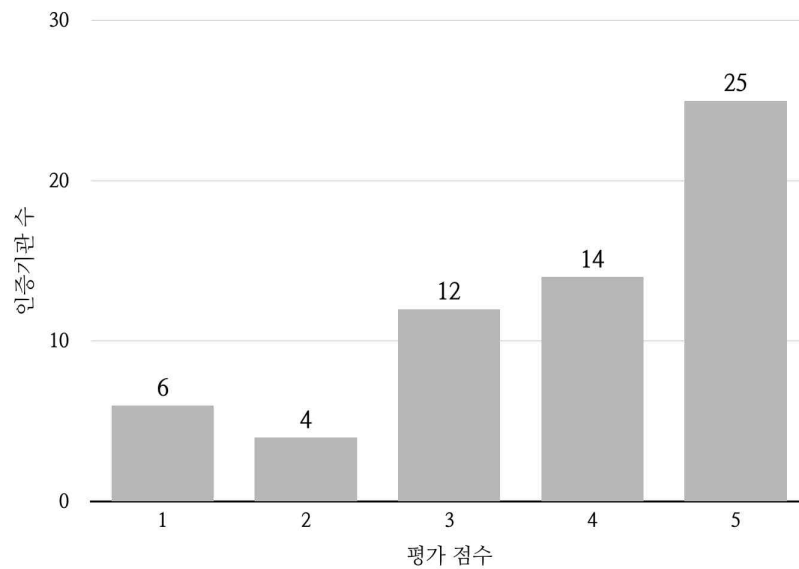
- 교정 후 평가 결과 2~3점 구간에 인증기관 수가 증가하고 5점에 인증기관 수가 감소하면서 평균이 하락
- 교정 전 5점에 약 40%, 교정 후 2점에 약 26% 가장 많이 분포

표4-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6	10%	1	6	10%
2	4	7%	2	16	26%
3	12	20%	3	14	23%
4	14	23%	4	12	20%
5	25	40%	5	13	21%
합계	61	100%	합계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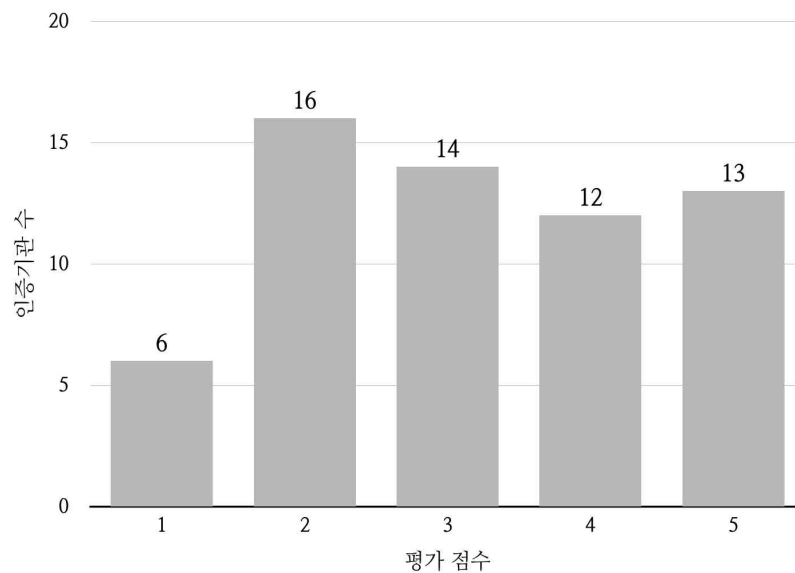
- 교정 전 자체 행정처분이 1% 이상(5점)인 인증기관이 25개 기관으로 인증기관이 오른쪽으로 집중 분포

그림4-9. 자체 행정처분 실적 교정 전 득점 분포



- ‘자체 행정처분 실적 교정 후 득점 분포’ (그림4-10)를 보면 교정 전 평가 결과 대비 인증기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

그림4-10. 자체 행정처분 실적 교정 후 득점 분포



4.5. 인증 부적합률

- 인증 부적합률은 교정 전·후 변경된 사항이 없음
- 인증 부적합률의 득점 평균은 4.05점으로 높음
- 심사원이 의도적으로 부적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2% 이상으로 한정

표4-35. 인증 부적합률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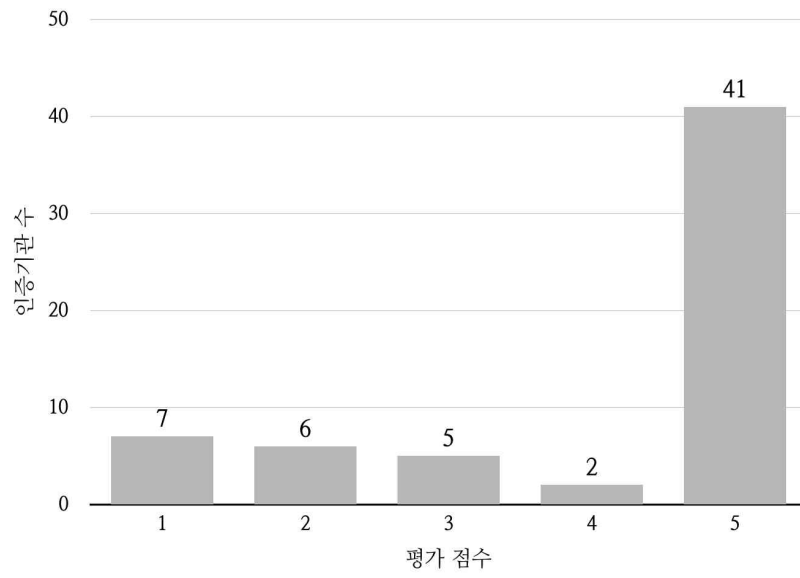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4.05	4.05

- 5점 구간에 인증기관이 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 이는 인증 부적합률이 2% 이상인 인증기관이 68%를 차지

표4-36. 인증 부적합률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7	11%	1	7	11%
2	6	10%	2	6	10%
3	5	8%	3	5	8%
4	2	3%	4	2	3%
5	41	68%	5	41	68%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11. 인증 부적합률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4.6. 사후관리 빈도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3.97점이고 교정 전 대비 0.73점 하락

표4-37. 사후관리 빈도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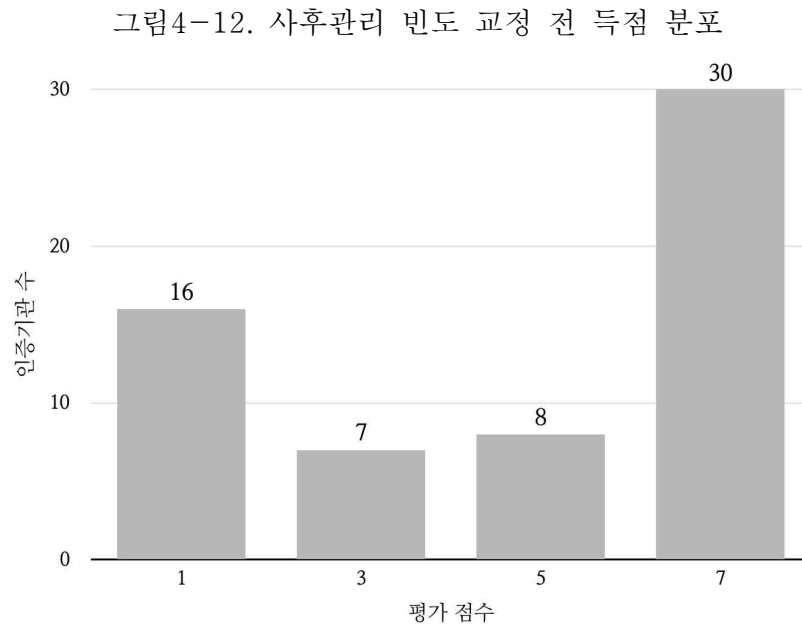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4.7	3.97

- 득점 기준을 7점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인증기관 수가 감소하여 평균이 하락
- 교정 전 7점에 약 49%, 교정 후 4점에 약 25% 가장 많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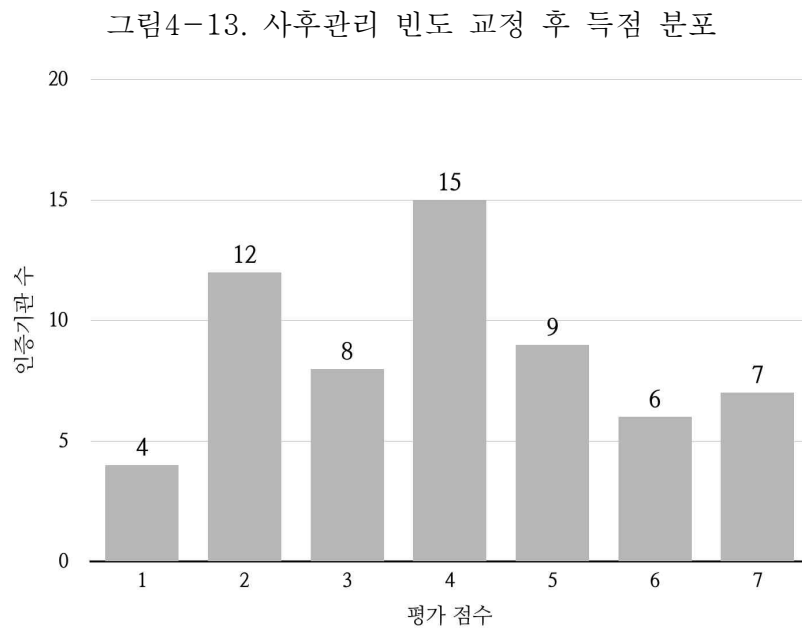
표4-38. 사후관리 빈도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16	26%	1	4	6%
3	7	12%	2	12	20%
5	8	13%	3	8	13%
7	30	49%	4	15	25%
-	-	-	5	9	15%
-	-	-	6	6	10%
-	-	-	7	7	11%
합계	61	100%	합계	61	100%

- 교정 전 사후관리 빈도가 120% 이상(7점)인 인증기관이 30개 기관, 100% 미만(1점)인 인증기관이 16개 기관으로 분포



- 교정 후 45~60% 미만(4점)인 인증기관이 15개 기관으로 전체 약 25% 차지



4.7. 사업자당 투입 인력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3.28점이고 교정 전 대비 2.02점 상승

표4-39. 사업자당 투입 인력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1.26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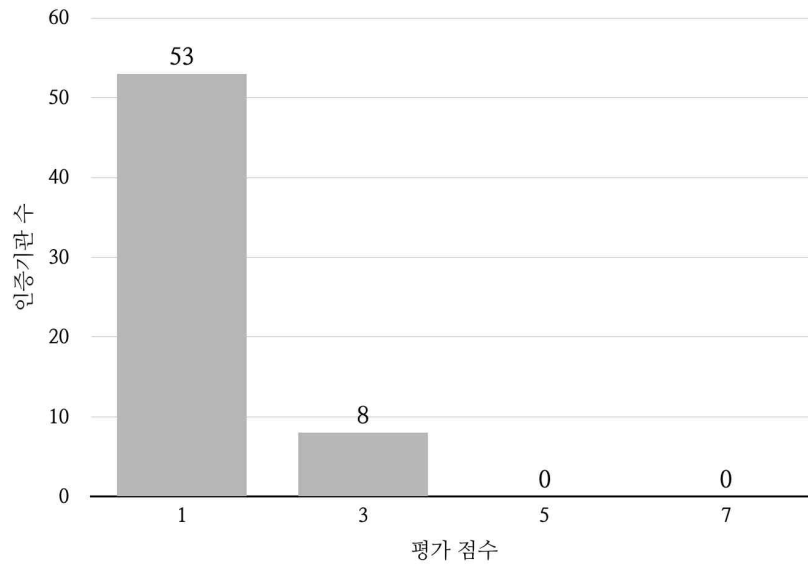
- 1점 구간의 인증기관이 교정 전 87%에서 교정 후 26%로 감소하고 득점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평균이 상승

표4-40. 사업자당 투입 인력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53	87%	1	16	26%
3	8	13%	2	4	6%
5	0	0%	3	13	21%
7	0	0%	4	14	23%
-	-	-	5	7	12%
-	-	-	6	3	5%
-	-	-	7	4	7%
합계	61	100%	합계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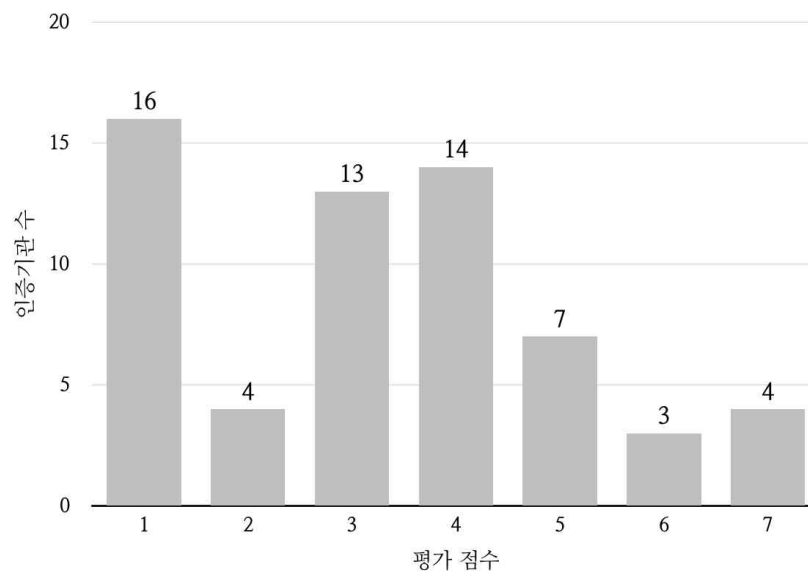
- 교정 전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이 2 미만(1점)인 인증기관이 53개 기관으로 전체 인증기관 중 약 87% 차지

그림4-14.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사업자당 투입 인력이 300 이상(1점)인 인증기관이 16개 기관으로 전체 약 26% 차지

그림4-15. 사업자당 투입 인력 교정 후 득점 분포



4.8. 이중체크 적발 비율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5.92점이고 교정 전 대비 0.13점 하락

표4-41. 이중체크 적발 비율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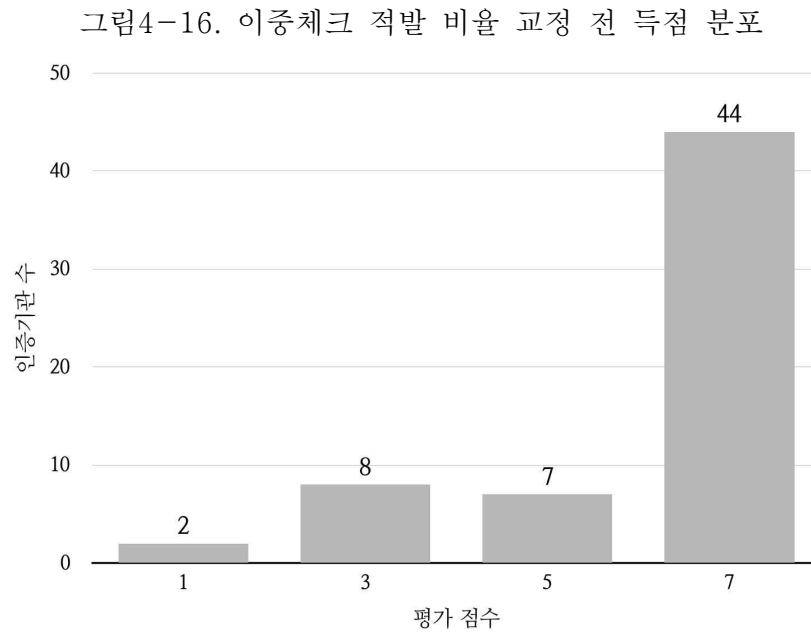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6.05	5.92

- 7점 구간이 교정 전·후로 변함이 없고 교정 전 1~5구간이 세분화됨에 따라 평균이 하락
- 1점 득점 기준이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하향함에 따라 교정 후 1점 구간에 속한 인증기관 수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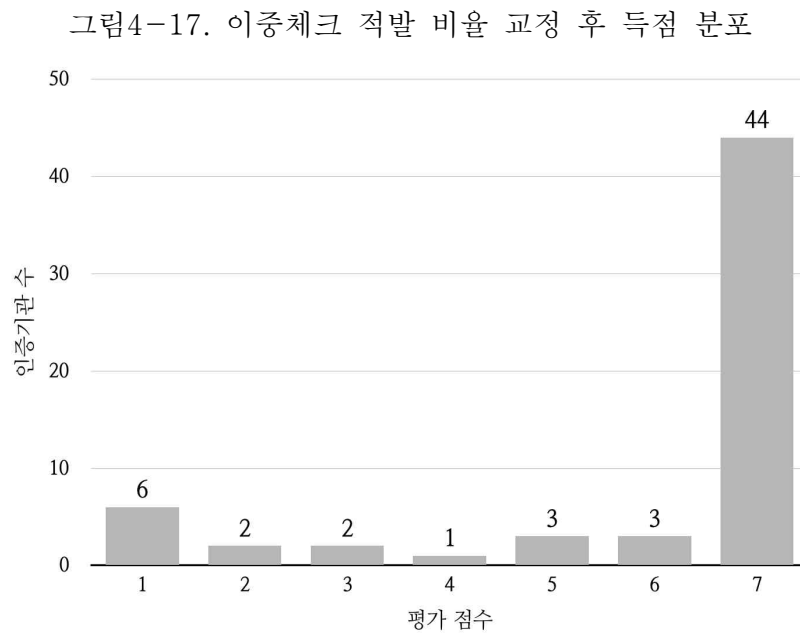
표4-42. 이중체크 적발 비율 평가 결과

득점수	교정 전		교정 후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2	3%	1	6	10%
3	8	13%	2	2	3%
5	7	12%	3	2	3%
7	44	72%	4	1	2%
-	-	-	5	3	5%
-	-	-	6	3	5%
-	-	-	7	44	72%
합계	61	100%	합계	61	100%

- 교정 전 이중체크 적발 비율이 0.5% 미만(7점)인 인증기관 전체 약 72% 차지



- 교정 후 7점 구간은 변함이 없고 교정 전 1~5구간이 세부적으로 변경



4.9. 교육훈련 투입량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95점으로 교정 전 대비 0.87점 하락
- 득점 구간이 변경되고 만점 기준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평균이 하락

표4-43. 교육훈련 투입량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82	2.95

- 교정 후 1점 구간에 5개 기관으로 증가했으며 5점 구간 11개 기관으로 감소
- 교정 후 득점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1~3점 구간에 분포

표4-44. 교육훈련 투입량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0	0%	1	5	8%
2	5	8%	2	20	33%
3	20	33%	3	17	28%
4	17	28%	4	11	18%
5	19	31%	5	8	13%
합계	61	100%	합계	61	100%

- 교정 전 3~5점 구간에 인증기관이 많이 분포하며 교육훈련 투입량이 1~1.5 미만(3점)인 인증기관이 전체 약 33% 차지

그림4-18. 교육훈련 투입량 교정 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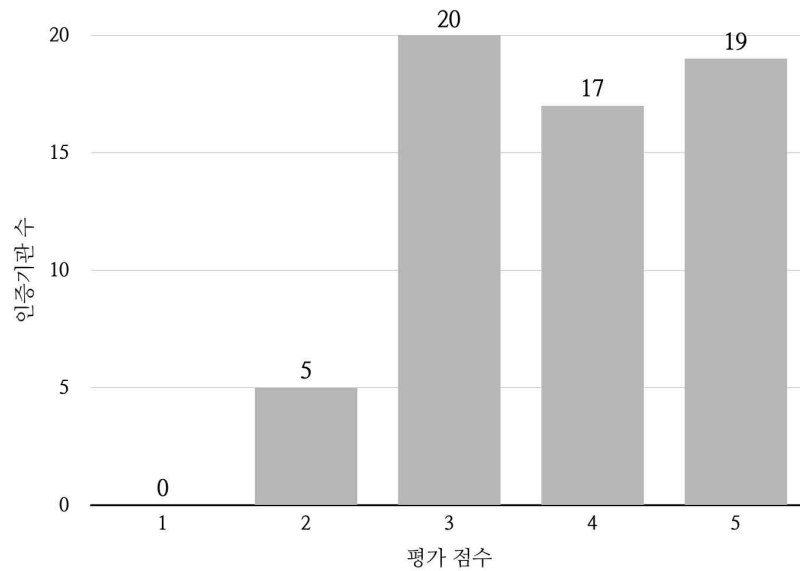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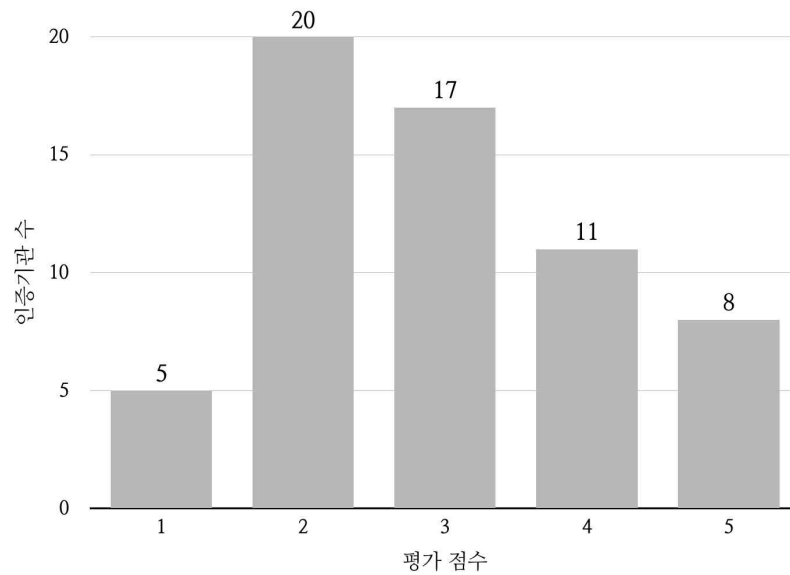


그림4-19. 교육훈련 투입량 교정 후 득점 분포



4.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기관장 역량 강화 노력은 교정 전·후 달라진 사항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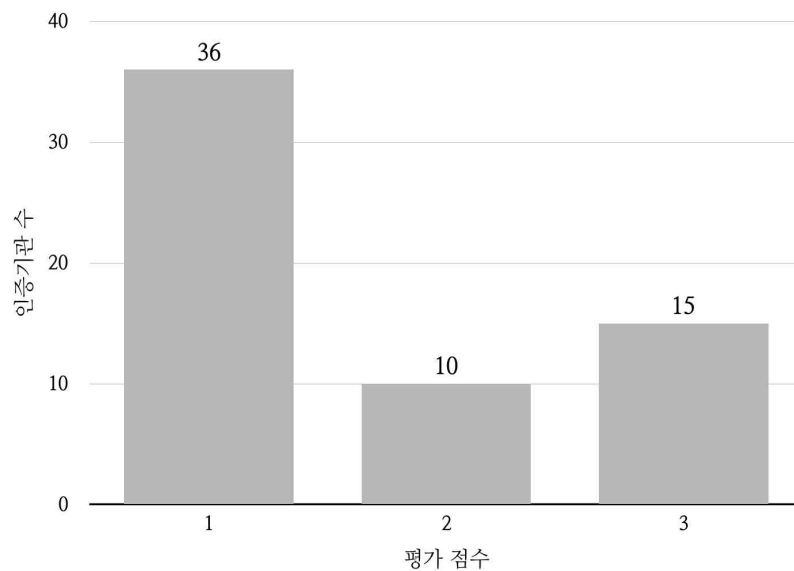
표4-45.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1.66	1.66

표4-46.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 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36	59%	1	36	59%
2	10	16%	2	10	16%
3	15	25%	3	15	25%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2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4.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5.25점이고 교정 전 대비 3.3점 상승
- 만점 기준이 '7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락하였고 득점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평균이 상승

표4-47.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1.95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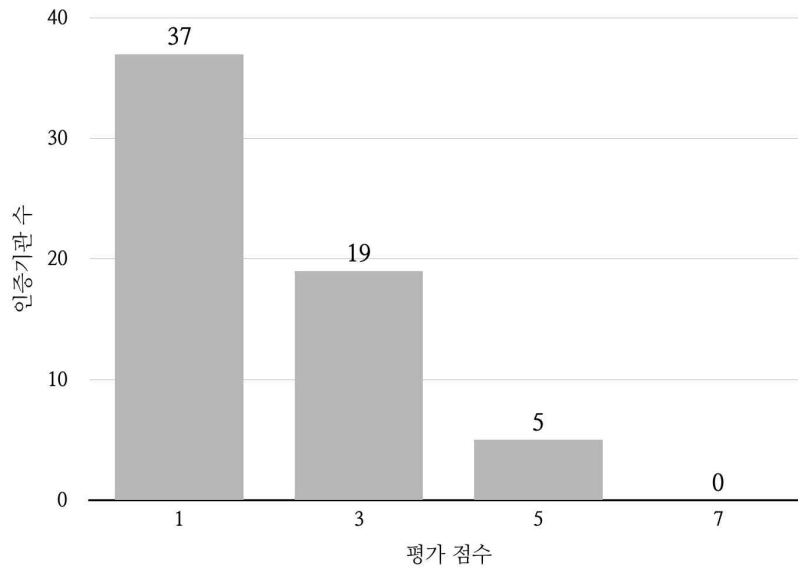
- 교정 전 1점 구간이 37개 기관, 교정 후 7점 구간이 2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

표4-48.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37	61%	1	0	0%
3	19	31%	2	7	11%
5	5	8%	3	6	10%
7	0	0%	4	9	15%
-	-	-	5	6	10%
-	-	-	6	9	15%
-	-	-	7	24	39%
합계	61	100%	합계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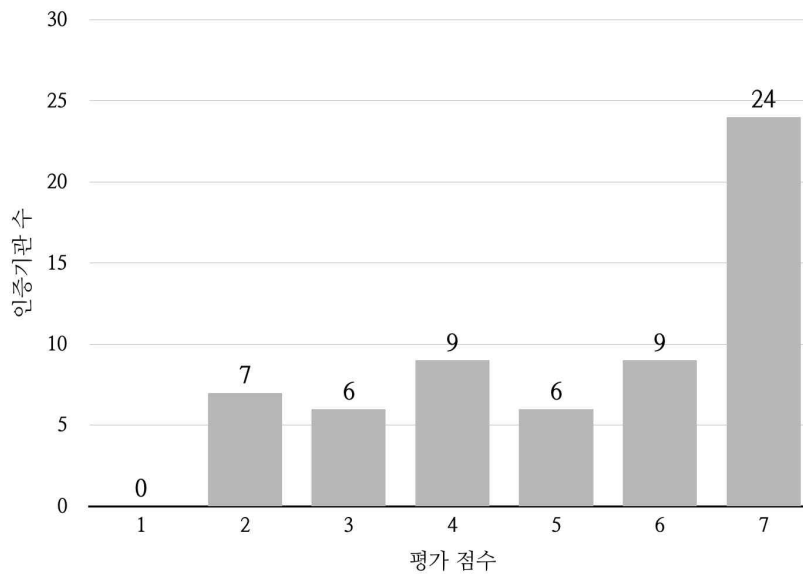
- 교정 전 근속연수가 3년 미만(1점)인 인증기관이 37개 기관으로 전체 61% 차지

그림4-2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근속연수가 3년 이상(7점)인 인증기관이 24개 기관으로 전체 39% 차지

그림4-22.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교정 후 득점 분포



4.12. 인증 갱신율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4.38점이고 교정 전 대비 1.08점 상승
-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평균이 상승

표4-49. 인증 갱신율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3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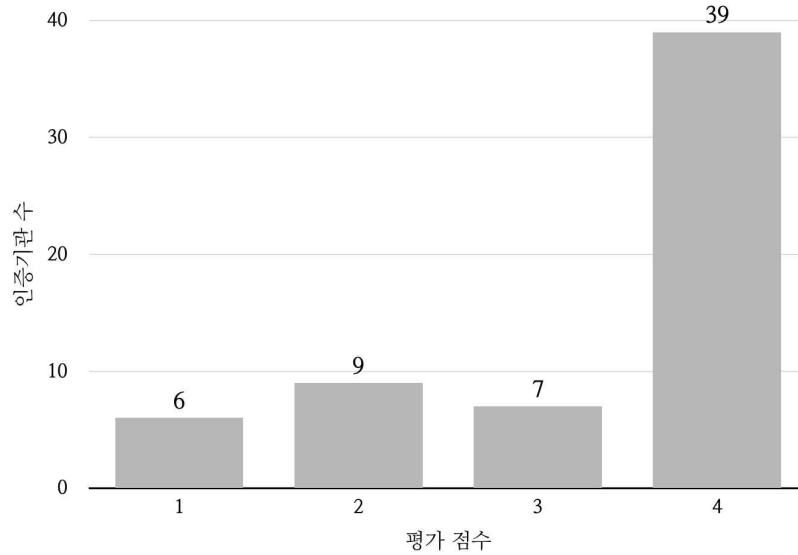
- 교정 전 4점 구간이 39개 기관, 교정 후 5점 구간이 33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

표4-50. 인증 갱신율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6	10%	1	0	0%
2	9	15%	2	4	7%
3	7	11%	3	2	3%
4	39	64%	4	22	36%
-	-	-	5	33	54%
합계	61	100%	합계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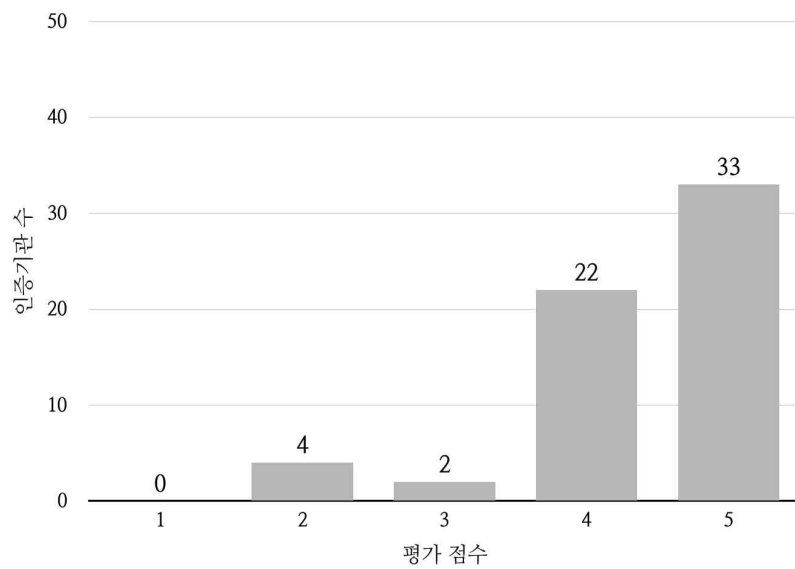
- 교정 전 인증 갱신율이 80% 이상(5점)인 인증기관이 33개 기관으로 전체 54% 차지

그림4-23. 인증 갱신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이는 전반적으로 인증기관의 인증갱신율이 높음

그림4-24. 인증 갱신율 교정 후 득점 분포



4.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3.2점이고 교정 전 대비 1.18점 상승
-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평균이 상승

표4-51.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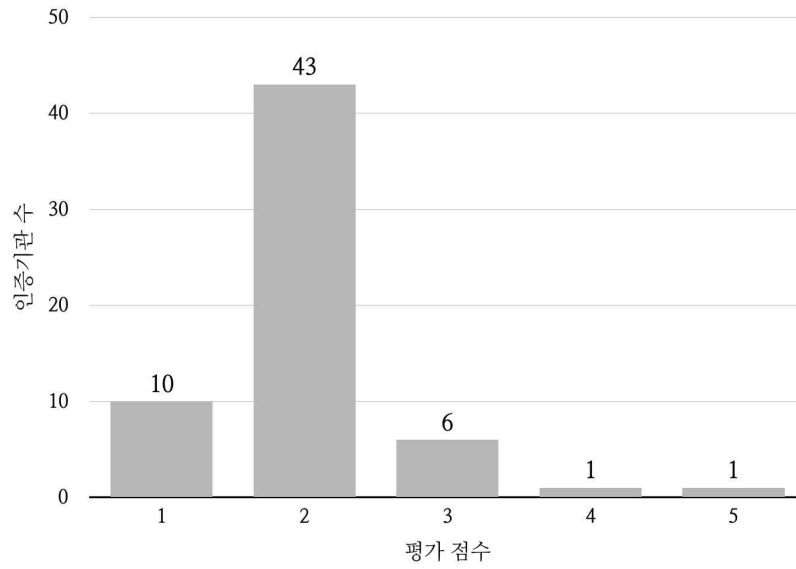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2.02	3.2

- 교정 전 대비 교정 후 1~2점 구간에 인증기관이 각 5개, 17개 기관으로 감소하였으나 3~5점 구간에 인증기관 수가 증가

표4-52.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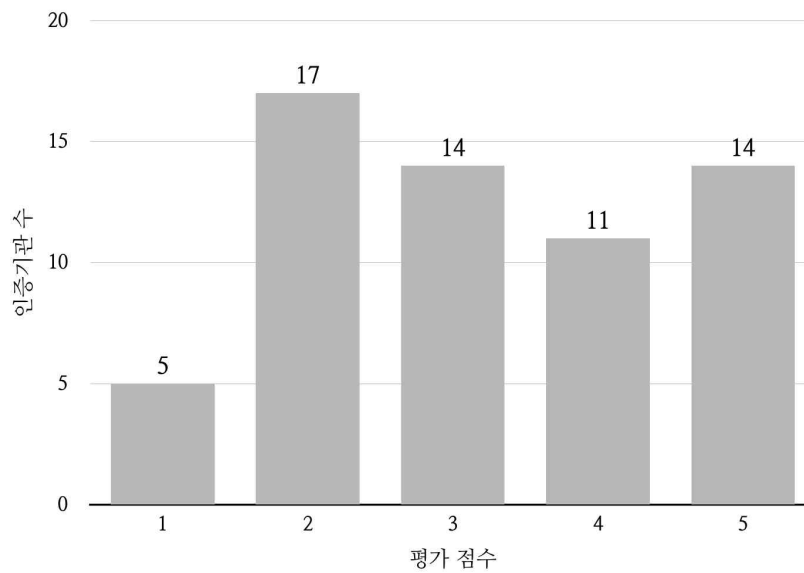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10	16%	1	5	8%
2	43	70%	2	17	28%
3	6	10%	3	14	23%
4	1	2%	4	11	18%
5	1	2%	5	14	23%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25.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교정 전 득점 분포



- 그림4-26을 보면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이 0~30% 이하(2점)인 인증 기관이 전체 약 28% 차지

그림4-26.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교정 후 득점 분포



4.14. 인증 건수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74점이고 교정 전 대비 0.51점 하락
- 득점 기준 변경, 점수 세분화에 따라 평균 하락

표4-53. 인증 건수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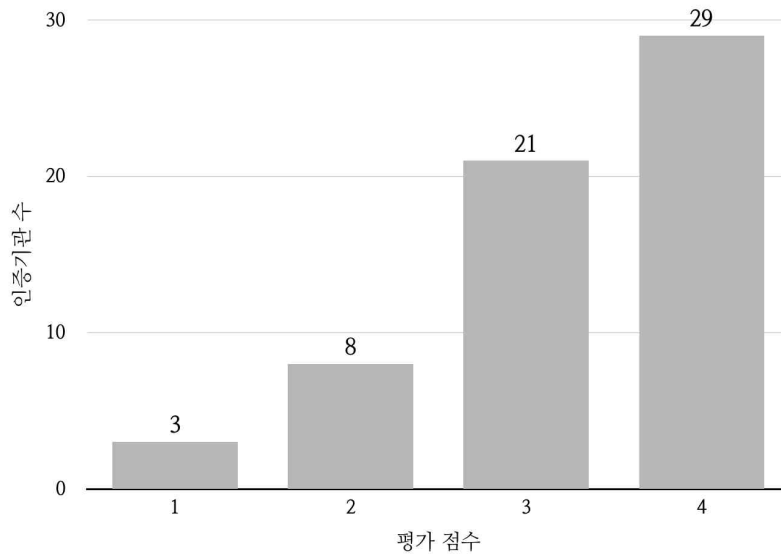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25	2.74

- 교정 후 1~2점 구간이 각 11개, 21개 인증기관으로 증가

표4-54. 인증 건수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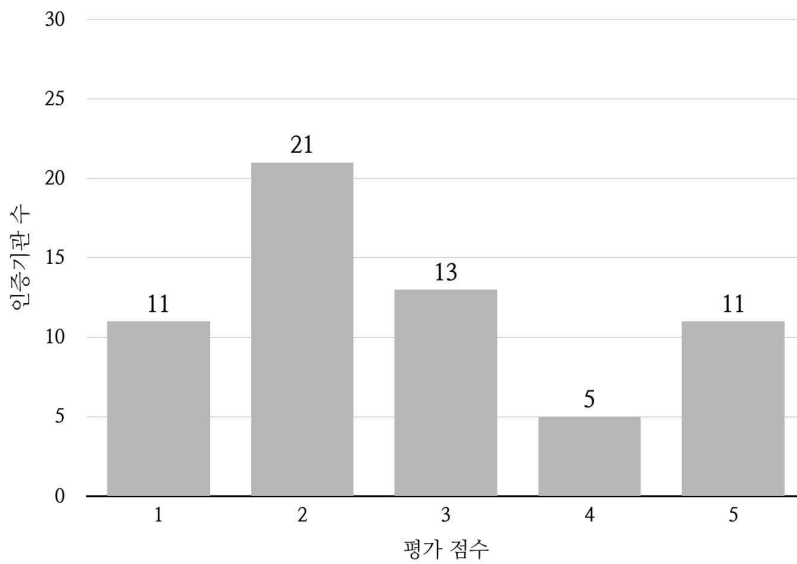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3	5%	1	11	18%
2	8	13%	2	21	35%
3	21	34%	3	13	21%
4	29	48%	4	5	8%
-	-	-	5	11	18%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27. 인증 건수 교정 전 득점 분포



- ‘인증 건수 교정 후 득점 분포’ 그림(4-28)를 보면 인증 건수가 200~400건 미만(2점)인 인증기관이 21개 기관으로 전체 35% 차지

그림4-28. 인증 건수 교정 후 득점 분포



4.15. 인증사업자수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69점이고 교정 전 대비 0.59점 하락
- 득점 기준 변경, 점수 세분화에 따라 평균이 하락

표4-55. 인증사업자수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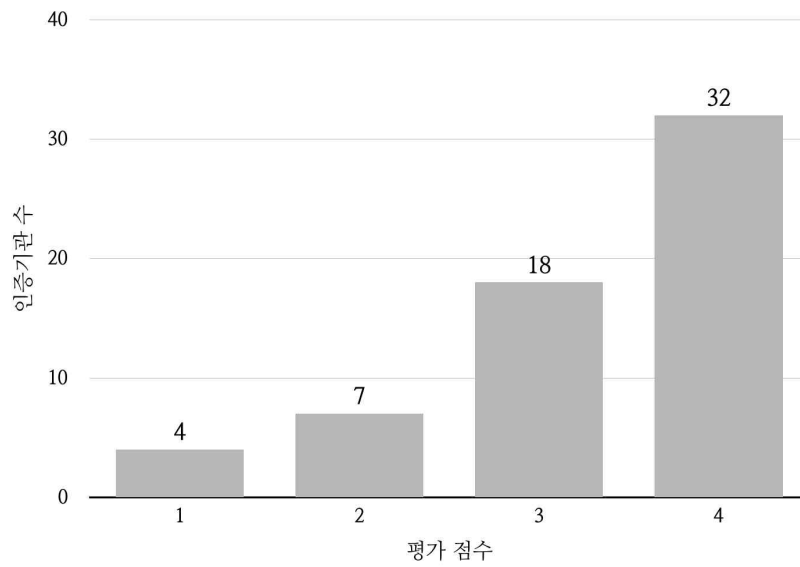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28	2.69

- 교정 후 1~3점 구간이 각 11개, 18개, 16개 기관으로 증가

표4-56. 인증사업자수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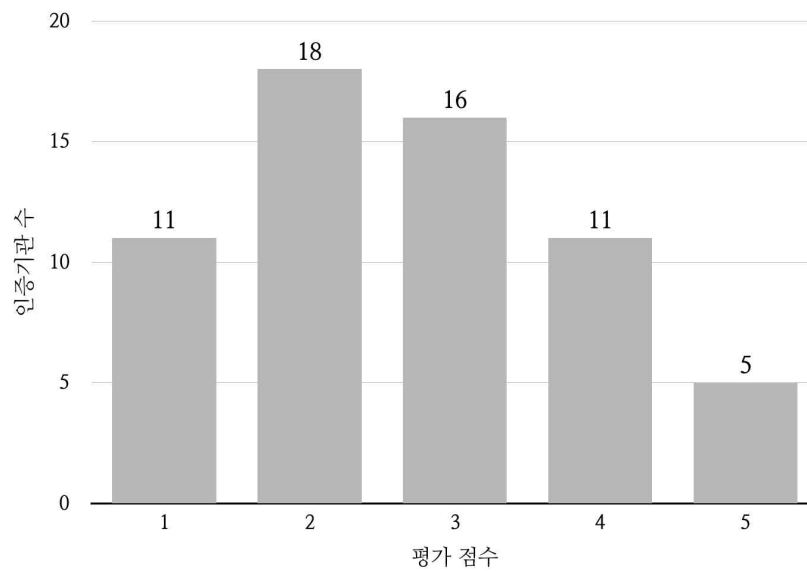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4	7%	1	11	18%
2	7	11%	2	18	30%
3	18	30%	3	16	26%
4	32	52%	4	11	18%
-	-	-	5	5	8%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29. 인증사업자수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인증기관의 인증사업자수가 500~1,000명 미만인 인증기관이 전체 30% 차지

그림4-30. 인증사업자수 교정 후 득점 분포



4.16. 전년도 매출액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31점이고 교정 전 대비 1.64점 하락
- 득점 기준 변경에 따라 만점 기준이 상승하여 평균 하락

표4-57. 전년도 매출액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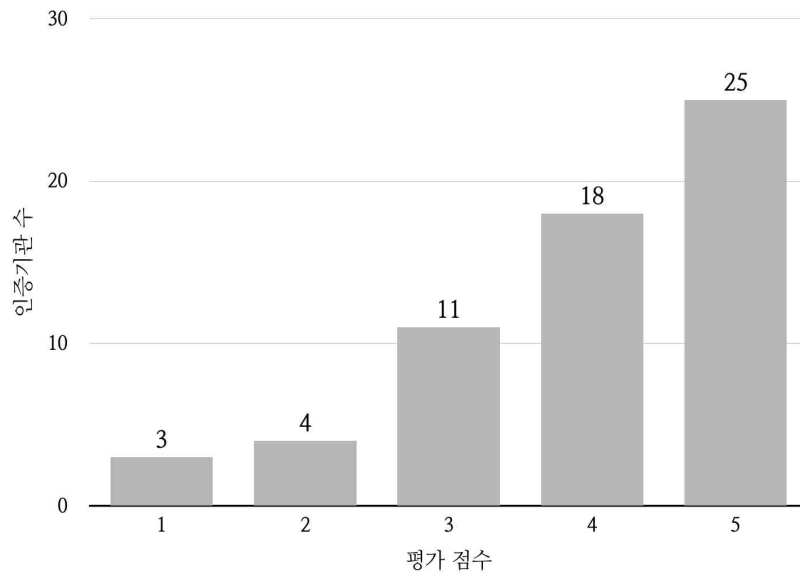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95	2.31

- 교정 후 1~3점 구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4~5점 구간이 감소

표4-58. 전년도 매출액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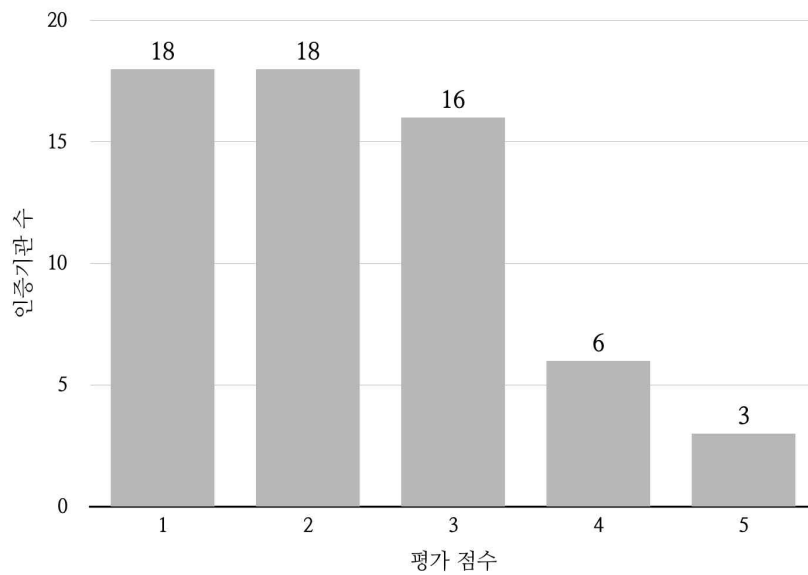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3	5%	1	18	30%
2	4	6%	2	18	30%
3	11	18%	3	16	26%
4	18	30%	4	6	9%
5	25	41%	5	3	5%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31. 전년도 매출액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인증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미만(1~2점)인 인증기관은 전체 60% 차지

그림4-32. 전년도 매출액 교정 후 득점 분포



4.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 이 지표는 평가방법이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에서 ‘인증사업자수 증가율’로 변경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28점으로 대부분 인증기관의 인증사업자수 증가율이 높음

표4-59.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2.46	2.28

- 교정 후 3점 구간에 27개 기관이 있으며 이는 인증사업자수 증가율이 10% 초과하는 인증기관이 전체 약 44% 차지

표4-60.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평가 결과

득점수	교정 전		교정 후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9	15%	1	10	16%
2	15	25%	2	24	40%
3	37	60%	3	27	44%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33. 인증매출액 증가율 교정 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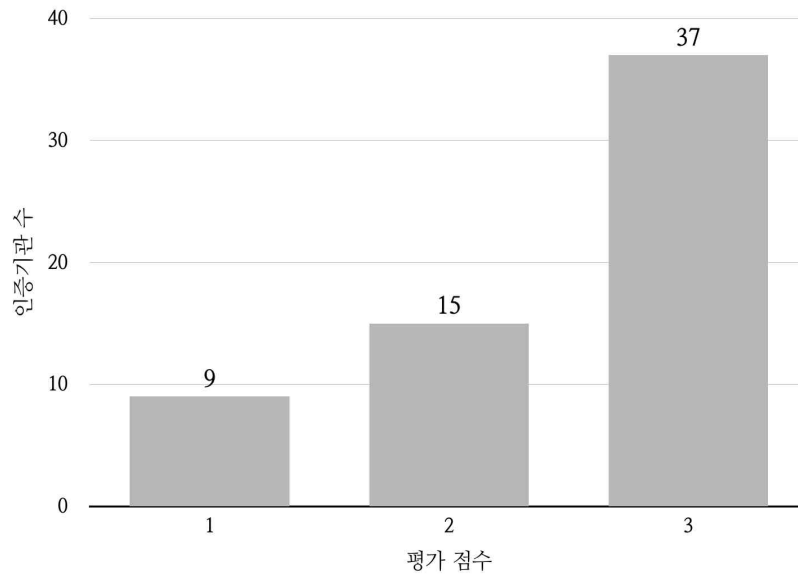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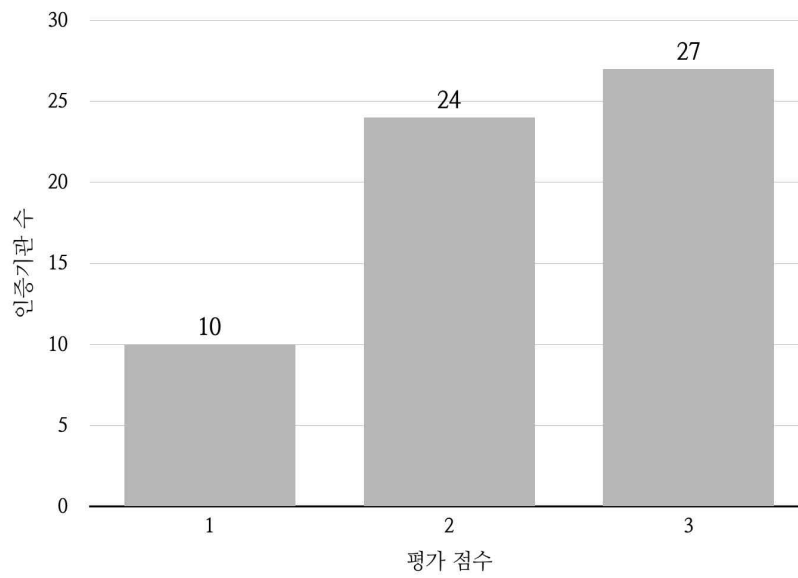


그림4-34.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교정 후 득점 분포



4.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 ‘핵심역량 보유 현황’은 가점제에서 정량평가로 변경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43점이고 교정 전 대비 0.56 상승

표4-61. 핵심역량 보유 현황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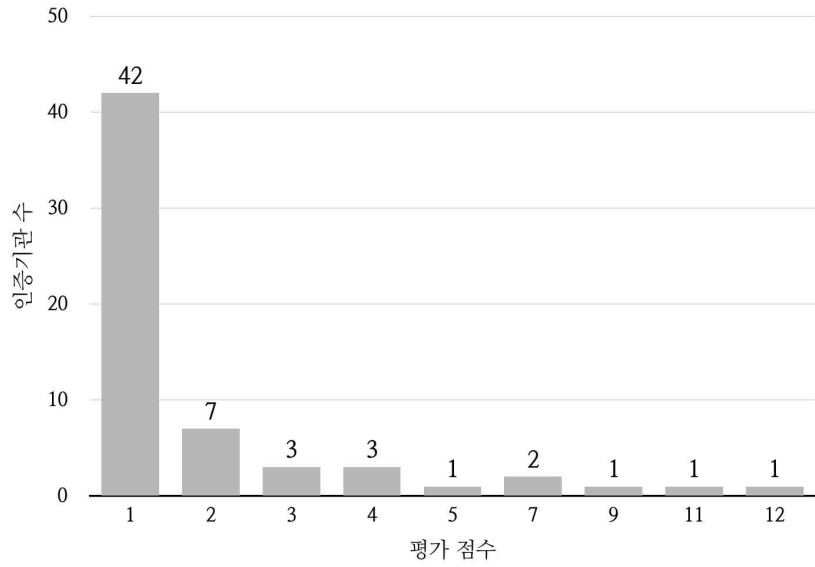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1.87	2.43

- 교정 후 1~2점 구간에 인증기관이 14개, 28개 기관으로 가장 많음

표4-62. 핵심역량 보유 현황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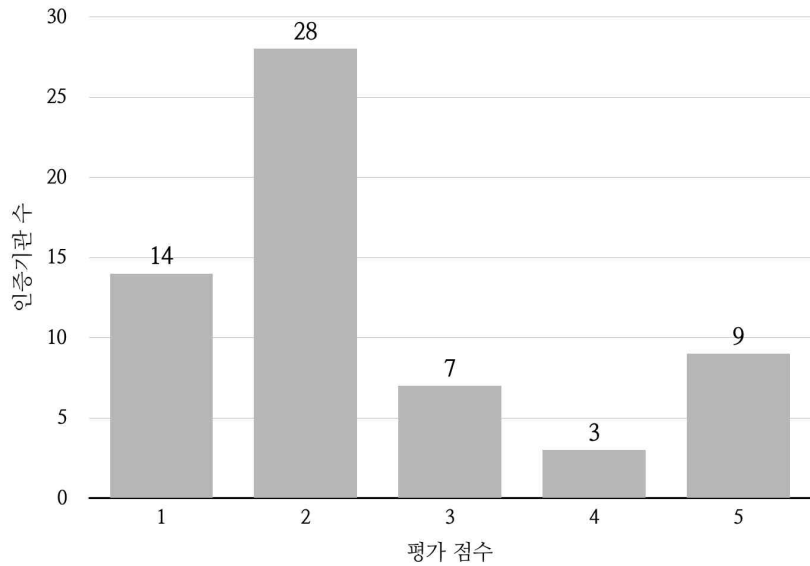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42	68%	1	14	23%
2	7	11%	2	28	46%
3	3	5%	3	7	11%
4	3	5%	4	3	5%
5	1	2%	5	9	15%
7	2	3%	-	-	-
9	1	2%	-	-	-
11	1	2%	-	-	-
12	1	2%	-	-	-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35. 핵심역량 보유 현황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2건의 국제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인증기관이 28개 기관으로 전체 46% 차지

그림4-36. 핵심역량 보유 현황 교정 후 득점 분포



4.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0.05점으로 교정 전 대비 0.03점 하락
- 이는 득점 기준이 '5점 가점'에서 '3점 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이 하락
- 인증기관 수는 교정 전·후 달라진 사항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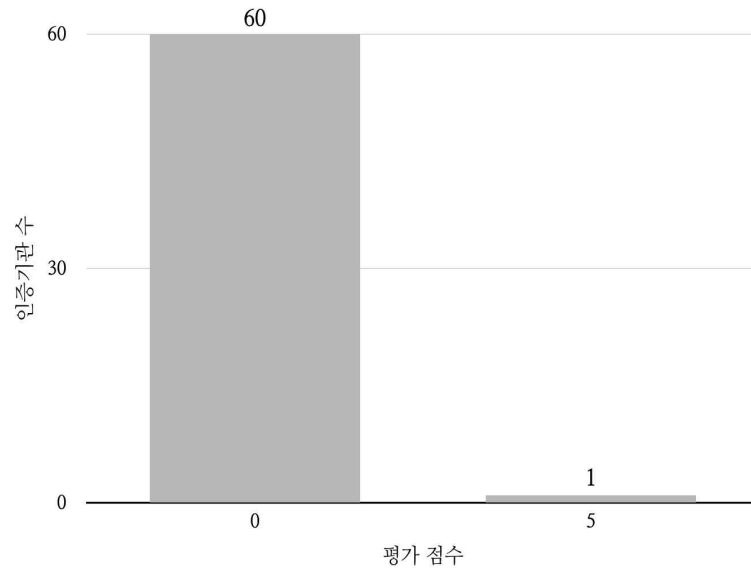
표4-63.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0.08	0.05

표4-64.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0	60	98%	0	60	98%
1	1	2%	1	1	2%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37.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4.20. 부채비율

- 교정 전·후 득점 평균은 2.13점
-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인 인증기관은 ‘자본잠식³⁸⁾’으로 최하점을 부여하여 1점 구간의 인증기관 수가 증가

표4-65. 부채비율 득점 평균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2.13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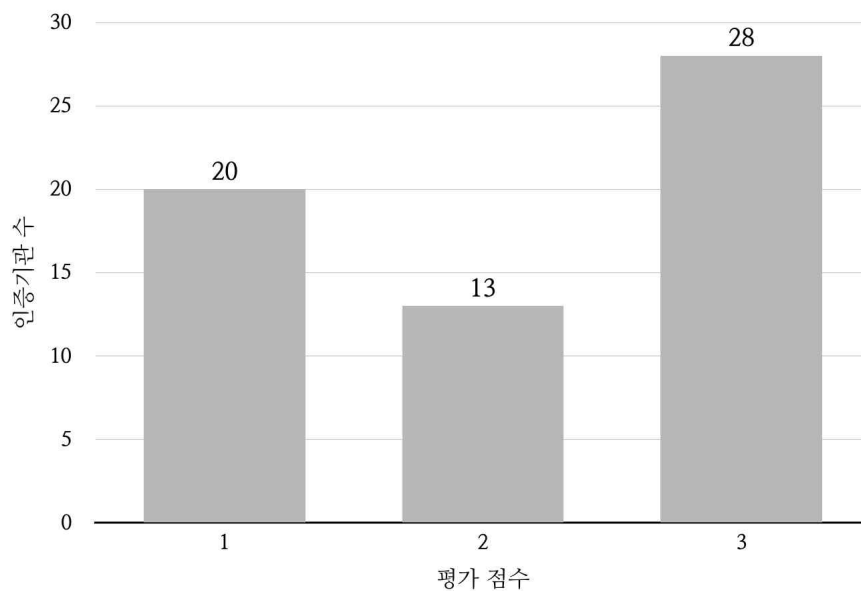
38) 자본잠식: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완전자본잠식 또는 자본 전액잠식이라 함

표4-66. 부채비율 평가 결과

교정 전			교정 후		
특점 점수	인증기관 수	특점 비율	특점 점수	인증기관 수	특점 비율
1	20	33%	1	20	33%
2	13	21%	2	13	21%
3	28	46%	3	28	46%
합계	61	100%	합계	61	100%

- 그림4-38을 보면 부채비율이 100% 미만(3점)인 인증기관이 전체 46% 차지

그림4-38. 부채비율 득점 분포 (교정 전·후 동일)



4.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85점이고 교정 전 대비 0.03점 증가
- 평가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교정 전·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표4-67.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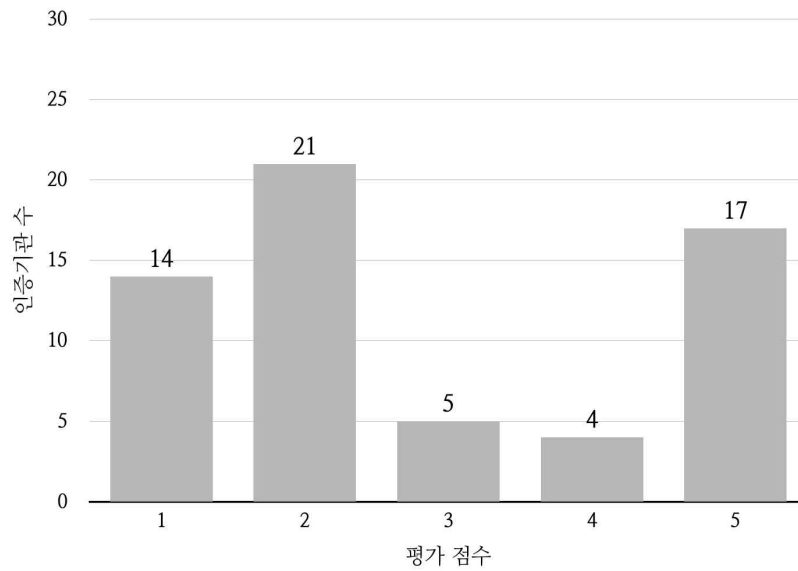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2.82	2.85

- 교정 전 대비 교정 후 1점, 5점이 감소하고 2~4점 구간이 증가

표4-68.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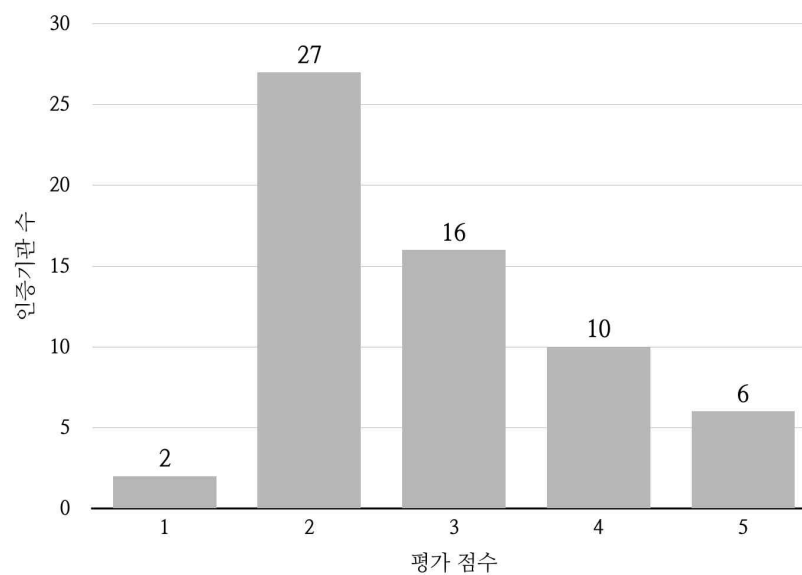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14	23%	1	2	3%
2	21	34%	2	27	44%
3	5	8%	3	16	26%
4	4	7%	4	10	17%
5	17	28%	5	6	10%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39.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1백만~2백만 원 미만(2점)인 인증기관이 27개 기관으로 전체 44% 차지

그림4-40.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교정 후 득점 분포



4.22. 상근심사원 퇴사율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4.02점이고 교정 전 대비 0.25점 상승
- 득점 기준을 교정함에 따라 평균이 상승

표4-69. 상근심사원 퇴사율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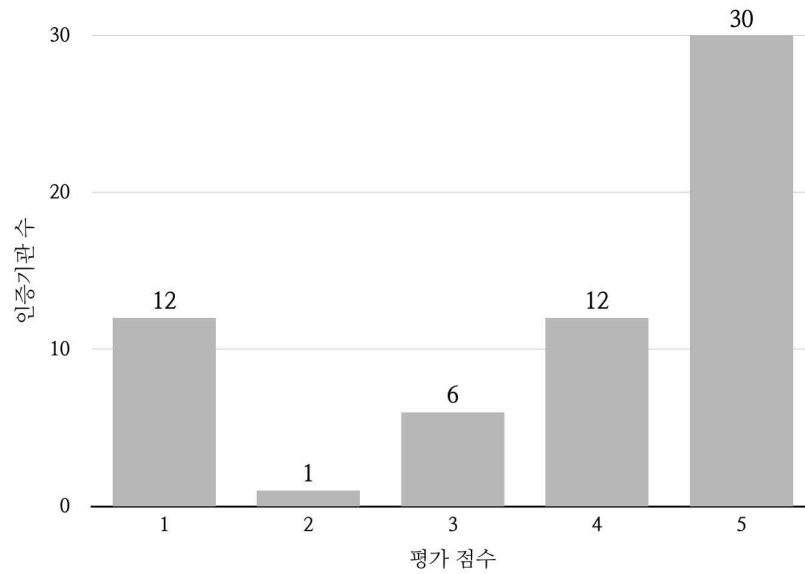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3.77	4.02

- 교정 후 4~5점 구간이 증가했으며 1점 구간은 5개 구간으로 감소

표4-70. 상근심사원 퇴사율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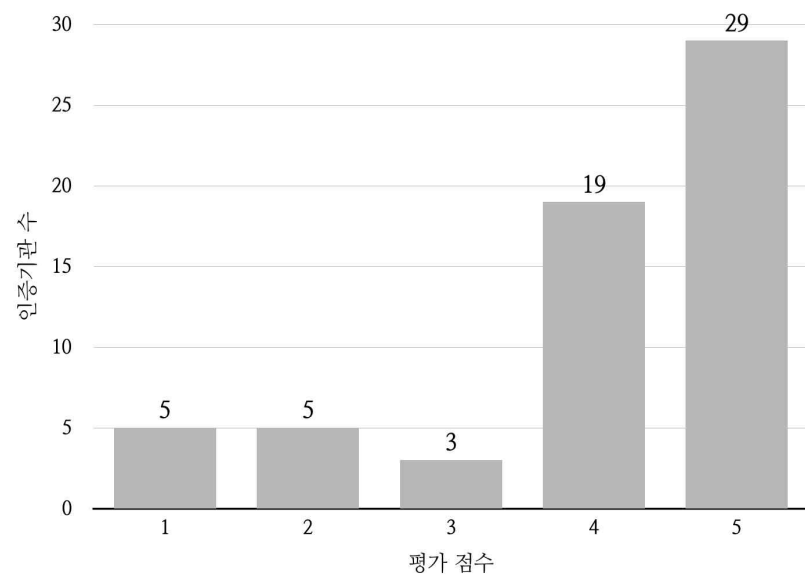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12	19%	1	5	8%
2	1	2%	2	5	8%
3	6	10%	3	3	5%
4	12	20%	4	19	31%
5	30	49%	5	29	48%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41. 상근심사원 퇴사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20% 미만(5점)인 인증기관이 29개 기관으로 전체 40% 차지
- 인증기관이 특정 점수대로 집중 분포하지만 퇴사율이 낮은 것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내용적 타당성이 인정

그림4-42. 상근심사원 퇴사율 교정 후 득점 분포



4.23. 관할지역 인증비율

- 교정 후 득점 평균은 2.72점이고 교정 전 대비 0.02점 하락
- 득점 기준을 교정함에 따라 평균이 하락

표4-71. 관할지역 인증비율 득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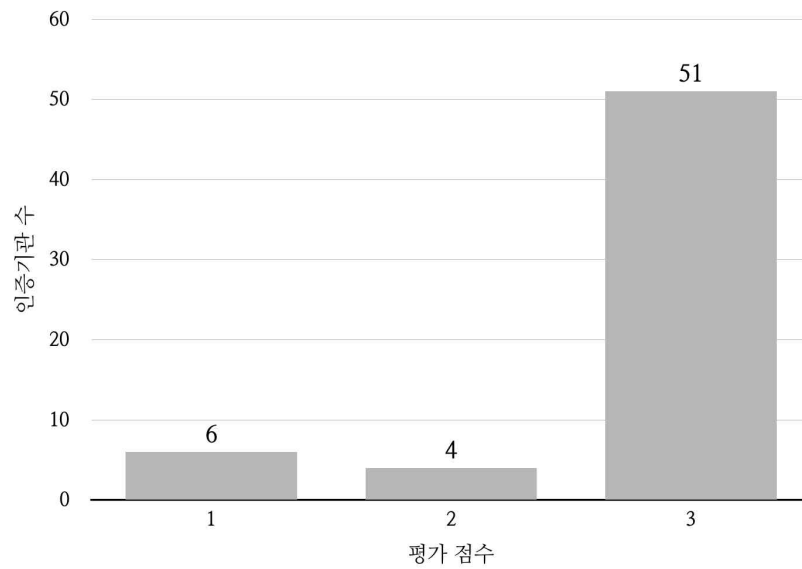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 평균	2.74	2.72

- 교정 후 2점 구간이 7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정 전·후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음

표4-72. 관할지역 인증비율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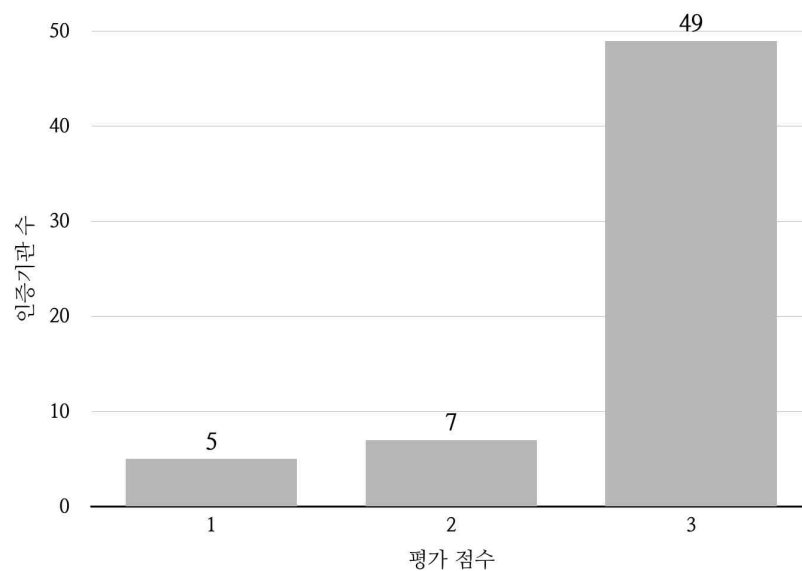
교정 전			교정 후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득점수	인증기관 수	득점 비율
1	6	10%	1	5	8%
2	4	6%	2	7	11%
3	51	84%	3	49	81%
합계	61	100%	합계	61	100%

그림4-43. 관할지역 인증비율 교정 전 득점 분포



- 교정 후 관할지역 인증비율이 60% 이상(3점)인 인증기관이 전체 81% 차지
- 인증기관이 3점 구간에 집중 분포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증기관은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도(시·도)에서 주로 인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 타당성으로 인정

그림4-44. 관할지역 인증비율 교정 후 득점 분포



5. 최종 평가 결과

5.1. 인증기관별 총점의 분포

-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 교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총점 평균은 65.6 점, 총점 최고 점수는 84점, 최저점수는 51점
- 교정 후 등급 분포는 ‘우수’ 2개(3%), ‘양호’ 14개(23%), ‘보통’ 30개(49%), ‘미흡’ 15개(25%)로 분포
- 교정 전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각 ‘우수’ 7개, ‘양호’ 9개 기관이 줄어들었으며 ‘보통’ 5개, ‘미흡’ 11개 기관이 증가

표4-73. 교정 전·후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교정 전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교정 후	기관 수	2	14	30	15	61
	비율(%)	3	23	49	25	100

그림4-45. 교정 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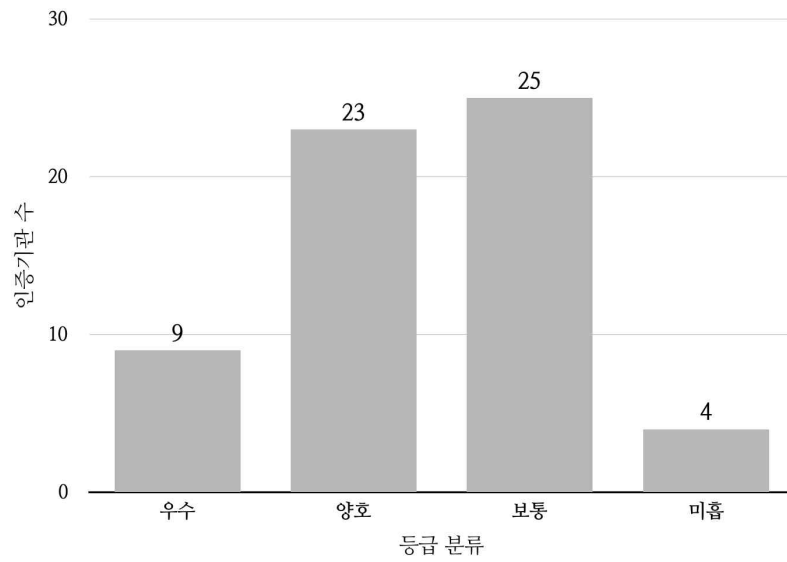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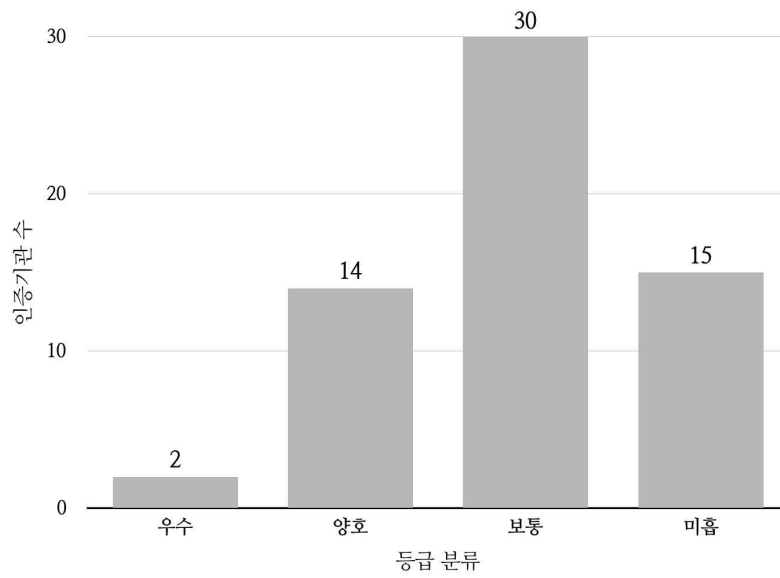


그림4-46. 교정 후 등급 분포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1. 등급제 시행의 목적

- 등급제 시행은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우수한 인증기관 지원을 목적을 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등급제 시행의 목적은 미흡한 인증기관의 퇴출이 아닌 우수한 인증기관의 양성에 있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평가기관의 운영 원칙

2.1. 평가기관의 지정

- 등급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등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급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은 인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함

2.2. 평가자

- 평가를 실시하는 인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자로 할 것을 제안함
 - (1) 평가의 시작일 전 1년 이내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 (3) 인증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 평가반의 구성 : 인증기관 평가 시에는 위 항의 자격 요건에 맞는 평가자 2인으로 구성하여 투입함이 타당함
 - 평가반은 선임평가자의 책임하에 평가의 계획과 결과 보고 수행

3. 등급결정심의위원회

3.1. 평가기관과 분리된 심의위원회의 구성

-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평가의 과정에 대한 승인 및 최종 등급의 확정은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함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인 (심의위원장)
 -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인
 - (3) 생산자단체 1인
 - (4) ISO17065의 전문인 1인
 - (5) 그밖에 공정하게 등급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 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평가기관의 장이 담당

4. 평가의 원칙과 절차

4.1. 일반 원칙

○ 이해관계의 기피

평가기관의 평가반 및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평가 및 심의에서 기피하여야 함

⇒ 통상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과 관련 행위(평가 또는 심의)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전 1년 동안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기밀유지의 원칙

평가기관과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인증기관 또는 심사원의 기본 운영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
 -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예컨대,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평가 대상의 회계 연도

인증기관의 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 ‘조사대상연도’로 칭함

○ 평가 시행 시기

평가반의 조사 및 평가는 4월1일 이후에 시작하여 6월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연도에 대한 최적 조사 시기에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정보수집의 방법 규정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1)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조사표 : 평가기관이 인증기관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2)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을 열람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한 자료의 이용 : 농관원의 효율적인 자료 추출을 위하여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의 프로그래밍 필요

○ 평가의 계획

평가반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인증기관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평가 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의 통보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의 7일 전에 방문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여 인증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게 평가계획서를 전송

- 체류 시간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때에는 인증기관 별 방문기간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균일한 시간을 지정할 필요

⇒ 1~2 시간 이내로 함이 적정

- 일정의 변경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일정 고려

○ 자료 제공의 거부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된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취해져야 함.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채택하는 방안

1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 부여 (주로 1점이 됨)

2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

○ 등급제의 거부 및 비협조

-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조사표 제출의 지연 등, 평가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져 조사에 차질이 빚

- 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방안
- 1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 부여 (주로 1점이 됨)
 - 2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

○ 평가의 보고

- 평가기관이 인증기관 전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등급 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이 필요. 평가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평가반의 구성
- ② 평가기간(현장체재시간)
- ③ 각 지표별 획득 점수, 계산 방식, 근거 자료 등
- ④ 조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 등급의 결정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석인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을 결정

⇒ 등급결정의 표결 등 관련 사항의 규정이 필요. 표결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결정심의위원장이 등급을 결정하는 방안

○ 이의제기의 기회 제공

인증 등 일반적인 평가 절차와 같이, 피평가자에게는 이의제기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이의제기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이의제기 절차의 통지
- (2) 이의제기 접수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안내
- (3) 이의제기 접수 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할 담당자의 지정
- (4) 조치 후의 보고 체계

5. 평가 결과의 적용 방법

○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5-1. 등급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방안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기준	80점 이상	70~79	60~69	60 미만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농관원 지도점검	2년	연1회	2년 3회	연2회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제6장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1. 평가 결과

1.1. 평가 배경 및 목적

○ 시범 평가의 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와 평가 등급제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제시
- 평가지표 체계의 적절성, 프로세스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등급제 추진방향 제시
-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의 평가를 통해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분석

○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 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민간 인증기관들의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및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들의 인식을 수집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됨
- 평가 대상 : 농관원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전국 61개 민간 인증기관 대상

－ 평가 기간

- 1) 서면 평가 : 2016년 12월~2017년 1월
- 2) 등급제 설명회 : 2017년 1월
- 3) 현장 평가 : 2017년 1월~2017년 3월
- 4) 보완 요청 : 2017년 1월~2017년 4월

－ 분석방법

- 1) 인증기관 현황 분석을 위해서 설문에 응답한 인증기관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응답비율을 분석
- 2) 등급제 점수 환산을 위하여 응답 데이터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3) 수정된 등급제 지표에 응답 데이터와 현장 조사 자료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평가 체계

1. 평가 대상 : 국내 소재 친환경농산물 등의 민간 인증기관
2. 유효 대상자 수 : 61개 인증기관³⁹⁾ 중 61개 기관(100%)
3. 기관별 평가 횟수 : 2회(서면평가, 현장평가)
4. 평가 방법
 - － 설문지 배포 및 회수(온라인 이메일 및 팩스 활용)
 - － 현장방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자료 수집과 평가

39) 2017년 3월 3일자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취소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61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1.2. 평가 방법

- 등급제 시행 시 인증기관, 평가기간, 농관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제시
- 서면 평가, 현장 평가 2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3개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평가
- 시범 평가 이후 지표별 평가 방법을 표6-1과 같이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

표6-1.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5	인증 부적합률	$\frac{\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times 100$
6	사후관리 빈도	$\frac{\text{사후관리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text{연초 상근심사원수}) + (\text{연말 상근심사원수})] / 2\}$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9	교육훈련 투입량	$(\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 / [(\text{연초 상근직원수}) + (\text{연말 상근직원수})] / 2 + (\text{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text{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 (\text{연말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12	인증 갱신율	$(\text{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 / (\text{연초 국내 인증건수})$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text{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text{당기말 인증사업자수})/(\text{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100 - 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20	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frac{\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건수}} \times 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24 (추가)	친환경인증제 도에 대한 기여도	$\frac{\text{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text{총인원}}$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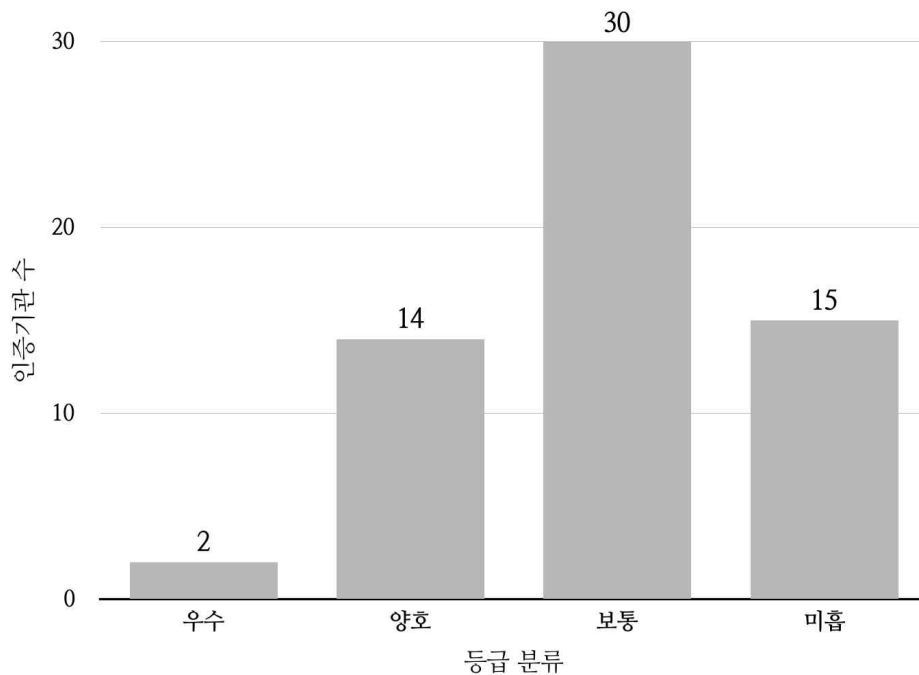
1.3. 등급 평가 결과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61개 인증기관에게 적용한 결과 각 지표마다 점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
-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 방법과 득점 기준을 검토, JISZ9041-1(일본 표준규격)에 따라 득점 기준을 재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로 교정
- 초기 평가 지표와 비교 시 평가 방법에서 7개 지표, 득점 기준에서 19개 지표가 교정. 또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24번 지표를 새롭게 추가
- 교정된 23개 평가지표에 따른 인증기관의 총점 평균은 65.6점, 총점 최고 점수는 84점, 최저점수는 51점
- 등급 분포는 ‘우수’ 2개(3%), ‘양호’ 14개(23%), ‘보통’ 30개(49%), ‘미흡’ 15개(25%)로 분포
- 등급별 총점 평균은 ‘우수’ 82점, ‘양호’ 73.9점, ‘보통’ 65점, ‘미흡’ 56.7점

표6-2. 최종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2	14	30	15	61
비율(%)	3	23	49	25	100

그림6-1. 최종 등급 분포



- 최종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그림6-1과 같이 전체 인증기관의 73%가 ‘보통’, ‘미흡’을 차지
- 본 연구소는 61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인증기관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예컨대, 이전엔 인증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시범조사 이후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교육 실적을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또한 인증기관은 (사)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는 ‘교육훈련 투입량’,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핵심역량 보유 현황’ 지표의 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증기관의 총점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
- 표6-1를 보면 15년 대비 16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면적, 출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이에 따라 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상승한다면 ‘인증 건수’, ‘인증사업자수’, ‘전년도 매출액’ 지표의 점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

표6-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구 분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
유 기	건수(건)	3,947	4,472	13.3
	농가수(호)	11,611	12,896	11.1
	면적(ha)	18,136	19,862	9.5
무 농 약	건수(건)	16,587	18,482	11.4
	농가수(호)	48,407	49,050	1.3
	면적(ha)	56,999	59,617	4.6
계	건수(건)	20,534	22,954	11.8
	농가수(호)	60,010	61,946	3.2
	면적(ha)	75,125	79,479	5.8

- 각 인증기관은 앞으로 시행될 등급제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 지표를 파악하고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 시행되는 등급제 평가에서는 시범조사보다 인증기관별로 점수가 약 1~3점 상승 예상

1.4. 향후 목표치 설정

□ 예상 등급 평가(1~3점 더한)

- 시범 평가 이후 인증기관의 기존 점수에 1~3점을 더하여 모의 평가를 실시
- 모의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시행되는 등급제 평가에 있어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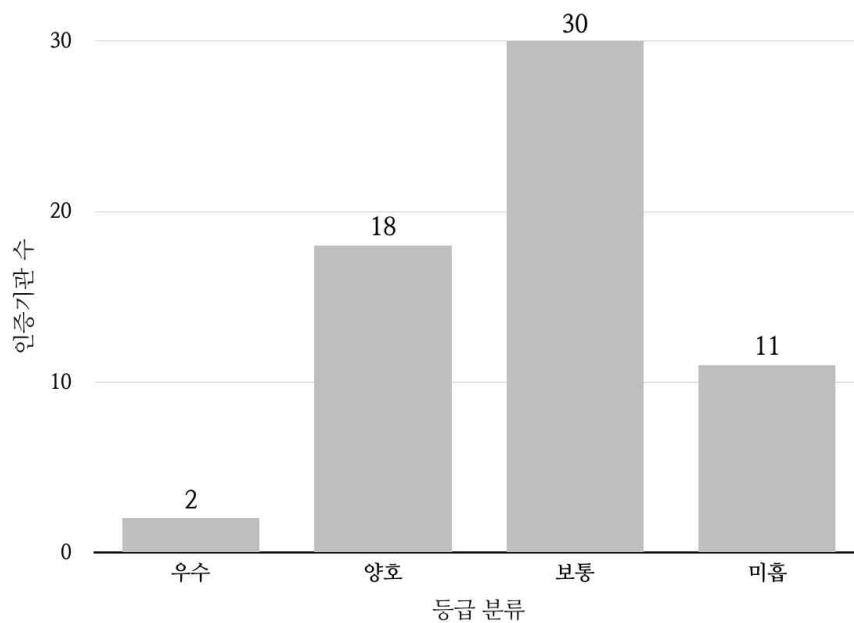
□ 평균총점 1점 상승 시

- 각 인증기관별로 점수가 1점씩 상승할 경우 ‘우수’ 2개(3%), ‘양호’ 18개(30%), ‘보통’ 30개(49%), ‘미흡’ 11개(18%)로 분포
- ‘우수’ 등급은 변함이 없고 ‘양호’ 등급에 4개 기관이 증가

표6-4.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1점 상승 시)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2	18	30	11	61
비율(%)	3	30	49	18	100

그림 6-2.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1점 상승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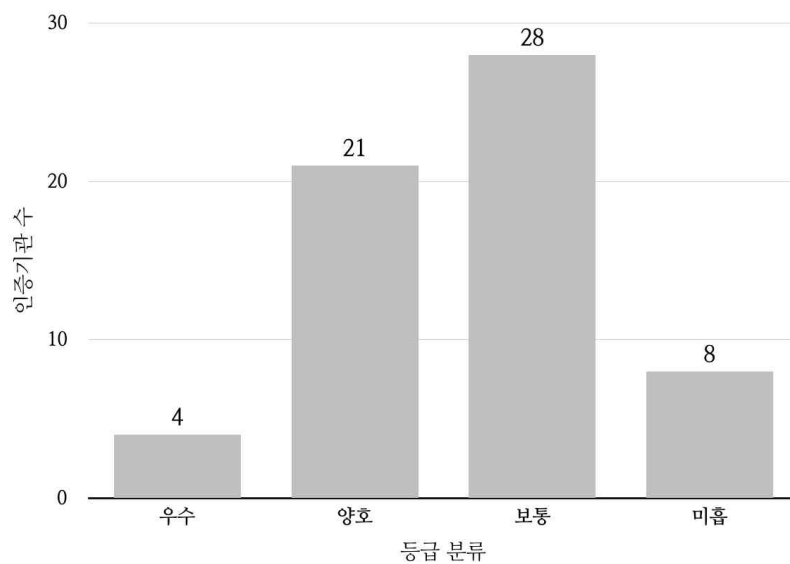
□ 평균총점 2점 상승 시

- 각 인증기관별로 점수가 2점씩 상승할 경우 ‘우수’ 4개(7%), ‘양호’ 21개(34%), ‘보통’ 28개(46%), ‘미흡’ 8개(13%)로 분포
- 기존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우수’ 2개, ‘양호’ 7개 기관이 증가, ‘보통’ 2개, ‘미흡’ 7개 기관이 감소

표6-5.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2점 상승 시)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4	21	28	8	61
비율(%)	7	34	46	13	100

그림 6-3.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2점 상승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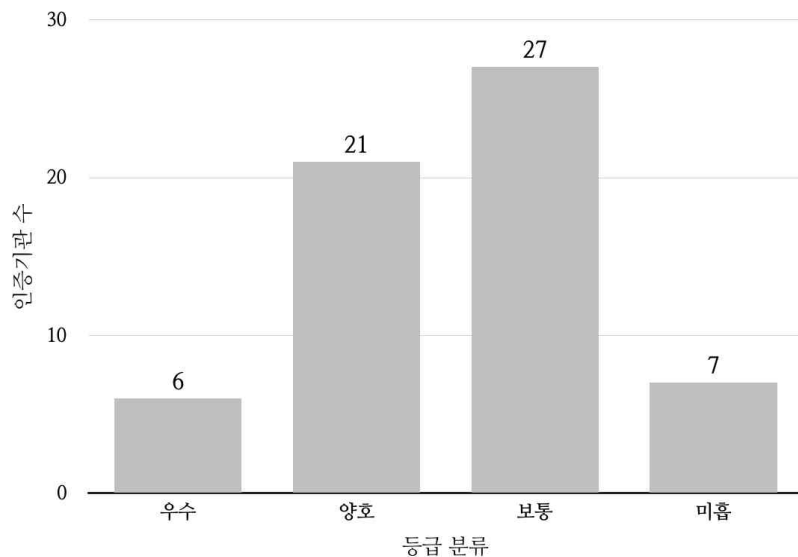
□ 평균총점 3점 상승 시

- 각 인증기관별로 점수가 3점씩 상승할 경우 ‘우수’ 6개(10%), ‘양호’ 21개(34%), ‘보통’ 27개(44%), ‘미흡’ 7개(12%)로 분포
- 기존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우수’ 4개, ‘양호’ 7개 기관이 증가, ‘보통’ 3개, ‘미흡’ 8개 기관 감소

표6-6.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평균 3점 상승 시)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6	21	27	7	61
비율(%)	10	34	44	12	100

그림 6-4. 등급 평가 결과 분포(평균 3점 상승 시)



- 등급제 시행 시 평균총점이 3점 증가하면 위 그림과 같이 인증기관의 등급이 분포하게 되므로, 인증기관들이 지금보다 3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책이 필요

- 예컨대, 심사원 양성 및 보수 교육에 적극 참여
- 심사원 근속연수가 계속 연장되도록 심사원 처우 개선
-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 유도
- 사업자 교육의 활성화
- 그밖에, 모든(24개) 평가지표에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2. 경영 평가 결과

2.1. 경영 평가 분석

- 전체 61개 인증기관 중 36개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 분석을 실시(비영리와 영리기관은 기관의 운영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상호간 비교가 무의미함)
- 예컨대 비영리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으며 이는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확보하여 운영. 영리기관과는 부채비율이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남
- 중소기업 전산업과 유사업종 서비스 산업을 택하여 비교
- 개별 인증기관 평가서에는 전체 인증기관의 경영 평균을 개별 인증기관과 비교
- 친환경 인증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업종은 없으며(농업의 경우 생산, 유통, 판매 등 범위가 넓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 유사업종으로 서비스 산업을 택함
 - KS Q ISO/IEC 17065:2014 “인증의 최종목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2.2. 성장성 분석

- 성장성은 자산의 총액에 대한 증가율로 기업의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증기관의 경영규모와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 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냄⁴⁰⁾
- 기업의 성장성에는 총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증가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로 구분
- 2015년 타 산업에 비하여 인증기관의 성장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인증기관이 2014년도에 비하여 2015년도의 자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예컨대, 유동자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증기관은 2014년 대비하여 2015년 매출과 자산이 약 13배 증가

표6-7. 2015년 성장성 비교 분석

구분	총자산증가율 (%)	유동자산증가율 (%)	자기자본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
전산업 (중소기업)	12.11	11.98	15.87	8.03
서비스업	8.09	7.69	12.72	4.65
인증기관 (영리)	26.17	61.41	16.49	29.24

40) 자료 : KOSIS, 통계설명자료

그림6-5. 2015년 친환경인증기관 총자산증가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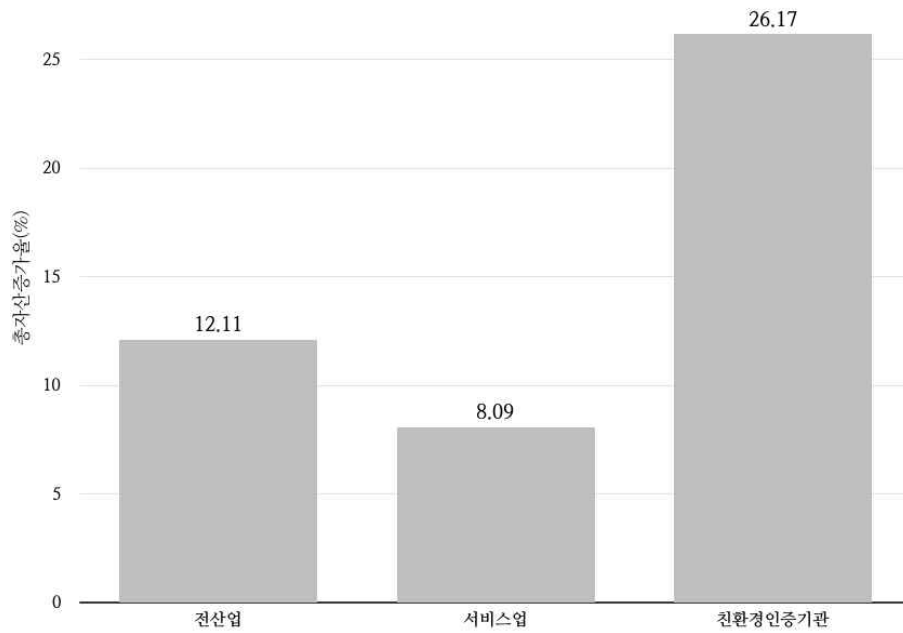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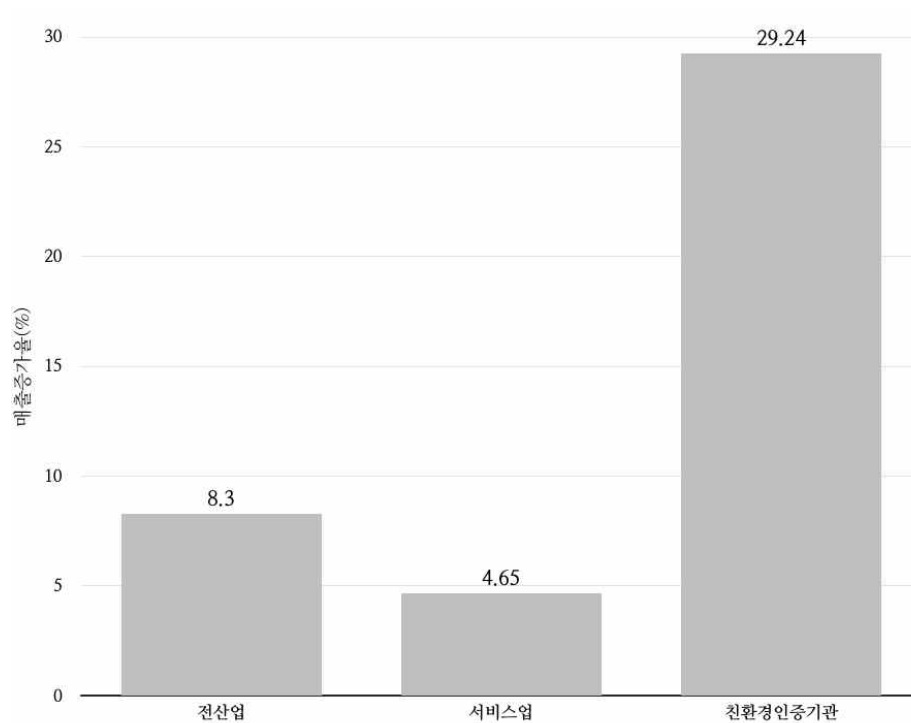


그림6-6. 2015년 친환경인증기관 매출증가율 평균



2.3. 안정성 분석

- 안정성은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로 구분됨.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이 높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음

표6-8. 2015년 인증기관 안정성 비교 분석

구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서비스업	34.56	120.96	189.33	37.95
인증기관 (영리)	32.77	432.01	48.90	9.90

- 유동비율이 150%이상인 경우 양호하며, 서비스업에 비하여 인증기관의 안정성이 높음. 이는 유동부채에 비하여 유동자산이 높음을 뜻함
-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까지 양호이며, 마이너스(-)일 경우 자본잠식으로 원래 업체가 가진 자본을 다 소진한 상태를 뜻함
- 부채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기관의 안정성이 높으나 인증기관의 경우 7개의 인증기관이 마이너스(-)이며 이들 인증기관은 자본잠식 상태임

2.4. 수익성 분석

- 수익성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을 분석
-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음
- 자기자본순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손익계산서상 최종의 경영성과임. 자기자본순이익율이 20% 이상인 경우 양호이며, 인증기관의 평균은 116.47%로 양호
- 매출액영업이익율은 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지표이며 영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20% 이하인 경우 불량이며, 인증기관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은 13.11%로 영업 효율성이 낮음
- 매출순이익율은 제품이나 상품의 최종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기관의 마진율이 높음을 의미. 5%이상이 양호이며, 인증기관의 매출순이익율은 16.16%로 마진율이 높음

표6-9. 2015년 인증기관 수익성 분석

구분	자기자본순이익율 (%)	매출액영업이익율 (%)	매출순이익율 (%)
인증기관 (영리)	116.47	13.11	16.16

2.5. 인증기관 경영 평가 결과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3가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인증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경영 평가에 적용(재무제표 등)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인증산업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이익창출이 높은 산업이 아닌, 오히려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증기관 운영 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2014년 19건, 2015년 17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며, 업무정지가 시 최소3개월~6개월 사이에는 인증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할 수 없음. 이러한 인증사업의 특수성으로 타 산업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보임

3.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등급제 적용 방안

3.1.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 적용의 필요성

- 본 평가 시 해외 소재 인증기관 3곳은 현지 사정과 경비 문제 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도 필요
- 국내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지표 가운데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음. 반면 국내 인증기관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해외 인증기관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지표가 있음(예컨대, ISO 17065의 경우 해외 소재 인증기관 3곳 전부 인정을 받음)
- 일부 지표는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지 사정에 따라 평가 방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 예컨대, ‘관할지역 인증 비율’ 지표에서 관할지역 범위는 인증기관 소재 시·군에 해당하지만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경우 관할지역 범위를 국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3.2. 선제 조건

- 등급 평가에 필요한 기본 정보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소재 인증기관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필요
- 해외 소재 인증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사이트 운영이 필요
- 국내 인증기관과 동일하게 현장 방문이 필요하므로 해외 출장에 대한 경비 확보 필요(호주, 독일, 네덜란드)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점을 부여
- 등급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득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부여

표 6-10. 해외 소재 인증기관 평가 적용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해외 소재 인증기관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동일 적용 가능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동일 적용 가능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동일 적용 가능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text{행정처분 건수}) /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 2 \times 100$	동일 적용 가능
5	인증 부적합률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 \{ (\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 \times 100$	동일 적용 가능
6	사후관리 빈도	$(\text{사후관리 건수}) /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 2 \times 100$	동일 적용 가능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5의 1.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1. 1)에 따라 인증건별로 연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실시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 (\text{연초 상근심사원수}) + (\text{연말 상근심사원수}) \} / 2 \}$	동일 적용 가능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동일 적용 가능
9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	동일 적용 가능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한하며 IOIA가 해당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동일 적용 가능 ※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경우 외국의 다양한 유기인증을 다루고 있으므로 국제 교육 수료현황이 높음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	동일 적용 가능
12	인증 갱신율	(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	동일 적용 가능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동일 적용 가능 ※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인증사업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필요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동일 적용 가능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동일 적용 가능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동일 적용 가능
17	인증사업자 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전기말 인증사업자수)}*100-100	동일 적용 가능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동일 적용 가능 ※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경우 외국의 다양한 유기인증을 다루고 있으므로 국제 교육 수료현황이 높음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동일 적용 가능 ※ 해외 소재 인증기관 전부 'ISO17065' 인정을 받음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동일 적용 가능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동일 적용 가능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동일 적용 가능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동일 적용 불가능 ※ 관할지역 개념을 도입하기가 어려움, 예컨대 독일소재의 인증기관의 경우 전체 사업자가 타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 해당 지표 적용 시, 국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3.3. 해외 소재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지표 변경

○ 지표 9. 교육훈련 투입량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언어의 제약이 있음

⇒ 개선방안: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중 영어로 교육 진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IOIA교육⁴¹⁾ 있으며, IOIA 외 농관원, 친인협 등에서 웨비나(Webinar)⁴²⁾ 교육 운영 또는, 해외 유기인증기준에 대한 교육 이수 시 인정

○ 지표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국내로 국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여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웨비나(Webinar) 교육 운영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근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 교육 의뢰

○ 지표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국내의 경우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시·도군을 관할지역으로 지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국내로 국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관할지역을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국가로 한정하여 평가

41) 2014년 11월 5일~6일 이탈리아 인증기관 CCPB(이탈리아 소재)를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이 개최되었음

42)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는 실시간 세미나, 교육 등을 말하며, 해외에는 웨비나(Webinar)를 통한 교육이 보편화되어있음

4. 등급제 운영 고시안

○ 등급제 제도화를 위한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운영 요령 (고시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서 제37조의5에 지정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기관등급제”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경영 상태, 신뢰성,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분류하여 공시,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절차와 규칙을 말한다.

3. “우수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등급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상위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별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방법과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기관의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등급평가보고서”는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심의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7. “등급분류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한 점수의 총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때의 기준이 되는 총점의 수를 말한다.
8. “평가방법”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원칙을 말한다.
9. “득점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배점”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배정한 최고 점수를 말한다.
11.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고시를 통한 등급제는 국내에 본사가 소재하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등급 평가 기관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지정원칙)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시작일 전 1년이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3. 인증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제6조(평가반) 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5조의 제1항에서 제3항에 적합한 2인의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에는 선임평가자를 선정하며, 선임평가자는 평가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①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제8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인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인

3. 생산자단체 1인

4. ISO17065의 전문인 1인

5. 그밖에 공정하게 등급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제9조(등급결정심의위원장) 등급결정심의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1인이 맡는다.

제10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간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평가기관의 장이 맡는다.

제11조(기밀유지) 등급결정심의위원은 심의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12조(평가 대상의 회계연도) 인증기관의 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평가의 시기) 평가반의 조사 및 평가는 5월1일 이후에 시작하여 6월30일 이전에 완료한다.

제14조(정보수집)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조사표(평가기관이 인증기관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
2.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을 열람

3.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열람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분석

제15조(평가의 계획) ①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의 7일 전에 방문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여 인증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게 평가계획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때에는 방문기간을 3시간 이하로 계획한다.

③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방법) 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최하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③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과 점수부여는 별표X(별도 작성)를 따른다.

④ 인증기관 등급 부여는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제17조(등급제의 거부 및 비협조) ①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게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이 조사표 제출의 지연 등, 평가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져 조사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대해 최하점 처리한다.

제18조(평가의 보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등급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 ① 평가반의 구성
- ② 평가기간(현장체재시간)
- ③ 각 지표별 획득 점수, 계산 방식, 근거 자료 등
- ④ 조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제19조(등급의 결정)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석인원 전원의 동의 하에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장이 등급을 결정한다.

제20조(이해관계의 기피) 등급결정심의위원 중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증기관과 심의 전 1년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에게 자신을 해당 심의 건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1조(등급별 지원방안) 인증기관 등급의 활용은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제6장 이의제기

제22조(이의제기 정책)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에게 평가 지침, 평가 절차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제기 절차 수립) 평가기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의 접수) 평가기관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 이를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담당자의 지정)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당해 건과 관계되는 평가반 등의 직원을 배제한 자 중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 계획을 세우고, 처리 후에는 이의를 제기한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II. 경영실적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2015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건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 축산물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2016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건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 축산물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관 소재 도내 생산자	()농가 / ()건	
2015 년말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수	()사업자 ※ 취급자 포함		
2016 년말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수	()사업자 ※ 취급자 포함		
시·도별 인증건수	서울, 인천, 경기 ()건 강원 ()건 대전, 세종, 충남 ()건 충북 ()건 전북 ()건 광주, 전남 ()건 대구, 경북 ()건 부산, 울산, 경남 ()건 제주 ()건		
	인증기관이 속한 시·도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의 인증건은 몇 건입니까? ()건		
2016 인증갱신 총 농가수 (2016.1.1. ~ 2016.12.31.)	()농가 ※ 동일인이 같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계속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 단체에서 개인으로 변경,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 등		
2016 인증갱신 유기가공사업자수	()사업자		
2016 인증갱신 총 건수	()건 ※ 동일인이 같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계속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 등		
2014 년도 인증사업 매출액	()천 원 ※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2015 년도 인증사업 매출액	()천 원 ※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III. 인력 관리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2015말(12월 31일) 상근심사원 수	()명	2016말 상근심사원 수	()명
2015말 정규직원 수	()명	2016말 정규직원 수	()명
2016 교육훈련 수료횟수 (상근직원에게 한함)	()회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 3의 2항에서 인정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2016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참가 횟수	()회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2016 상근직원(기관장 포함) 국제 교육수료증 보유 현황	IOIA 교육 ()건, ISO 심사원 교육 ()건, HACCP 교육 ()건, IFOAM 교육 ()건, USDA-NOP ()건, EC834/2007 ()건, 유기JAS ()건, 기타 _____ ()건 ※ 2016.12.31.까지 누적 총건수를 말함 ※ 기타는 친환경인증기관 역량에 관련된 타당한 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인된 제 3 자 교육기관의 수료증만을 인정		
2016 모든 상근직원 중 퇴사자 수	()명		
2016 상근심사원 중 퇴사자 수	()명		

상근심사원 현황 (2016.12.31. 기준) * 성명은 기재하지 말 것	A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B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C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D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E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F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G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H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2016 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	() 천원		
비상근심사원 현황 (2016.12.31. 기준)	인원	()명	
	친환경심사경력	평균()년차	
	비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	()천원	
심의관 수 (또는 인증위원수)	* 심 의 관 : 상근 ()명 비상근 ()명 * 인 증 위 원 : 상근 ()명 비상근 ()명		

IV. 인증품질 관리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2016년도)	정규심사 건수 (신규인증 + 인증갱신)	상근 ()건	비상근 ()건
	사후관리 건수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인증심의	심의 방법	<input type="checkbox"/> 인증심의관제	<input type="checkbox"/> 인증위원회제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2016 인증사업자교육 총 투입일수 ※ 8시간을 1일로 환산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부여한 총시간을 합산		()일	
2016 인증부적격 판정 건수		()건	
2016 사후관리 조치 ※ 기관 자체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에 한함	‘인증취소’ 조치 건수	()건	
	‘표시사용정지’ 조치 건수	()건	
	‘시정명령’ 조치 건수	()건	
2016 농관원 이중체크로 인한 인증취소 사업자 수		()사업자	
2016 인증기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횟수	()회	
	업무정지 총 개월 수 합	총()개월	
2016 인증기관 과태료	과태료 징수 횟수	()회	
	과태료 총합계	총()천원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부록2.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설명회

2017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설명회

날짜: 2016년 1월 4일(수)

장소: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

* 본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 연구개요

1.1. 등급제 시범 시행

-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높은 인증기관의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식품에 해당 소비자 신뢰를 제고, 소비자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발전의 바탕이 됨
-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2016.7.)」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 실시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5.)
-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개정사항('16.12.2. 공포, '17.6.2. 시행)

•인증기관 평가(32조의2)	<신설>	-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등급 결정후 결과 공표 및 인증기관 관리에 활용
-----------------	------	---

2. 등급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과 해당조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 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3.1. 세부지표의 구성

표2.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번호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75~100% 4
			50~75% 미만 3
			35~50% 미만 2
			35% 미만 1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0이면 9
			1~3이면 7
			4~6이면 5
			7~9이면 3
3	기관 과태 료 부과	(과태료 부과 횟수)	1 건당 -1점 감점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1.0% 이상 5
			0.5~1.0% 미만 4
			0.2~0.5% 미만 3
			0.2% 미만 2
5	인증 부적합률	('15년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5년 인증 건수}+('15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0 이면 1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6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건수)+(연말 인증건수)}/2]	0.5~1.0% 미만 2
			1.0~1.5% 미만 3
			1.5~2.0% 미만 4
			2.0% 이상 5
7	사업자당 투입 노력 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120% 이상 7
			110~120% 미만 5
			100~110% 미만 3
			100% 미만 1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4 이상 7
			3~4 미만 5
			2~3 미만 3
			2 미만 1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2.0% 미만 5
			2.0~4.0% 미만 3
			4.0% 이상 1

번호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9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 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 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 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1.5 이상 5
			1.0~1.5 미만 4
			0.5~1.0 미만 3
			0.5 미만 2
			0.0 이면 1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 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 함	2회 이상 3
			1회 참가 2
			미참가 1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연말 상근심사원수)	7년 이상 7
			5~7년 미만 5
			3~5년 미만 3
			3년 미만 1
12	인증 갱신 율	(연간 인증갱신농가수)/(연초 인증농가 수)*100	70% 이상 4
			55~70% 미만 3
			30~55% 미만 2
			30% 미만 1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총시간)/[{(연초 인증사업 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친환경인증정보서비스에 기록된 내용(교육실적 등록)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	30 이상 5
			20~30 미만 4
			10~20 미만 3
			10 미만 2
			0 이면 1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 공품의 건수 합계	400건 이상 4
			200~400건 미만 3
			100~200건 미만 2
			100건 미만 1
			100건 미만 1

번호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1,000명 이상 4
			500~1,000명 미만 3
			200~500명 미만 2
			200명 미만 1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4억원 이상 5
			2~4억원 미만 4
			1~2억원 미만 3
			0.5~1억원 미만 2
			0.5억원 미만 1
17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 액)}*100-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HACCP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교 육의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건당 1점 가점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 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5점 가점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 중	(상근심사원 인건비)/(총매출액)*100	50% 이상 5
			40~50% 미만 4
			30~40% 미만 3
			20~30% 미만 2
			20% 미만 1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20% 미만 5
			20~30% 미만 4
			30~40% 미만 3
			40~50% 미만 2
			50% 이상 1

번호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40~60% 2 40% 미만 1

표3.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영역별 분류

대분류	분류	지표명	지표의 의미	배점
사회 가치 (68점)	책임성 (44점)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업무의 독립성	4
		인증기관 행정처분	인정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성	9
		기관 과태료 부과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성	(감점)
		자체 행정처분 실적	사후관리의 적극성	5
		인증 부적합률	인증심사의 정확성	5
		사후관리 빈도	인증사업자 관리의 노력	7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인증심사의 정밀성	7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인증심사의 정확성	7	
	전문성 (24점)	교육훈련 투입량	직원의 역량	5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전문성	3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심사원의 전문성	7
		인증 갱신율	고객 만족도	4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사업자 역량 관리	5
	경제 가치 (32점)	경제성 (16점)	인증 건수	인증기관의 효율적 규모
인증사업자 수			인증기관의 실질적 규모	4
전년도 매출액			인증기관의 경제적 규모	5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인증사업의 성장성	3
핵심역량 보유 현황			경쟁력 향상의 주도	(가점)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국제 경쟁력	(가점)
안정성 (16점)		부채비율	사업체의 안정성	3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심사원의 업무 가치	5
		상근심사원 퇴사율	고용 안정성	5
		관할지역 인증 비율	인증사업자 관리의 효율성	3

- 사회가치에 대한 지표는 크게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분류됨
 - **책임성**은 인증업무의 독립성,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성, 사후관리 및 심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바탕이 됨
이에는 인증사업 매출비율, 기관 행정처분, 기관 과태료 부과, 자체 행정처분 실적, 인증 부적합률, 사후관리 실적, 사업자당 자원투입량, 이중체크 적발율이 해당됨
 - **전문성**은 인증기관이 갖추어야할 전문 지식과 역량에 대한 지표로서,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임
이에는 교육훈련, 기관장의 역량, 심사원의 경력, 인증 갱신율, 사업자 교육이 해당됨

- 경제가치에 대한 지표는 크게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분류됨
 - **경제성**은 인증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됨
이에는 인증 건수, 사업자수,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핵심역량, 무형자산(국제 인정)이 해당됨
 - **안정성**은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이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이에는 부채비율, 심사원의 인건비, 퇴사율, 관할지역 인증 비율이 해당됨

3.2. 평가 지표별 의미

□ 책임성

○ 인증사업 매출비율

- 인증사업 매출비율은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증기관이 인증사업 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전체 매출 중에서 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본 지표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GAP, 기타 국제적 인증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여 전문적 인증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검토하는 것임

○ 인증기관 행정처분

- 인증기관이 농관원으로 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개월수를 지표에 반영한 것으로서,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지정기준) 준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이 길수록 인증기관의 책임성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관 과태료 부과

- 인증에 대한 정보 관리, 기록 미흡, 신고 누락 등과 같이 인증 절차에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에서의 과실이 발생할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평가지표로 함
- 2015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증기관은 2개의 인증기관으로, 대부분은 이 지표가 적용되지 않아 감점지표로 설정하였음

○ 자체 행정처분 실적

- 자체 행정처분 실적이란 인증기관이 인증 사업자를 관리하여 부적격한 사업자를 적발해 낸 실적으로서, 사후관리 시에 현장 평가의 정확성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 인증 부적합률

- 인증 부적합률은 인증심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심사원의 전문성과 심사 의지에 따라 생산자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결정되므로 부적합률이 높을수록 심사의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원이 부적합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과대 해석하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부적합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본 지표의 만점 기준은 부적합률 2%로 낮은 수준으로 하였음(부적합률 평균 6.2%)

○ 사후관리 빈도

- 사후관리 빈도는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를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횟수를 인증건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서, 인증기관의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의 횟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증사업자 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

- 사업자당 투입 노력량은 인증기관이 사업자 1인당 심사 및 사후관리에 투입한 시간으로서,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정밀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임. 심사 및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생산자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할 수 있으므로 투입시간은 심사의 정밀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중체크 적발 비율

- 이중체크는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인증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된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 등 인증 판정에 관련된 문서를 무작위 선정하여 인증심의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효율적인 인정관리 (Accreditation) 프로그램임
- 이중체크에서 적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인증기관의 인증심의회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됨

□ 전문성

○ 교육훈련 투입량

- 교육훈련은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직원이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인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임
- 교육훈련 투입량은 상근심사원을 포함한 상근직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수료한 횟수로 평가함

○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인증기관장 중에는 인증업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대표직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인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업

체의 대표가 인증에 대한 정책,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담당 직원들의 수행능력과 인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인증기관장의 역량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식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나 문서를 통하여 평가함

○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상근심사원의 근속연수는 심사원들의 업무 경력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 경력이 높은 심사원이 많을수록 투입 시간에 대한 인증심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인적자원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지표임

○ 인증 갱신율

- 인증 갱신율은 전년도 인증사업자 중에서 같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갱신한 비율을 말하며, 이는 사업자가 인증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업무 처리 속도, 인증 비용 등 다양한 면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냄

○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사업자 교육 실적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인증사업자에게 교육하는데 투입된 시간을 말하며, 인증사업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증관련 사고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경제성

○ 인증 건수, 인증 사업자수, 전년도 매출액

- 인증 건수, 사업자수, 매출액은 인증기관의 규모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인증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수의 소규모 인증기관 보다는 영업실적이 높은 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기관의 규모에 관한 지표를 총 13점(인증건수 4, 사업자수 4, 매출액 5)으로 배점하였음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개별 농업인, 농업인 단체, 가공사업자, 취급사업자 등에 발급한 인증서의 총 수를 말함
- 인증 건 중 농업인 단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농업인이 한 건의 인증을 이루므로 **인증 사업자수**는 인증실적 중에서도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가 됨
- 인증 사업자수가 실질적인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인증 사업자수의 전부가 심사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표본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관리 단위인 ‘인증 건수’도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평가하는데 필요하여 인증 사업자수와 인증 건수 둘 다 평가 지표에 포함시킴
- **전년도 매출액**은 인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 실적으로, 인증기관의 경제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 매출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에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증사업을 통한 매출의 증가율은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핵심역량 보유 현황

- 핵심역량이란 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을 보유한 상태로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인증기관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핵심역량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음
- 핵심역량에 대한 배점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 인재로서 IOIA, ISO, HACCP, IFOAM, USDA-NOP, EC834/2007, JAS 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총횟수 당 1점씩 가점하도록 함

○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시행하지만, 인증기관 중에는 인증기관의 국제기준(ISO 17065)에 따른 인정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있음
- 이렇게 ISO 17065 인정서를 보유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안정성

○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한 단기 매출 향상에 집중할 수 있어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상근심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는 친환경농산물 심사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은 농업 및 식품공학의 기술적 지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현장 수행능력,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인으로서, 인증의 신뢰도는 심사원의 전문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인증영업의 실적에 대해 심사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상근심사원 퇴사율

- 상근심사원 퇴사율은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업은 고용이 안정되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안정된 고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됨
- 인증기관의 경우 심사원의 잦은 교체는 인증심사의 품질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심사원의 퇴사율이 낮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할지역 인증 비율

- 관할지역 인증 비율은 총 인증 건수 중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동 시간 및 출장 경비 등 사업자 관리에 대한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수록 상위 득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관할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9개로 분류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한 자치도와 같은 구역으로 분류함

표4. 관할지역의 분류

경기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강원
충남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충북
전북지역	전북
전남지역	광주, 전남
경북지역	대구, 경북
경남지역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제주

4. 조사표 작성요령

4.1. 조사표 작성시 주의사항

- 등급제 담당자께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
-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인증기관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재무제표가 발행되지 않는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 사단법인: 인증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회계자료
 - 관공서: 인증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회계자료
 - 대학(산학협력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재무제표(인증기관장의 날인)
- 재무·회계에 관련된 자료는 201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4.2. 조사표 작성요령

- ※ 인증기관별로 1 부를 등급제 담당자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회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인증기관은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고, 재무제표가 발행되지 않는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회계에 관련된 자료는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2016년 6월 이전에 종료된 최신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I. 인증기관 일반 현황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지정번호	
대표자명		등급제 담당자명	
인증기관 소재지	시·도 () 시·군 ()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친환경 및 유기 인증 에 관련된 범주(scope)에 한함
인증업무의 범위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유기/무농약농산물 <input type="checkbox"/> 유기/무항생제축산물 <input type="checkbox"/> 유기가공식품/취급자/비식용유기가공품 <input type="checkbox"/> GAP <input type="checkbox"/> 그밖의 농산물 인증 () <input type="checkbox"/> 그밖의 식품 인증 () <input type="checkbox"/> 그밖의 산업분야 인증 ()		

II. 경영실적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2015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전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 축산물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2016 년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수/전수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생산자 ※ 저농약 포함 ※ 축산물 포함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해외소재 생산자	()농가 / ()건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관 소재 도내 생산자	()농가 / ()건
2015 년말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수	()사업자 ※ 취급자 포함	
2016 년말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수	()사업자 ※ 취급자 포함	
시·도별 인증건수	서울, 인천, 경기 ()건 강원 ()건 대전, 세종, 충남 ()건 충북 ()건 전북 ()건 광주, 전남 ()건 대구, 경북 ()건 부산, 울산, 경남 ()건 제주 ()건	
	인증기관이 속한 시·도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의 인증건은 몇 건입니까? ()건	

인증사업자의 주거지와 인증신청필지가 상이한 경우:

필지가 아닌 농가 또는 관리사무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생산자가 다수의 생산필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데, 여러 필지의 집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생산을 위한 투입물(자재, 장비, 수확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이 하나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다면 이들 필지의 집합을 하나의 생산관리단위(Production Management Unit)로 간주하며, 그 소재지는 문서 및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농가 또는 사무실로 봅니다.

인증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인증건수:

시도 행정구역을 벗어난 다른 시도에 속하지만 인증기관과 인접한 시군의 생산자가 인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인증기관이 경기도 양평에 있다면, 양평의 인접 시군인 강원도 홍천의 인증건까지 관할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016 인증갱신 총 농가수 (2016.1.1. ~ 2016.12.31.)	()농가 ※ 동일인이 같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계속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 단체에서 개인으로 변경,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 등
--	---

인증갱신 총 농가수 범위:
 농가수는 축산물, 임산물까지 포함하는 생산자 수를 말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인증서에 한합니다.

2016 인증갱신 유기가공사업자수	()사업자
2016 인증갱신 총 건수	()건 ※ 동일인이 같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계속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 등

인증갱신 총 건수의 범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된 농산, 축산, 임산, 유기가공, 취급자까지 포함하고, 자재의 공시 및 인증 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인증서에 한합니다.

2014 년도 인증사업 매출액	()천 원 ※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2015 년도 인증사업 매출액	()천 원 ※ 친환경농산물, 자재, GAP, 해외인증 등 모든 인증사업류
------------------------	--	------------------------	--

III. 인력 관리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2015말(12월 31일) 상근심사원 수	()명	2016말 상근심사원 수	()명
2015말 정규직원 수	()명	2016말 정규직원 수	()명
정규직원(상근심사원)의 범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또는 심사원을 말합니다.			
2016 교육훈련 수료횟수 (상근직원에게 한함)	()회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 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2016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참가 횟수	()회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2016 상근직원(기관장 포함) 국제 교육수료증 보유 현황	IOIA 교육 ()건, ISO 심사원 교육 ()건, HACCP 교육 ()건, IFOAM 교육 ()건, USDA-NOP ()건, EC834/2007 ()건, 유기JAS ()건, 기타 _____ ()건 ※ 2016.12.31.까지 누적 총건수를 말함 ※ 기타는 친환경인증기관 역량에 관련된 타당한 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인된 제 3자 교육기관의 수료증만을 인정		
국제 교육수료증의 범위: HACCP과 ISO는 국내의 교육기관이 시행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 프로그램이 므로 모두 포함합니다.			
2016 모든 상근직원 중 퇴사자 수	()명		
2016 상근심사원 중 퇴사자 수	()명		

상근심사원 현황 (2016.12.31. 기준) * 성명은 기재하지 말 것	A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B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C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D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E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F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G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H	담당 업무:	친환경심사경력 ()년 ()개월
2016 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		() 천원	
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 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은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적용하고, 상여금 등 모든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상근심사원 현황 (2016.12.31. 기준)	인원	()명	
	친환경심사경력	평균()년차	
	비상근심사원 인건비 총지불액	()천원	
심의관 수 (또는 인증위원수)	* 심 의 관 : 상근 ()명 비상근 ()명 * 인증위원 : 상근 ()명 비상근 ()명		

IV. 인증품질 관리

※ 인증관리시스템(www.enviago.go.kr)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주십시오.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2016년도)	정규심사 건수 (신규인증 + 인증갱신)	상근 ()건	비상근 ()건
	사후관리 건수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사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인증심의	심의 방법	<input type="checkbox"/> 인증심의관계	<input type="checkbox"/> 인증위원회제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자체)	상근 ()건	비상근 ()건
	심의관 및 인증위원 교육 건수(외부)	상근 ()건	비상근 ()건
2016 인증사업자교육 총 투입일수 ※ 8시간을 1일로 환산 ※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부여한 총시간을 합산		()일	
2016 인증부적격 판정 건수		()건	
2016 사후관리 조치 ※ 기관 자체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에 한함	‘인증취소’ 조치 건수	()건	
	‘표시사용정지’ 조치 건수	()건	
	‘시정명령’ 조치 건수	()건	
2016 농관원 이중체크로 인한 인증취소 사업자 수		()사업자	
2016 인증기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횟수	()회	
	업무정지 총 개월 수 합	총()개월	
2016 인증기관 과태료	과태료 징수 횟수	()회	
	과태료 총합계	총()천원	

5. 진행절차

5.1. 평가절차

표5.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평가 절차



5.2. 현장방문 일정안

*현장방문 세부일정은 공문을 통하여 각 기관에 사전 배포가 되며, 해당 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증기관은 사전 통보바랍니다.

표6. 현장방문 일정안

지역	기간
제주	1월 중순
강원도	1월 중순~말
서울, 경기	1월 중순~말
대전, 충남, 충북	1월 중순~말
대구, 경북	2월 초~중순
전북	2월 초~중순
부산, 경남	2월 초~중순
광주, 전남	2월 초~중순

부록3.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1. 등급제 담당자

이름: _____ (서명)

직책: _____

휴대폰: _____

2. 등급제 담당자 주요 역할

- (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단일한 소통 창구
- (2) 등급지표별 평가 자료를 용역업체(이시도르연구소)에 제출
- (3) 등급제 관련 현장 방문 평가시 자료 제출 및 평가에 임하는 일
- (4) 그밖에 등급제 관련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

위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등급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 및 정책 용역에 협조할 담당자를 지정하였음.

년 월 일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앞

인증기관명: _____

인증기관장: _____ (서명)

부록4.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

이름: _____ (서명)

소속: _____

직책: _____

휴대폰: _____

2. 수임인:

이름: _____ (서명)

소속: _____

직책: _____

휴대폰: _____

3. 위임 내용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

4. 위임 기간

2017년 1월 4일 목요일 설명회 당일

위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앞

부록5. 정보 활용 동의서

2017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 정보 활용 동의서

인증기관명 : _____

본 인증기관은 (주)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하 “평가기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 중 인증 실적, 인증 관리, 심사원 관리 등 등급제 지표에서 요구되는 사항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가 실적 등의 자료

또한, 본 인증기관은 위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평가기관의 부주의한 정보 취급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등 등급제 지표와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않음
4. 등급 평가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는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함
※ 평가기관은 별도 작성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2017년 월 일

인증기관장 : _____ (인)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앞

부록6. 현장평가 계획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실시에 따른 결과⁴³⁾

2017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자:

작성일:

인증기관:

인증기관번호:

등급제 담당자:

현장평가 예정 일시:

평가자 정:

부:

* 본 연구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 등급제 시범 시행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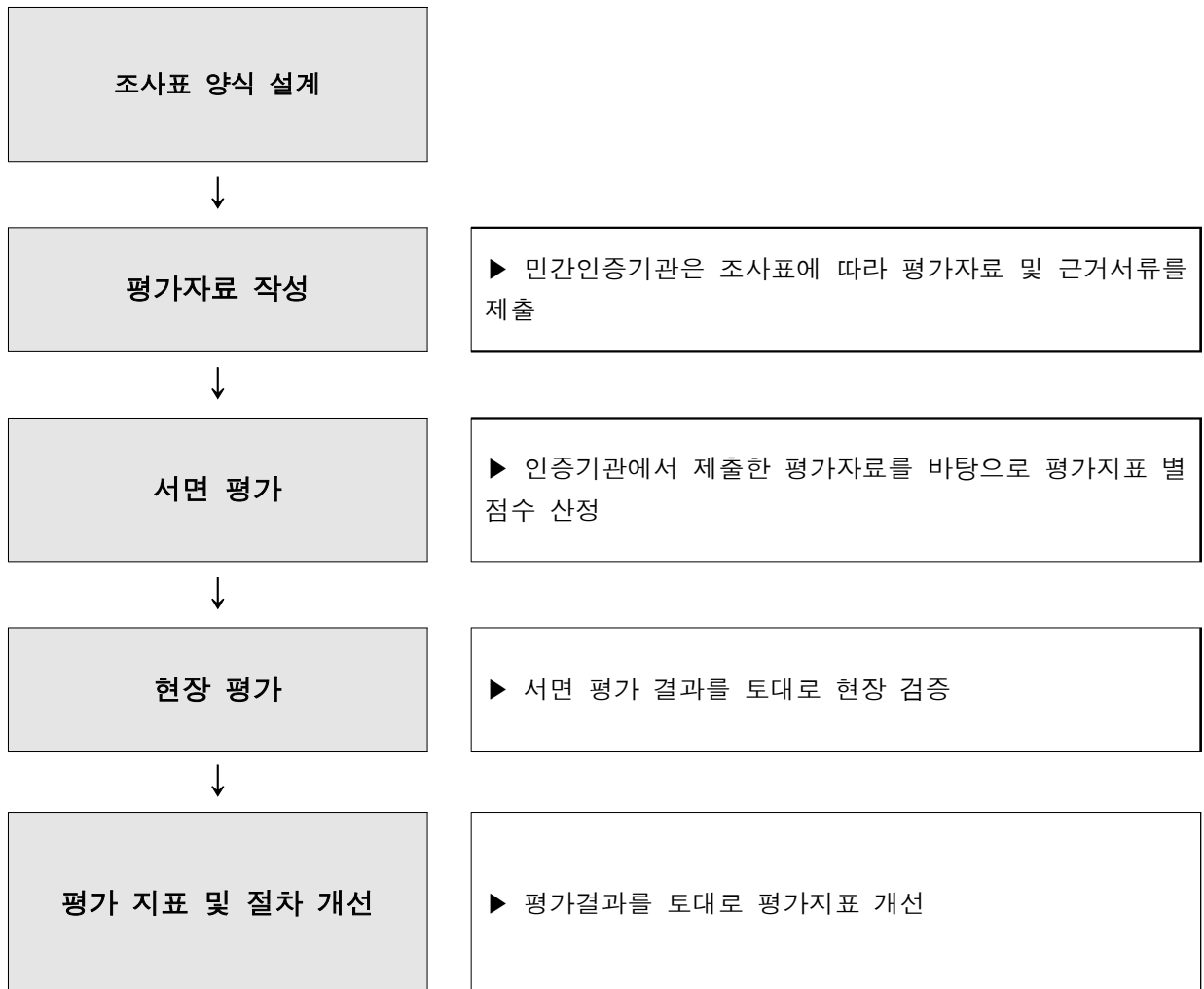
-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개정사항('16.12.2. 공포, '17.6.2. 시행)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의 일환으로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를 위하여 각 지표에서 요구되는 사항

4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용역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에 따른 본 연구소의 등급 평가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연구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을 서면평가(조사표, 재무제표 등)와 현장평가 시범 실시

-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각 세부지표의 개선사항 도출
- 시범 시행을 통하여 등급제 평가 절차 수립 (관련 고시 제·정 등)

2. 등급제 시범 실시 절차



3. 평가반의 역할

3.1. 평가반 구성

-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2인의 평가반에 의해 현장 평가
- 평가반은 인증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 구성
- 평가반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 인증기관에 제출

3.2. 서면 평가

- 각 인증기관에 서면조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의 관련 자료 요청 및 조사표 배포와 작성요령 안내
- 조사표, 재무제표,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데이터를 평가 지표에 입력

3.3. 현장 평가

- 서면평가가 완료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 현장평가지시 확인하는 내용은 표1 참조

4. 평가방법

4.1. 평가 방법

-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때에는 방문기간을 3시간 이하로 계획
-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항목의 최하점을 부여
-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4.2. 인증기관 준비사항

- 등급제 담당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
-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인증기관은 재무제표를 제출, 재무제표가 발행되지 않는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 관공서의 경우 인증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회계자료 제출, 현장 평가시 원본의 자료를 통하여 공식 자료임을 확인
- 본 시범 시행 시 제출하는 재무·회계에 관련된 자료는 201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 인증기관은 서면 평가 시 다음 자료를 평가기관에 제공
 - 평가기관에서 제공한 조사표 작성 후 제출
 - 2015년도 재무제표⁴⁴⁾ 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혹은 이와 동

일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자료)

○ 인증기관은 현장 평가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평가반에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공

- 인증기관 지정서
- 법인등기부등본(지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2016년 심사원 교육 수료증⁴⁵⁾
- 2016년 연초 인증사업 계획서 사용본
현재 적용되는 인증사업 계획서 사용본
※ 출력하지 마시고 기존 사용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근직원 고용보험조회⁴⁶⁾(취득자 가입자 목록) 자료
- 상근심사원별 가장 오래된 심사 보고서 1부, 최근 심사 보고서

1부

(서명 포함)

- 2016년 상근직원 고용보험 조회(상실자 가입자 목록) 자료
- 2015년 상근심사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인증기관장 교육 수료증: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 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교육을 실시한 증빙 자료
(인증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교육 참가명단, 사진, 교육 자료 등)
-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또는 참가증서(2014 ~ 2016년 기준)
- ISO17065 인정서

44) 공식자료라 함은, 세무사 및 회계사 사무소 또는 인증기관장의 도장이 날인된 공식자료를 뜻함

45)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46)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기업회원 서비스 클릭 후 조회 서비스 검색

표1. 인증기관 가치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번호	지표	평가 방법	근거 자료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저농약, 농업계 및 타 산업계 인증 포함	*조사표+친환경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및 재무제표 관련 자료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전년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3	기관 과태 료 부과	(과태료 부과 횟수)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 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100 ※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에게 실시한 행정처분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5	인증 부적합률	(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연중 인증 건수)+(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6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건수)+(연말 인증건수)}/2]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7	사업자당 투입 노력 량	{(심사원 총투입일수)*8}/{(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 수)}/2] ※ 비상근심사원 포함 ※ 8시간을 1일로, 4시간을 0.5일로 환산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47)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기업회원 서비스 클릭 후 조회 서비스 검색

4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번호	지표	평가 방법	근거 자료
9	교육훈련 투입량	$\frac{\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text{연초 상근 직원수})+(\text{연말 상근직원수})\}/2+(\text{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인증기관 자료 제공> - 심사원 교육 수료증 - 2016년 연초, 연말 인증사업 계획서(승인본) - 2016년 상근직원 고용보험조회47)(취득자 가입자 목록) 자료 - 2016년 고용보험 조회(상실자 가입자 목록) 자료 <친인협 자료 제공> - 특별 교육 참가 기록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총회,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 HACCP, IFOAM, 중국 유기농의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센터소장을 기관장으로 인정	<인증기관 자료 제공> - 인증기관장 교육 수료증: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 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친인협 자료 제공> - 포럼 참가 기록 - 총회 참가 기록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frac{\text{연말상근심사원 근속 연차수 총합}}{\text{연말상근심사원수}}$	<인증기관 자료 제공> - 고용보험 조회(취득자 가입자 목록) 자료 - 연초, 연말 인증사업계획서 중 상근직원 보유 현황 자료 - 상근심사원별 가장 오래된 보고서 1부, 최근 심사 보고서 1부(서명 포함)
12	인증 갱신율	$\frac{\text{연간 인증갱신농가수}}{\text{연초 인증농가수}}*100$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번호	지표	평가 방법	근거 자료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연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친환경인증정보서비스에 기록된 내용(교육 실적 등록) ※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가능해야 하며, 인증 기준, 규정, 절차에 관련한 과목에 투여한 총시간을 합산	<인증기관 자료 제공> - 인증사업자 대상으로 2016년 교육 실시한 증빙 자료 (인증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교육 참가명단, 사진, 교육 자료 등) - 인증사업자 교육 인원수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로 간주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조사표+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17	인증사업 매출 증가율	{(당기말 인증매출액)/(전기말 인증매출액)}*100-100 ※ 인증매출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외에도, 자재공시, 가공식품, GAP, 기타 모든 인증을 포함함	*조사표+친환경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및 재무제표 관련 자료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IOIA 교육, ISO 심사원 교육,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중국 유기농 교육의 수료증, ISO17065, ISO19011 또는 참가증서	<인증기관 자료 제공> - 조사 대상 연도 고용보험 조회(상실자 목록 조회) 자료 - 조사 현재 적용되는 인증사업계획서 중 인력 보유 현황 자료 - 조사 대상 연도 이전 3년간 교육 수료증 또는 참가증서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인증기관 자료 제공> -조사일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ISO17065 인정서

번호	지표	평가 방법	근거 자료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재무제표 관련 자료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text{상근심사원인건비})/(\text{친환경인증매출액})*100$	<인증기관 준비 자료> - 2016년 인증사업계획서(승인본) - 2015년 상근심사원 근로 소득 월천 징수 영수증 ⁴⁸) - 2015년 상근심사원 고용보험 조회(가입자, 상실자 목록) 자료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text{상근심사원 퇴사자 수})/(\text{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인증기관 자료 제공> - 2016년 고용보험 조회(상실자 가입자 목록) 자료 - 조사대상 연도에 실시한 심사 보고서 확인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text{관할지역 인증건수})/(\text{총인증건수})$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조사표+친환경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및 재무제표 관련 자료 <인증기관 자료 제공> - 인증기관 지정서 - 법인등기부등본(지사가 있는 경우)

부록7. 비밀유지 서약서

2017 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시행 비밀유지 서약서

(주)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본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이하 “본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본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자료는 본 과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날인합니다.

2017년 3월 6일

(주)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대표이사 유병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중

부록8. 인증기관별 평가서 양식

인증기관별 평가 결과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지정번호:

(주)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귀 인증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1. 인증기관 등급 평가 결과
2. 인증기관 경영 평가 결과

1. (인증기관명) 등급 평가 결과

평가 지표	평가 결과		득점	
	개별	평균 (61개 기관)	개별	평균 (61개 기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84.62%		4.07
2. 인증기관 행정처분		-0.49		-0.49
3. 기관 과태료 부과		0.03		-0.03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1.02%		3.16
5. 인증 부적합률		3.42%		4.05
6. 사후관리 빈도		52.39%		3.97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228		3.28
8. 이증체크 적발 비율		0.84%		5.92
9. 교육훈련 투입량		1.23		2.95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0.74		1.66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32.49		5.25
12. 인증 갱신율		0.85%		4.38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54.58%		3.2
14. 인증 건수		505		2.74
15. 인증사업자 수		1,118		2.69
16. 전년도 매출액		389,455,154원		2.31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38.49%		2.28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1.87		2.43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0.02		0.05
20. 부채 비율		46.31%		2.13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2,462,400원		2.85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25.56%		4.02
23. 관할지역 인증비율		81.48%		2.72
합계			0	65.6

2. 인증기관 경영평가 결과

※아래 경영평가는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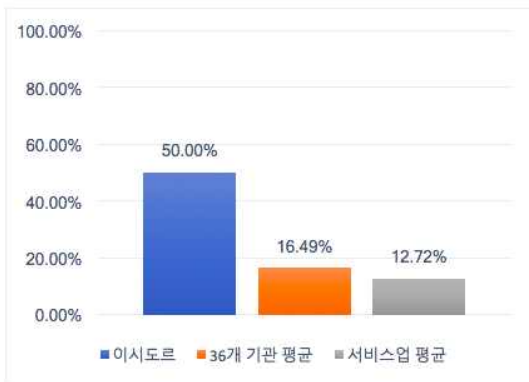
[그림 1] 총자산 증가율



[그림 2] 유동자산 증가율



[그림 3] 자기자본 증가율



[그림 4] 매출액 증가율



[그림 5] 자기자본비율



[그림 6] 유동비율



[그림 7] 부채비율



[그림 8] 차입금 의존도



[그림 9] 자기자본 순이익률



[그림 10]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림 11] 매출액 순이익률



2.1. 총자산증가율

- 자산의 총액에 대한 증가율로 기업의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2.2. 유동자산증가율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 자산 등의 증가율을 나타냄

2.3. 자기자본증가율

-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증가율을 비교하여 당해 연도 얼마나 자기자본이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2.4. 매출액증가율

- 회사의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중의 하나

2.5.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회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자기자본은 금융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음

2.6. 유동비율

-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이 비율이 100이라면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100미만이라면 단기지급 불능 상태 가능성이 있음

2.7. 부채비율

-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안정성지표. 단기 채무(유동부채)에 대한 변제 압박을 받지 않는 한 200%까지는 양호한 수준

2.8. 차입의존도

- 총자본중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조달한 차입금(단기차입금, 외화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회사채, 장기차입금, 차관 등을 합한 것)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짐

2.9. 자기자본순이익율

- 손익계산서상 최종적인 경영 성과인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금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지표

2.10. 매출액영업이익율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2.11. 매출액순이익율

- 매출액에 대한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최종적인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순이익율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마진율이 높다는 의미

부록9. 인증기관 시범조사 득점표(교정 전)

입시 ID	인증 매출	행정 처분	과태료	자체 행정 처분	인증 부적합	사후 관리	사업자당 투입인력	인증 체크	교육훈련 투입량	기관장 역량 강화	근속 연수	인증 갱신율	사업자 인증교육	인증 건수	인증 사업자수	전년도 매출액	인증 사업자수 증가율	핵심 역량	국제적 인정	부채 비율	인건비	퇴사율	관할 지역 인증	총점	순위	등급
G38	4	9	0	1	1	7	3	7	3	3	3	4	2	3	2	5	2	12	5	3	2	5	2	88	1	우수
G29	4	9	0	5	5	7	1	7	5	2	3	4	2	4	4	5	2	3	0	3	2	5	3	85	2	우수
G10	4	9	0	4	3	7	3	7	4	3	1	4	2	4	4	5	2	5	0	3	2	4	3	83	3	우수
G22	4	9	0	5	5	7	1	7	5	2	5	4	2	4	4	5	3	1	0	3	2	4	1	83	4	우수
G49	4	9	0	5	2	7	1	7	4	2	5	3	2	4	4	5	2	1	0	3	4	5	3	82	5	우수
G23	4	9	0	5	5	5	1	7	4	3	5	4	2	4	3	5	3	1	0	3	1	4	3	81	6	우수
G35	4	9	0	5	5	7	1	7	4	1	5	3	2	3	4	5	3	1	0	3	2	4	3	81	7	우수
G45	4	9	0	5	5	3	1	7	5	3	1	4	2	4	4	5	2	2	0	3	3	5	3	80	8	우수
G30	4	9	0	4	5	7	1	5	4	3	3	4	3	4	3	5	3	3	0	1	1	5	3	80	9	우수
G53	1	9	0	5	5	7	1	5	5	1	1	4	2	2	2	3	3	11	0	2	5	2	3	79	10	양호
G44	4	7	0	5	5	7	1	7	5	1	1	4	2	3	3	3	3	2	0	3	5	5	3	79	11	양호
G31	4	9	0	4	5	7	1	7	4	3	1	4	2	3	4	4	3	1	0	3	1	5	3	78	12	양호
G43	4	9	0	4	5	3	1	7	3	1	1	4	2	4	4	5	3	9	0	3	2	1	3	78	13	양호
G17	4	9	0	4	5	1	1	3	4	1	5	4	5	4	4	5	3	1	0	3	3	5	3	77	14	양호
G59	4	9	0	5	5	5	1	7	4	2	1	2	4	3	4	4	3	1	0	3	4	3	3	77	15	양호
G36	2	9	0	3	5	5	3	5	5	2	1	4	2	4	4	3	3	1	0	2	5	5	3	76	16	양호
G51	4	9	0	5	5	7	1	3	3	3	3	4	2	3	4	5	2	1	0	3	1	5	3	76	17	양호
G58	4	9	0	3	3	7	1	5	5	1	3	4	2	3	4	5	2	2	0	3	2	5	3	76	18	양호
G63	4	9	0	4	5	7	1	7	5	3	1	4	1	3	3	4	3	1	0	3	4	1	3	76	19	양호
G15	4	9	0	5	2	7	1	7	5	1	1	4	2	4	4	5	3	1	0	1	1	5	3	75	20	양호
G37	4	9	0	5	5	5	1	5	5	1	3	4	2	3	3	3	3	0	0	2	4	5	3	75	21	양호
G61	3	9	0	5	5	5	1	7	3	1	3	3	3	4	4	5	1	1	0	2	2	5	3	75	22	양호
G39	4	9	0	5	5	7	1	7	3	3	1	4	1	4	4	4	2	1	0	1	2	4	3	75	23	양호
G47	1	9	0	5	5	7	1	5	3	1	1	4	2	3	3	3	3	4	0	1	5	5	3	74	24	양호
G19	4	7	0	3	2	7	1	7	5	3	1	1	2	4	4	4	3	4	0	3	2	4	3	74	25	양호
G32	4	9	0	5	5	7	1	7	3	3	3	2	2	3	3	4	1	1	0	1	1	5	3	73	26	양호
G33	4	7	0	4	5	7	1	3	3	2	3	2	1	4	3	5	1	7	0	3	1	4	3	73	27	양호
G8	4	9	0	3	5	7	1	7	4	3	1	2	2	4	3	4	3	1	0	3	2	1	3	72	28	양호
G62	4	9	0	4	5	7	1	7	5	1	1	3	2	4	4	4	1	0	0	2	2	3	3	72	29	양호

G34	4	9	0	5	5	5	3	7	4	1	3	4	2	2	1	1	3	1	0	2	1	5	3	71	30	양호
G2	4	9	0	4	5	7	1	3	3	3	1	4	1	4	4	5	3	1	0	3	1	1	3	70	31	양호
G11	1	9	0	4	5	1	1	7	2	1	3	3	2	4	4	4	3	1	0	2	5	5	3	70	32	양호
G5	4	9	0	5	5	1	1	7	5	1	1	2	2	4	4	5	2	1	0	1	1	5	3	69	33	보통
G14	1	9	0	4	5	7	1	7	3	1	1	4	2	3	3	3	2	4	0	2	5	1	1	69	34	보통
G40	1	9	0	3	2	3	3	7	5	1	1	4	2	4	4	5	3	1	0	2	1	5	2	68	35	보통
G26	4	9	0	5	5	7	1	7	4	1	1	1	1	4	4	4	2	0	0	2	2	1	2	67	36	보통
G50	4	9	0	4	5	1	1	7	3	1	1	2	1	3	4	4	1	2	0	3	3	5	3	67	37	보통
G24	4	9	0	5	5	7	1	3	4	3	1	1	2	3	3	4	1	3	0	3	1	1	3	67	38	보통
G7	4	9	0	5	5	7	1	3	5	1	3	3	2	3	3	4	1	0	0	2	2	1	3	67	39	보통
G18	2	9	0	2	5	1	1	7	5	1	3	4	2	3	4	4	3	0	0	1	3	4	3	67	40	보통
G52	4	9	0	3	2	3	1	7	5	1	3	2	2	4	4	4	3	0	0	1	2	3	3	66	41	보통
G42	4	7	0	4	4	7	1	1	5	2	3	1	3	3	4	5	1	1	0	1	1	5	3	66	42	보통
G60	2	9	0	2	1	1	1	7	4	1	3	4	2	4	4	5	2	2	0	2	2	5	3	66	43	보통
G3	4	9	0	2	1	5	3	7	2	1	1	4	1	4	3	5	3	1	0	1	3	4	2	66	44	보통
G46	1	9	0	5	5	1	3	7	4	1	3	4	2	2	1	2	3	1	0	1	5	5	1	66	45	보통
G64	4	7	0	1	4	7	1	7	3	1	1	4	3	4	4	5	3	2	0	1	2	1	1	66	46	보통
G48	4	9	0	3	1	3	1	7	4	1	3	4	3	2	2	2	2	0	0	2	5	5	3	66	47	보통
G21	1	9	0	3	5	3	1	3	5	1	1	4	2	3	3	3	3	1	0	1	5	5	3	65	48	보통
G9	4	9	0	3	3	5	1	5	3	1	1	4	2	3	4	5	2	0	0	1	2	4	3	65	49	보통
G27	1	9	-1	5	5	1	1	7	3	1	1	4	2	3	3	3	3	0	0	2	5	3	3	64	50	보통
G56	1	9	0	3	1	3	1	7	3	1	1	4	2	2	3	3	3	2	0	2	5	5	3	64	51	보통
G4	1	9	0	1	1	7	1	7	2	1	1	1	3	1	1	3	3	7	0	3	5	5	1	64	52	보통
G12	1	9	0	3	5	1	1	7	3	3	1	4	1	3	2	3	3	0	0	2	5	3	3	63	53	보통
G13	4	9	-1	5	5	1	1	7	4	1	1	2	2	2	2	2	3	0	0	2	5	1	3	61	54	보통
G1	4	9	0	2	5	1	1	3	3	1	1	3	2	4	3	4	3	1	0	1	2	4	3	60	55	보통
G16	3	7	0	1	3	7	1	7	3	1	1	2	1	4	3	4	3	0	0	1	2	3	3	60	56	보통
G57	4	9	0	3	5	1	1	1	3	2	1	4	2	2	4	4	3	1	0	1	5	1	3	60	57	보통
G25	3	9	0	1	3	1	1	7	2	1	3	4	2	1	2	1	3	0	0	2	5	5	3	59	58	미흡
G54	4	5	0	4	2	1	1	7	3	2	1	4	1	4	4	5	2	0	0	3	1	1	3	58	59	미흡
G6	4	5	0	5	5	1	1	7	4	1	1	1	2	2	2	2	1	1	0	1	2	4	3	55	60	미흡
G41	1	9	0	1	1	1	3	7	2	2	1	4	2	1	1	1	3	1	0	3	5	5	1	55	61	미흡

부록10. 인증기관 시범조사 득점표(교정 후)

입시 ID	인증 매출	행정 처분	과태료	자체 행정 처분	인증 부적합	사후 관리	사업자당 투입인력	이중 체크	교육훈련 투입량	기관장 역량 강화	근속 연수	인증 갱신율	사업자 인증교육	인증 건수	인증 사업자수	전년도 매출액	인증 사업자수 증가율	핵심 역량	국제적 인정	부채 비율	인건비	퇴사율	관할 지역 인증	총점	순위	등급
G10	5	0	0	3	3	7	4	7	3	3	6	5	3	5	4	5	3	5	0	3	3	4	3	84	1	우수
G34	5	0	0	5	5	7	7	7	3	1	7	5	5	1	1	1	3	2	0	2	5	5	3	80	2	우수
G49	5	0	0	4	2	6	3	7	3	2	7	4	5	5	4	4	1	2	0	3	3	5	3	78	3	양호
G29	5	0	0	4	5	5	1	7	5	2	7	4	2	3	4	3	2	4	0	3	4	5	3	78	4	양호
G22	5	0	0	4	5	6	1	7	4	2	7	4	3	5	4	4	2	2	0	3	4	4	1	77	5	양호
G45	5	0	0	5	5	4	2	7	4	3	4	5	3	4	3	3	2	3	0	3	4	5	3	77	6	양호
G63	5	0	0	3	5	6	3	7	5	3	4	5	5	2	2	2	3	2	0	3	5	3	3	76	7	양호
G38	4	0	0	1	1	7	6	7	2	3	7	5	2	2	1	4	2	5	3	3	4	5	1	75	8	양호
G36	3	0	0	2	5	7	3	6	4	2	6	5	5	5	3	1	2	2	0	2	3	5	3	74	9	양호
G23	5	0	0	4	5	5	3	7	3	3	7	5	3	3	2	3	2	2	0	3	1	4	3	73	10	양호
G39	5	0	0	5	5	5	3	7	2	3	6	5	4	3	3	2	2	2	0	1	3	4	3	73	11	양호
G30	5	0	0	3	5	4	4	6	3	3	7	5	3	3	2	3	3	4	0	1	1	5	3	73	12	양호
G60	5	0	0	2	1	6	3	7	3	1	7	5	2	5	3	3	2	3	0	2	3	5	3	71	13	양호
G8	5	0	0	2	5	5	5	7	3	3	2	5	4	4	2	2	3	2	0	3	2	3	3	70	14	양호
G53	5	0	0	5	5	4	5	6	4	1	5	4	5	1	1	1	2	5	0	3	3	2	3	70	15	양호
G5	5	0	0	4	5	3	1	7	5	1	3	4	3	5	5	3	2	2	0	1	3	5	3	70	16	양호
G40	2	0	0	2	2	7	1	7	5	1	3	5	2	5	4	5	3	2	0	2	4	5	2	69	17	보통
G32	5	0	0	5	5	4	4	7	2	3	7	4	3	2	2	2	1	2	0	1	2	5	3	69	18	보통
G37	5	0	0	5	5	4	4	5	4	1	7	5	2	2	2	1	3	1	0	3	2	5	3	69	19	보통
G46	1	0	0	5	5	6	7	7	3	1	7	4	4	1	1	1	3	2	0	1	4	5	1	69	20	보통
G15	5	0	0	4	2	4	1	7	5	1	3	5	5	3	4	3	3	2	0	1	2	5	3	68	21	보통
G58	5	0	0	2	3	2	1	5	4	1	7	5	4	2	4	4	2	3	0	3	3	5	3	68	22	보통
G47	1	0	0	5	5	5	5	4	2	1	6	5	5	2	2	1	2	5	0	1	3	5	3	68	23	보통
G44	5	-3	0	4	5	4	4	7	5	1	6	5	2	2	2	1	2	3	0	3	2	5	3	68	24	보통
G35	5	0	0	5	5	2	3	7	3	1	7	4	2	2	3	3	2	2	0	3	2	4	3	68	25	보통
G11	1	0	0	3	5	4	4	7	1	1	7	4	2	4	3	2	3	2	0	3	3	5	3	67	26	보통
G43	5	0	0	3	5	4	3	7	2	1	3	5	2	4	3	3	3	5	0	3	2	1	3	67	27	보통
G31	5	0	0	3	5	3	2	7	3	3	4	4	4	2	3	2	2	2	0	2	2	5	3	66	28	보통
G61	2	0	0	4	5	3	4	7	2	1	7	4	4	3	3	3	1	2	0	2	2	4	3	66	29	보통

G59	5	0	0	4	5	2	2	7	3	2	2	5	5	2	3	2	3	2	0	3	2	4	3	66	30	보통
G17	5	0	0	3	5	2	1	2	3	1	7	4	4	3	4	4	2	2	0	3	2	5	3	65	31	보통
G3	5	0	0	2	1	7	4	7	1	1	5	5	1	5	2	3	3	2	0	1	4	4	2	65	32	보통
G19	5	-3	0	2	2	3	1	7	5	3	4	4	2	3	5	2	2	5	0	3	2	4	3	64	33	보통
G33	5	-3	0	3	5	4	4	1	2	2	7	4	4	3	2	3	1	5	0	3	2	4	3	64	34	보통
G62	3	0	0	3	5	4	3	7	4	1	6	4	3	3	3	2	1	1	0	2	2	4	3	64	35	보통
G48	5	0	0	2	1	2	5	7	3	1	7	5	5	1	1	1	3	1	0	2	4	5	3	64	36	보통
G2	5	0	0	3	5	5	1	1	2	3	2	5	1	5	5	5	3	2	0	3	2	2	3	63	37	보통
G14	1	0	0	3	5	3	5	7	2	1	5	5	5	2	2	1	2	5	0	2	5	1	1	63	38	보통
G50	5	0	0	3	5	2	4	7	2	1	4	2	3	2	3	2	1	3	0	3	3	5	3	63	39	보통
G24	5	0	0	5	5	4	5	3	3	3	2	4	3	2	2	2	1	4	0	3	2	2	3	63	40	보통
G51	5	0	0	5	5	2	1	1	2	3	7	3	2	2	4	4	2	2	0	3	2	5	3	63	41	보통
G4	1	0	0	1	1	6	7	7	1	1	5	5	2	1	1	1	3	5	0	3	4	5	1	61	42	보통
G26	5	0	0	4	5	4	1	7	3	1	2	5	3	4	3	2	2	1	0	2	3	1	2	60	43	보통
G18	3	0	0	2	5	1	1	7	4	1	7	4	3	2	5	2	2	1	0	1	2	4	3	60	44	보통
G52	5	0	0	2	2	2	1	7	4	1	7	2	3	5	4	2	3	1	0	1	2	4	2	60	45	보통
G41	1	0	0	1	1	5	7	7	1	2	6	4	1	1	1	1	3	2	0	3	5	5	3	60	46	보통
G42	5	-3	0	3	4	4	3	1	4	2	7	2	5	2	3	3	1	2	0	1	2	5	3	59	47	미흡
G27	4	0	-1	4	5	4	5	7	2	1	2	5	1	2	2	1	3	1	0	1	3	4	3	59	48	미흡
G7	5	0	0	5	5	3	3	1	4	1	7	3	4	2	2	2	1	1	0	2	2	3	3	59	49	미흡
G64	5	-3	0	1	4	5	1	7	2	1	2	5	5	5	5	3	3	3	0	1	2	1	1	59	50	미흡
G56	2	0	0	2	1	2	3	7	2	1	5	5	5	1	2	1	3	3	0	3	2	5	3	58	51	미흡
G12	1	0	0	2	5	5	4	7	2	3	3	4	1	2	1	1	3	1	0	1	5	4	3	58	52	미흡
G9	5	0	0	2	3	2	2	5	2	1	4	4	4	2	4	3	2	1	0	1	4	4	3	58	53	미흡
G6	5	-6	0	4	5	3	6	7	3	1	6	2	4	1	1	1	1	2	0	1	3	4	3	57	54	미흡
G1	5	0	0	2	5	1	3	3	2	1	3	4	5	3	2	2	3	2	0	1	2	4	3	56	55	미흡
G13	1	0	-1	5	5	2	6	7	3	1	4	5	2	1	1	1	2	1	0	2	3	2	3	56	56	미흡
G21	2	0	0	2	5	3	4	2	5	1	4	4	2	2	2	1	3	2	0	1	3	5	3	56	57	미흡
G16	4	-3	0	1	3	7	4	7	2	1	4	5	2	3	2	2	2	1	0	1	2	4	2	56	58	미흡
G25	1	0	0	1	3	1	4	7	1	1	7	5	3	1	1	1	3	1	0	2	5	5	3	56	59	미흡
G54	5	-6	0	3	2	2	1	7	2	2	5	5	2	3	3	3	3	1	0	3	2	1	3	52	60	미흡
G57	5	0	0	2	5	1	1	1	2	2	6	5	2	1	3	2	3	2	0	1	2	2	3	51	61	미흡

< 참 고 문 헌 >

- (1995)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박범조(2012), 「경제경영통계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한국은행 기업통계팀(2015). 「기업경영분석」
한국신용평가(2015). 「산업별 재무지표」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2016).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나카노 히로유키(2016). 「통계가 빨라지는 수학적」
나가노 히로유키(2016).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 수학 통계가 빨
라지는 수학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통계 포털(kosis.kr)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2017년 4월 인쇄

2017년 4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747-01

편저 ·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1108

TEL:031-424-9792 FAX:031-424-9793

이 간행물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시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